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검 토 보 고

▣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윤 상 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담당

구 분		입법조사관	연락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재환	5188
	글로벌교육기획관	황태율	5187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선화	5189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김재환 조지숙	5188 5185
	지역인재정책관	이호원	5193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이호원	5193
	의대교육지원관	김재환	5188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김광호 창성현	5186 5184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조지숙	5185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선화	5189
교육복지늘봄지원국		김광호	5186
학생건강정책국		창성현	5184
사회정책협력관		조성희	5192
영유아정책국		조성희	5192

목 차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1. 총 괄 ---- 1

가. 2026년 교육분야 재원배분 현황 ---- 1
나. 총수입·총지출 ---- 3
다. 세입예산안 ---- 4
라. 세출예산안 ---- 5
1) 개요 ---- 5
2)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 6
마. 기금운용계획안 ---- 12
1) 개요 ---- 12
2) 종료 및 증감 사업 ---- 12

2.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16

가. 일반회계 ---- 16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
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2
라. 영유아특별회계 ---- 25

3. 2026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27

가. 사학진흥기금 ---- 27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35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45

가.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45
나.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46

Ⅱ. 검토의견 ---- 47

1. 정책기획관 ---- 49

【세입】

1) 징계부가금 …… 51

: 적정 징계부가금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 필요 …… 52

【일반회계】

1) 정책연구개발사업 …… 58

: 사업의 구체성 부족 및 공개율 저조 문제 개선 필요 …… 59

2)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 64

: 집행실적을 고려한 인건비성 경비의 편성 필요 …… 6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67

(1)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 68

(2)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심사 필요 …… 72

2) 국립대학 시설확충 …… 76

(1) 보수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과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77

(2) 이월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처리방식 문제 …… 82

2. 글로벌교육기획관 ---- 85

【일반회계】

1) 학생교육교류지원 …… 87

(1)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정확한 예산 편성 필요 …… 89

(2)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심사위원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 증액 필요 …… 93

3. 디지털교육기획관 ---- 95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 97

: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의 확산 효과 제고 필요 …… 99

2)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 104

: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 …… 106

3)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 116
: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학생 부문 지원 축소 지양 필요 ····· 118

4. 인재정책기획관 ---------- 1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 126
: 예산안 세부 산출근거 점검 및 단계적 사업 확대 고려 ····· 127
2) 인문사회기초연구(R&D) ····· 133
: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36
3)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 142
(1)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의 안정적 지원 필요 ····· 144
(2) 국가연구소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49
(3) 기본연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157
4) AI 거점대학 ····· 162
: 구체적인 예산 배분 및 사업 계획 마련 필요 ····· 163

5. 지역인재정책관 ---------- 17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173
: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 인원 확대 필요 ····· 175
2)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 181
: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업 증액 필요 ····· 183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187
(1) 대학평가 미인증 대학 및 경영위기대학의 RISE 사업 참여 ····· 189
(2) RISE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의 확보에 대한 점검과 기준 설정 필요 ····· 199
(3) RISE 사업의 예산서 세부자료 구체화 및 예산 집행 감독체계 강화 ···· 203
4) 국립대학육성사업 ····· 208
: 성과목표 사전 설정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등 사업 보완 필요 ···· 212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222
【일반회계】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224
: 전기이월금 세부 산정 방식 명확화 필요 ····· 226
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232
(1)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234
(2) 예산 집행 수준에 맞춘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세부 산정 근거 명확화 필요 ····· 23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한국장학재단출연 ····· 24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 247
7. 의대교육지원관 ---------- 25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병원 지원 ····· 255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미반영 문제 ····· 256
(2) 예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 ····· 258
8. 책임교육정책관 ---------- 263
【일반회계】
1)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265
: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26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276
: 자체수입 산정방식의 체계화 필요 ····· 278
9. 교육자치안전정책관 ---------- 283
【일반회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85
(1) 세수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 대응 필요 ····· 291
(2)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 변동성 고려 필요 ····· 300

10. 교원학부모지원관 ---------- 3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 309
: 사업의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 필요 ····· 3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315
: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액 산출 필요 ····· 317
2) 연금급여 ····· 319
: 연금급여의 면밀한 추계 필요 ····· 321
11. 교육복지늘봄지원국 ---------- 326
【일반회계】
1)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328
: 부산대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330
12. 영유아정책국 ---------- 336
【영유아특별회계】
1)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 338
(1) 영유아특별회계의 설치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342
(2)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 필요 ····· 346
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351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353
3)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359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 ····· 361
4) 영유아보육료 지원 ····· 368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 370
(2)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적기 실시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376
5)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 382
: 보육교직원의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384
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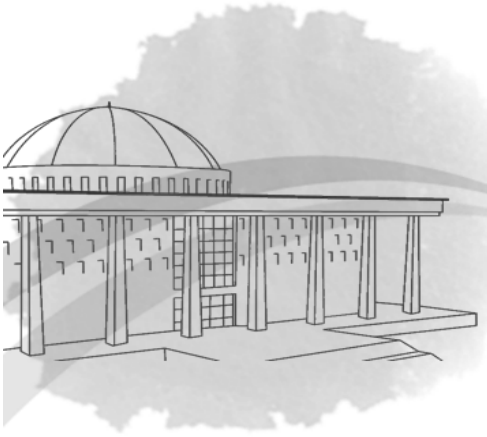
(1) 아침돌봄 수당 지원 등 신규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노력 필요 ····· 393
(2) 장애영유아에 대한 시도별 교육·보육여건 편차 개선 필요 ····· 399

13. 학생건강정책국 ---------- 406

【일반회계】

1) 교육급여 ····· 408
: 지역간 격차 완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410
2) 학생건강지원강화 ····· 415
: 연구용역 중심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부 직접 수행 필요 ····· 417
3)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 423
: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증액 필요 ····· 425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괄

가. 2026년 교육분야 재원배분 현황

❑ 2026년도 예산안 728조원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99.8조원으로 '25년 98.5조원 대비 1.3조(1.4%)증가하였음.

❑ 재원배분 규모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269.1조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21.1조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본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673.3	728.0	54.7	8.1%
·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 교육	98.5	99.8	1.3	1.4%
·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 환경	13.0	14.0	1	7.7%
· R&D	29.6	35.3	5.7	19.3%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 SOC	25.4	27.5	2.1	7.9%
· 농림・수산・식품	25.9	27.9	2	7.7%
· 국방	61.2	66.3	5.1	8.2%
· 외교・통일	7.7	7.0	△0.7	△9.1%
·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 일반・지방행정	110.7	121.1	10.4	9.4%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부 소관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1], 고등교육 부문이 4,678억원(3.0%),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651억원(5.9%) 각각 증가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1개사업 3조1,020억원) 폐지되고, 영유아특별회계(9개사업 9조 2,233억원)가 신설되었음.

<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교육부 소관[2])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추경[3]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 총지출	104,868,403	102,643,652	106,266,260	1,397,857	1.3
◦ 예산	98,089,605	95,845,839	99,296,595	1,206,990	1.2
(일반회계)	78,798,525	76,911,508	73,471,748	△5,326,777	△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5,595	325,595	233,255	△92,340	△28.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	△3,102,013	순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863,472	15,506,723	16,368,257	504,785	3.2
(영유아특별회계)	-	-	9,223,335	9,223,335	순증
◦ 기금	6,778,798	6,797,813	6,969,665	190,867	2.8
【교육분야】	98,182,225	95,940,192	99,382,885	1,200,660	1.2
▪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1,380,742	79,493,725	82,046,501	665,759	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279,438	70,281,203	71,674,180	△605,258	△0.8
▪ 고등교육	15,549,100	15,194,084	16,016,901	467,801	3.0
▪ 평생·직업교육	1,102,260	1,102,260	1,167,327	65,067	5.9
▪ 교육일반	150,123	150,123	152,156	2,033	1.4
【사회복지분야】	6,566,128	6,583,410	6,883,375	317,247	4.8
▪ 기초생활보장	165,171	165,171	171,058	5,887	3.6
▪ 공적연금	6,400,957	6,418,239	6,712,317	311,360	4.9
【보건분야】	120,050	120,050	-	△120,050	순감
▪ 보건의료	120,050	120,050	-	△120,050	순감

자료: 교육부

1) 교육 분야는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됨.
2) 12대 분야의 교육분야 예산과 교육부 예산은 거의 유사하나, 교육부 예산 중 사학연금, 교육급여 등은 보건복지고용 분야(각각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고, 타 부처 중 교육분야(고등교육 등)로 편성되는 예산도 일부 있음
3)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5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나. 총수입 · 총지출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7조 2,141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83억 4,000만원(△10.0%) 감소하였음.

❑ 예산은 5,41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 500만원(10.0%) 증가하였고, 기금은 6조 6,727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74억 4,500만원(△11.3%) 감소하였음.

<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수입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예 산	492,265	492,265	541,370	49,105	10.0
기 금	7,520,218	7,520,218	6,672,773	△847,445	△11.3
총 수 입	**8,012,483**	**8,012,483**	**7,214,143**	**△798,340**	**△10.0**

자료: 교육부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106조 2,66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978억 5,700백만원(1.3%) 증가하였음.

❑ 예산은 99조 2,96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069억 9,000만원(1.2%) 증가하였고, 기금은 6조 9,696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8억 6,700만원(2.8%)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예 산	98,089,605	95,845,839	99,296,595	1,206,990	1.2%
기 금	6,778,798	6,797,813	6,969,665	190,867	2.8%
총 지 출	**104,868,403**	**102,643,652**	**106,266,260**	**1,397,857**	**1.3%**

자료: 교육부

다.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조 6,776억 7,700만원(총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6조 5,353억 300만원(32.4%)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세입 예산안(총계) >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371,737	371,737	130,719	△241,018	△6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32	5,032	7,314	2,282	45.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	△3,102,013	순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63,592	16,306,843	17,316,309	652,717	3.9
영유아특별회계	-	-	9,223,335	9,223,335	순증
합 계	**20,142,374**	**19,785,625**	**26,677,677**	**6,535,303**	**32.4**

자료: 교육부

라. 세출예산안

1) 개요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6조 4,323억 7,000만원(총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7조 5,553억 5,500만원(6.4%)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총계) >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99,322,129	97,078,363	100,350,730	1,028,601	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5,595	325,595	233,255	△92,340	△28.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13	3,102,013	-	△3,102,013	순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127,278	15,770,529	16,625,050	497,772	3.1
영유아특별회계	-	-	9,223,335	9,223,335	순증
합 계	**118,877,015**	**116,276,500**	**126,432,370**	**7,555,355**	**6.4**

자료: 교육부

2) 신규·종료 및 증감 사업

가) 신규사업

❑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9개(4,986억 5,4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대안교육 패널조사 등 5개 사업 111억 1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 등 3개 사업 172억 1,800만원, 영유아특별회계에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억 3,500만원임.

< 교육부 세출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비고
[일반회계]			
1	대안교육 패널조사	400	
2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410	
3	민간보육시설지원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4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305	
5	글로벌 교육지원 다자협력(ODA)	9,96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11,840	
7	청년정책총괄지원	3,823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	1,555	
[영유아특별회계]			
9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합계		498,654	

자료: 교육부

나) 종료사업

❑ 교육부 주요 종료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사업(7억 5,000만원)과 교육기부활성화사업(32억 5,000만원)이 종료되었음.

❑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18억 7,700만원)이 종료되었음.

< 교육부 세출 예산안 종료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예산	비고
[일반회계]			
1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750	
2	교육기부활성화사업	3,25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1,877	
합계		5,877	

자료: 교육부

다) 증액사업

❑ 주요 증액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년 대비 5,732억 6,100만원(10,884.0%) 증액된 5,78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1,945억 1,700만원(18.2%) 증액된 1조 2,619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이 전년 대비 4,492억 5,000만원(105.9%)증액된 8,73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은 전년 대비 1,393억 3,500백만원(7.0%) 증액된 2조 1,403억 3,500만원,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7억 6,100만원(43.7%) 증액된 2,624억 6,10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4,042억 3,400만원(12.5%) 증액된 3조 6,442억 7,3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764억 500만원(9.0%) 증액된 2조 1,383억 1,600만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이관·편성되었음.

< 교육부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1	고등학교 무상교육	5,267	578,528	573,261	10,884.0
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1,261,926	194,517	18.2
3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3,100	15,000	11,900	383.9
4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82,778	93,490	10,712	12.9
5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12,400	18,943	6,543	52.8
6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4,265	7,540	3,275	76.8
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298	7,055	1,757	33.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8	국립대학육성사업	424,300	873,550	449,250	105.9
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01,000	2,140,335	139,335	7.0
1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182,700	262,461	79,761	43.7
1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658,772	699,616	40,844	6.2
12	전문대학 혁신 지원	555,500	590,725	35,225	6.3
13	인문사회 기초연구(R&D)	256,981	286,667	29,686	11.6
14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93,048	620,798	27,750	4.7
15	국립대병원 지원	117,057	141,538	24,481	20.9
16	대학혁신지원	796,111	819,211	23,100	2.9
17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2,478	541,546	19,068	3.6
18	한국장학재단 출연	407,913	421,051	13,138	3.2
19	대학정보공시 제도 운영(정보화)	2,816	10,531	7,715	274.0
2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6,407	8,719	2,312	36.1
[영유아특별회계]					
21	영유아보육료 지원 ※'25년 일반회계	3,240,039	3,644,273	404,234	12.5
2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5년 일반회계	1,961,911	2,138,316	176,405	9.0

주1) 주요 증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 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라) 감액사업

❑ 주요 감액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6,494억 5,800만원(△0.9%) 감액된 69조 101억 1,400만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전년 대비 1,127억 5,000만원(△15.2%) 감액된 6,309억 6,300만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전년 대비 375억 8,400만원(△15.2%) 감액된 2,103억 2,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36억 2,800만원(△45.7%) 감액된 4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이 전년 대비 883억 100만원(△30.6%) 감액된 2,003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이 전년대비 2,095억 9,000만원(△4.0%) 감액된 5조 954억 5,700만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이 전년 대비 1,912억 7,100만원(△17.5%) 감액된 9,016억 3,800만원, 국립대학 인건비가 전년 대비 169억 9,700만원(△0.9%) 감액된 1조 8,55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부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1	보통교부금	69,659,572	69,010,114	△649,458	△0.9
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743,713	630,963	△112,750	△15.2
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7,905	210,321	△37,584	△15.2
4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28,964	19,231	△9,733	△33.6
5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7,938	4,310	△3,628	△45.7
6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9,752	6,696	△3,056	△31.3
7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5,629	2,861	△2,768	△49.2
8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916	672	△1,244	△64.9
9	인성교육진흥사업	155	5	△150	△96.8
10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307	199	△108	△35.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88,601	200,300	△88,301	△30.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5,095,457	△209,590	△4.0
13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901,638	△191,271	△17.5
14	국립대학 인건비	1,872,672	1,855,675	△16,997	△0.9
15	대학구조개혁 지원	11,238	6,290	△4,948	△44.0
16	사립대학 경영지원 사업	1,973	413	△1,560	△79.1
17	개인기초연구(교육부)(R&D)	2,752	1,502	△1,250	△45.4

주1) 주요 감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감액 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총지출기준)

마. 기금운용계획안

1) 개요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조 6,488억 5,000만원(총계기준)으로 전년 대비 1,908억 6,700만원(1.3%) 증가하였음.

<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총계) >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 감	
	계획(A)	수정		(B-A)	(%)
사학진흥기금	565,039	565,039	409,793	△155,246	△27.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713,273	13,713,273	14,239,057	525,784	3.8
합계	**14,278,312**	**14,278,312**	**14,648,850**	**190,867**	**1.3%**

자료: 교육부

2) 종료 및 증감 사업

가) 사학진흥기금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4,09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2억 4,600만원(△27.5%) 감액되었음.

❑ 사학진흥기금 주요종료사업으로는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1,200억 5,000만원)이 종료 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종료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 예산	비고
[사학진흥기금]			
1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120,050	

자료: 교육부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사업이 전년 대비 381억 7,000만원(128.4%) 증액된 679억 700만원,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이 전년대비 7억 4400만원(67.7%) 증액된 18억 4,3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학진흥기금]					
1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29,737	67,907	38,170	128.4
2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099	1,843	744	67.7

주1) 주요 증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 또한,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이 전년 대비 394억 1,700만원(△18.1%) 감액된 1,786억 4,600

만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이 1억원(△50.0%) 감액된 1억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학진흥기금]					
1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학지흥기금)	218,063	178,646	△39,417	△18.1
3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학진흥기금)	200	100	△100	△50.0

주1) 주요 감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202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14조 2,390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57억 8,400만원(3.8%)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가 전년 대비 3,447억 5,400만원(7.0%) 증액된 5조 2,664억 3,500만원,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가 전년 대비 280억 1,500만원(5.3%) 증액된 5,526억 900만원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921,681	5,266,435	344,754	7.0
2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	524,594	552,609	28,015	5.3

주1) 주요 증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 또한, 주요 감액사업으로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사업이 전년 대비 617억 3,300만원(△7.6%) 감액된 7,525억 8,200만원이 계획되었음.

<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명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퇴직수당급여 (사립학교연금기금)	814,315	752,582	△61,733	△7.6

주1) 주요 감액 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총지출 기준

2.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가. 일반회계

1) 세입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07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3,717억 3,700만원 대비 2,410억 1,800만원(△64.8%) 감액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수입 50억 9,200만원, 경상이전수입 758억 8,7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9,6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126억 5,200만원, 관유물매각대 9억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6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60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5 예산 (A)	2025 추경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71,737	371,737	130,719	△241,018	△64.8
일반회계	11.재산수입			21,818	21,818	5,092	△16,726	△76.7
		51.관유물대여료		1,271	1,271	580	△691	△54.4
			511.토지대여료	571	571	277	△294	△51.5
			512.건물대여료	700	700	303	△397	△56.7

구분	관	항	목	2025 예산 (A)	2025 추경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53.전대차관이자수입	1	1	1	-	-
			534.기타민간전대차관 이자수입	1	1	1	-	-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546	20,546	4,511	△16,035	△78.0
			546.기타재산이자수입	20,546	20,546	4,511	△16,035	△78.0
		12.경상이전수입		285,360	285,360	75,887	△209,473	△73.4
			56.벌금,몰수금및과태료	133	133	122	△11	△8.3
			563.과태료	67	67	80	13	19.4
			564.징계부과금	66	66	42	△24	△36.4
			57.변상금및위약금	328	328	368	40	12.2
			571.변상금	212	212	254	42	19.8
			572.위약금	116	116	114	△2	△1.7
			58.가산금	10	10	10	-	-
			581.가산금	10	10	10	-	-
			59.기타경상이전수입	284,889	284,889	75,387	△209,502	△73.5
			596.기타경상이전수입	284,889	284,889	75,387	△209,502	△73.5
		13.재화및용역판매수입		183	183	96	△87	△47.5
			69.잡수입	183	183	96	△87	△47.5
			691.기타잡수입	183	183	96	△87	△47.5
		14.수입대체경비수입		11,775	11,775	12,652	877	7.4
			65.면허료및수수료	6,775	6,775	5,509	△1,266	△18.7
			651.면허료및수수료	6,775	6,775	5,509	△1,266	△18.7
			69.잡수입	5,000	5,000	7,143	2,143	42.9

구분	관	항	목	2025 예산 (A)	2025 추경	2026 예산안 (B)	증 감	
							(B-A)	%
			691.기타잡수입	5,000	5,000	7,143	2,143	42.9
	15.관유물매각대			2,648	2,648	900	△1,748	△66.0
		71.고정자산매각대		606	606	606	-	-
			713.기타고정자산매각대	606	606	606	-	-
		72.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29	1,929	293	△1,636	△84.8
			721.토지매각대	1,929	1,929	293	△1,636	△84.8
		73.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매각대		113	113	1	△112	△99.1
			731.재고자산매각대	113	113	1	△112	△99.1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6	56	56	-	-
		77.전대차관원금회수		56	56	56	-	-
			774.기타민간전대차관원금회수	56	56	56	-	-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49,897	49,897	36,036	△13,861	△27.8
		91.전입금		49,897	49,897	36,036	△13,861	△27.8
			913.기금전입금	49,897	49,897	36,036	△13,861	△27.8

자료: 교육부

2) 세출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100조 3,507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86억 100만원(1.0%)이 증액되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81조 7,872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69억 6,800만원(1.0%) 증액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은 17조 6,91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4억 9,2000만원(1.2%) 증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5,489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억 2,100만원(5.4%) 증액되었음.

❑ 또한, 교육일반 부문은 1,521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300만원(1.4%)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전년 대비 58억 8,700만원(3.6%) 증액된 1,710억 5,800만원임.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99,322,129	97,078,363	100,350,730	1,028,601	1.0%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1,010,325	79,123,308	81,787,293	776,968	1.0%
고등교육 부문	17,475,830	17,119,081	17,691,322	215,492	1.2%
평생 · 직업교육 부문	520,680	520,680	548,901	28,221	5.4%
교육일반 부문	150,123	150,123	152,156	2,033	1.4%
기초생활보장 부문	165,171	165,171	171,058	5,887	3.6%

자료: 교육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7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200만원(45.3%) 증액되었음.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5,032	5,032	7,314	2,282	4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재산수입			925	925	2,059	1,134	122.6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25	925	2,059	1,134	122.6
			546.기타재산이자수입	925	925	2,059	1,134	122.6
	12.경상이전수입			4,107	4,107	5,255	1,148	28.0
		59.기타경상이전수입		4,107	4,107	5,255	1,148	28.0
			596.기타경상이전수입	4,107	4,107	5,255	1,148	28.0

자료: 교육부

2) 세출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332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3억 4,000만원(△28.4%) 감액되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31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3억 4,000만원(△28.5%) 감액되었으며, 고등교육 부분은 17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음.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325,595	325,595	233,255	△92,340	△28.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23,875	323,875	231,535	△92,340	△28.5%
고등교육 부문	1,720	1,720	1,720		-

자료: 교육부

다.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7조 3,163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27억 1,700만원(3.9%) 증액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이 연장됨을 전제로 함.

< 2026년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6,663,592	16,306,843	17,316,309	652,717	3.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재산수입			9,348	9,348	27,173	17,825	190.7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348	9,348	27,173	17,825	190.7
			546.기타재산이자수입	9,348	9,348	27,173	17,825	190.7
	12.경상이전수입			150,000	150,000	393,821	243,821	162.5
		59.기타경상이전수입		150,000	150,000	393,821	243,821	162.5
			596.기타경상이전수입	150,000	150,000	393,821	243,821	162.5
	14.수입대체경비수입			6,045	6,045	9,656	3,611	59.7
		65.면허료및수수료		6,045	6,045	9,656	3,611	59.7
			651.면허료및수수료	6,045	6,045	9,656	3,611	59.7
	34.세계잉여금			120,942	120,942	28,611	△92,331	△76.3
		89.세계잉여금이입액		120,942	120,942	28,611	△92,331	△76.3
			893.전년도세계잉여금	120,942	120,942	28,611	△92,331	△76.3

구분	관	항	목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377,257	16,020,508	16,857,048	479,791	2.9
		91.전입금		16,377,257	16,020,508	16,857,048	479,791	2.9
			911.일반회계전입금	16,377,257	16,020,508	16,857,048	479,791	2.9

자료: 교육부

2) 세출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6조 6,250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77억 7,200만원(3.1%) 증액되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 부문은 16조 66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9억 2,600만원(3.0%) 증액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6,184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억 4,600만원(6.3%) 증액되었음.

< 2026년도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16,127,278	15,770,529	16,625,050	497,772	3.1%
고등교육 부문	15,545,698	15,188,949	16,006,624	460,926	3.0%
평생 · 직업교육 부문	581,580	581,580	618,426	36,846	6.3%

자료: 교육부

라. 영유아특별회계

1) 세입

❑ 영유아특별회계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존 일반회계(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8개 사업)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등 1개 사업)로 이원화된 재원을 통합하여 신설하였음.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영유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9조 2,233억 3,500만원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영유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분	관	항	목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	-	9,223,335	9,223,335	순증
영유아특별회계	14.수입대체경비수입			-	-	8,723	8,723	순증
		54.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	-	287	287	순증
			546.기타재산이자수입	-	-	287	287	순증
		59.기타경상이전수입		-	-	8,436	8,436	순증
			596.기타경상이전수입	-	-	8,436	8,436	순증
	34.세계잉여금			-	-	18,950	18,950	순증
		89.세계잉여금이입액		-	-	18,950	18,950	순증
			893.전년도세계잉여금	-	-	18,950	18,950	순증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	-	9,195,662	9,195,662	순증
		91.전입금		-	-	9,195,662	9,195,662	순증
			911.일반회계전입금	-	-	9,195,662	9,195,662	순증

2) 세출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영유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9조 2,23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되었음.

❑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 일원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등 1개 사업)와 일반회계(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8개사업) 사업이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신설 되었기 때문임.

< 2026년도 영유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총계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	-	9,223,335	9,223,335	순증
영유아및초중등교육	-	-	9,223,335	9,223,335	순증

자료: 교육부

3. 2026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사학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3]에 따라 사학기관의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 2026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전년 5,650억원보다 1,552억원(△27.5%)감액한 4,098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항 목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합 계	5,650	4,098	△1,552	합 계	5,650	4,098	△1,552
자체수입	1,763	1,970	207	사업비	3,698	2,492	△1,206
정부내부수입	3,573	1,867	△1,706	기금운영비	80	82	2
여유자금회수	315	261	△54	정부내부지출	1,626	1,249	△377
				여유자금운용	246	275	29

자료: 교육부

3)「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잡수입, 융자원금 회수)과 정부내부수입(기금예수금), 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97억 9,300만원임.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수입	○ 자체수입	176,255	196,982	20,727	11.8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4,700	42,517	7,817	22.5
	-기타경상이전수입	2,397	1,297	△1,100	△45.9
	-잡수입	1,099	1,044	△55	△5.0
	-융자원금회수	138,059	152,124	14,065	10.2
	○ 정부내부수입	357,264	186,721	△170,543	△47.7
	-기금예수금	235,477	186,721	△48,756	△20.7
	-일반회계 전입금	121,787	-	△121,787	△100.0
	○ 여유자금회수	31,520	26,090	△5,430	△17.2
	-정부예금회수	31,520	26,090	△5,430	△17.2
합 계		565,039	409,793	△155,246	△27.5

자료: 교육부

❑ 수입계획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07억 2,700만원 증가한 1,969억 8,2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액 감액되어 전년 대비 1,705억 4,300만원 감액된 1,867억 2,100만원으로 계획하였음.

❑ 여유자금회수는 전년도 이월액이 감소함에 따라 54억 3,000만원 감소된 260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였음.

2) 지출계획안

가) 개요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지출은 경상지출[학교경영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융자지출(행복기숙사지원사업,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기금운영비(인건비, 기타경비), 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원리금 상환) 및 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97억 9,300만원임.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지출	ㅇ 사업비	369,845	249,192	△120,653	△32.6
	- 경상지출	1,795	2,539	744	41.4
	- 융자지출	368,050	246,653	△121,397	△33.0
	ㅇ 기금운영비	7,996	8,156	160	2.0
	ㅇ 정부내부지출	162,568	124,947	△37,621	△23.1
	- 공자기금 원금상환	123,500	80,000	△43,500	△35.2
	- 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	17,800	20,841	3,041	17.1
	- 공자기금 이자상환	8,768	10,682	1,914	21.8
	-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12,500	13,424	924	7.4
	ㅇ 여유자금운용	24,630	27,498	2,868	11.6
	- 통화금융기관 예치	24,630	27,498	2,868	11.6
합 계		565,039	409,793	△155,246	△27.5

자료: 교육부

나) 주요 증감 내역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경상지출은 학교경영 지원사업이 18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4,400만원 증액,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사업은 6억 9,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융자지출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자금 융자사업 1,786억 4,600만원, 행복기숙사지원사업 679억 700만원,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1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13억 9,700만원이 감액됨.

❑ 기금운영비는 81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함.

❑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원금상환액이 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상환액은 106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400만원 증가함. 주택도시기금에서 예수한 원리금 상환액으로는 원금상환액이 208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상환액은 134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2,400만원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은 전년보다 28억 6,800만원이 증액된 274억 9,8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2026년도 사학진흥기금 기금운용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A)	2025년 수정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
총 계	565,039	565,039	409,793	△155,246	△27.5
[사학지원계정] 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099	1,099	1,843	744	67.7
[사학지원계정] 사립학교교육환경개선자금 융자(사학진흥기금)(융자)	218,063	218,063	178,646	△39,417	△18.1
[사학지원계정]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지원 (사학진흥기금)(융자)	120,050	120,050	-	△120,050	△100.0
[사학지원계정] 행복기숙사지원사업(사학진흥기금)(융자)	29,737	29,737	67,907	38,170	128.4
[청산지원계정] 폐교대학청산지원융자(사학진흥기금)	200	200	100	△100	△50.0
[사학지원계정] 인건비(사학진흥기금)	6,197	6,197	6,439	242	3.9
[사학지원계정] 기타경비(사학진흥기금)	1,699	3,502	1,667	△32	△1.9
[사학지원계정] 대학재정분석(사학진흥기금)	100	30	50	△50	△50.0
[사학지원계정] 정보시스템운영(사학진흥기금)(정보화)	696	696	696	-	-
[사학지원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123,500	123,454	80,000	△43,500	△35.2
[사학지원계정]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원금상환	17,800	17,846	20,841	3,041	17.1
[청산지원계청]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415	415	243	△172	△41.4
[사학지원계정]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353	8,353	10,439	2,086	25.0
[사학지원계정]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12,500	12,500	13,424	924	7.4
[사학지원계정] 통화금융기관예치	24,323	22,590	27,282	2,959	12.2
[청산지원계정] 통화금융기관예치	307	307	216	△91	△29.6

자료: 교육부

3) 2026년 기금운용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 현황 및 재정상태

가) 추정 재정운용 현황

❑ 2026년 기금운용안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융자지원학교로부터 받은 융자이자 수입 및 수입대체경비(연수 및 컨설팅) 등 사업수익 397억 3,700만원과 사업외 수익 51억 9,200만원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이자비용 등 341억 500만원의 사업비용과 사업외 비용을 9억 9,000만원으로 추정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77억 7,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6년 사학진흥기금 추정 재정운용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1. 사업수익	33,747	33,747	39,737	5,990
2. 사업비용	30,363	30,363	34,105	3,742
3. 사업총이익(1-2)	3,384	3,384	5,632	2,248
4. 사업관리비	-	-	-	-
5. 사업이익(3-4)	3,384	3,384	5,632	2,248
6. 사업외 수익	126,322	126,322	5,192	△121,130
7. 사업외 비용	912	912	990	78
8. 경상이익	-	-	-	-
9. 특별이익	-	-	-	-
10. 특별손실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8,794	128,794	9,834	△118,960
12. 법인세비용	26,918	26,918	2,055	△24,863
13. 당기순이익	101,876	101,876	7,779	△94,097

자료: 교육부

나) 추정 재정상태

❑ 동 기금의 추정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2026년 말 총자산은 2조 2,195억 2,900만원으로 이 중 77.7%인 1조 7,233억원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융자금 지원으로 운용하고, 유동자산 4,758억 3,500만원은 단기 융자 원금 상환에 따른 유동자산이며, 현금성 대기자금이 있을 경우 연기금 투자풀로 운용할 계획임.

< 2026년 사학진흥기금 추정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B-A)
	당초(A)	수정		
1. 유동자산	376,631	376,631	475,835	99,204
2. 고정자산	1,648,398	1,648,398	1,743,694	95,296
(1) 투자자산	1,628,771	1,628,771	1,723,300	94,529
(2) 유형자산	17,931	17,931	17,931	-
(3) 무형자산	1,576	1,576	2,272	696
(4) 기타비유동자산	120	120	191	71
자산총계(가)	**2,025,029**	**2,025,029**	**2,219,529**	**194,500**
1. 유동부채	141,300	141,300	100,841	△40,459
2. 고정부채	1,289,200	1,289,200	1,516,380	227,180
부채합계(나)	**1,430,500**	**1,430,500**	**1,617,221**	**186,721**
1. 자본금	195,832	195,832	195,832	-
2. 이익잉여금	398,697	398,697	406,476	7,779
자본합계(다)	**594,529**	**594,529**	**602,308**	**7,779**
자본 및 부채 총계	**2,025,029**	**2,025,029**	**2,219,529**	**194,500**

자료: 교육부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

❑ 동 기금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2[4]에 따라 설치되어 금융기관에의 예입·신탁, 유가증권 매입,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등 기금증식과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관리·운영되고 있음. 동 기금의 2026년 수입 및 지출규모는 14조 2,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8억원(3.8%)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사학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항목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항목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합계	137,133	142,391	5,258	합계	137,133	142,391	5,258
자체수입	73,440	64,758	△8,682	사업비	63,694	66,807	3,113
정부내부수입	9,693	8,266	△1,427	기금운영비	316	316	-
여유자금회수	54,000	69,367	15,367	정부내부지출	499	360	△139
				여유자금운용	72,624	74,908	2,284

자료: 교육부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1) 수입계획안

❑ 2026년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사회보장기여금, 관유물대여료, 이자수입, 잡수입, 융자원금 회수 등)과 정부내부수입(일반회계 전입금), 여유자금 회수(유가증권 매각대, 정부예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조 2,391억원임.

< 2026년도 사학연금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수입	ㅇ 자 체 수 입	7,343,963	6,475,791	△868,172	△11.8
	-사회보장기여금	4,031,283	3,989,052	△42,231	△1.0
	-관유물 대여료	20,951	21,355	404	1.9
	-기타이자및재산수입	1,964,815	1,506,843	△457,972	△23.3
	-기타경상이전수입	40,813	40,632	△181	△0.4
	-잡수입	909	909	-	-
	-융자원금 회수	1,285,192	917,000	△368,192	△28.6
	ㅇ 정부내부수입	969,306	826,610	△142,696	△14.7
	-전입금	969,306	826,610	△142,696	△14.7
	ㅇ 여유자금회수	5,400,004	6,936,656	1,536,652	28.5
	-유가증권매각대	2,240,248	2,621,822	381,574	17.0
	-정부예금회수	3,159,756	4,314,834	1,155,078	36.6
합 계		13,713,273	14,239,057	525,784	3.8

자료: 교육부

❑ 수입계획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은 2025년에 비해 관유물대여료 4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법인 및 개인부담금) 422억 3,100백만원, 기타이자 및 재산수입 4,579억 7,200만원, 융자원금 회수 3,681억 9,200만원 감소하였음.

❑ 정부내부수입의 경우는 8,266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6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여유자금회수(금융자산)의 경우 유가증권매각대 2조 6,218억 2,200만원과 정부예금회수 4조 3,148억 3,400만원으로 총 6조 9,366억 5,600만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2) 지출계획안

가) 개요

❑ 2026년 사학연금기금의 지출은 경상지출(회관운영사업, 정보화사업, 고객지원, 연금드림콜센터, 자금운용사업비), 의무지출(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융자지출(생활안정자금 대여, 국고학자금 대여), 기금운영비(인건비, 기타운영비), 정부내부지출(국고학자금 반환) 및 여유자금운용(예치금, 유가증권 매입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조 2,391억원임.

< 2026년 사학연금기금 지출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지출	ㅇ 사업비	6,369,366	6,680,669	311,303	4.9
	- 경상지출	26,667	26,410	△257	△1.0
	- 의무지출	5,784,693	6,069,909	285,216	4.9
	- 융자지출	558,006	584,350	26,344	4.7
	ㅇ 기금운영비	31,591	31,648	57	0.2
	ㅇ 정부내부지출	49,897	36,036	△13,861	△27.8
	ㅇ 여유자금운용	7,262,419	7,490,704	228,285	3.1
	- 예치금	3,094,481	4,368,717	1,274,236	41.2
	- 유가증권매입	4,167,938	3,121,987	△1,045,951	△25.1

구 분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합 계	13,713,273	14,239,057	525,784	3.8

자료: 교육부

나) 주요 증감 내역

❑ 2026년도 사학연금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경상지출은 회관운영사업이 6억 4,100만원, 고객지원사업은 4,500만원, 연금드림콜센터사업은 5,700만원, 자금운용사업은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화사업은 12억 2,500만원 감소함.

❑ 의무지출은 연금급여 5조 2,664억 3,500만원, 재해보상급여 508억 9,200만원, 퇴직수당급여 7,525억 8,2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52억 1,600만원이 증가함.

❑ 융자지출은 생활안정자금대여 280억 1,500만원 증액, 국고학자금대여 16억 7,1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63억 4,400만원이 증가함.

❑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231억 5,800만원, 기타운영비 8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음.

❑ 정부내부지출은 일반회계전출(대여학자금반환)에 국고학자금 미집행 반환금으로 약 360억원을 반영함.

❑ 여유자금운용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282억 8,500만원 증액된 7조 4,907억 4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202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기금운용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계획 (A)	2025년 수정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
총 계	13,713,273	13,713,273	14,239,057	525,784	3.8
회관운영사업(사립학교연금기금)	16,937	16,937	17,578	641	3.8
정보시스템구축(사립학교연금기금)(정보화)	5,845	5,845	4,620	△1,225	△21.0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33,412	33,412	31,741	△1,671	△5.0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융자)	524,594	524,594	552,609	28,015	5.3
고객지원(사립학교연금기금)	868	868	913	45	5.2
연금드림콜센터(사립학교연금기금)	1,714	1,714	1,771	57	3.3
자금운용사업비(사립학교연금기금)	1,303	1,303	1,528	225	17.3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921,681	4,921,681	5,266,435	344,754	7.0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8,697	48,697	50,892	2,195	4.5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814,315	814,315	752,582	△61,733	△7.6
인건비(사립학교연금기금)	22,374	22,374	23,158	784	3.5
기타경비(사립학교연금기금)	9,217	9,217	8,490	△727	△7.9
일반회계전출(대여학자금반환)	49,897	49,897	36,036	△13,861	△27.8
통화금융기관예치	451,101	451,101	635,975	184,874	4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643,380	2,643,380	3,732,742	1,089,362	41.2
국채매입	436,502	436,502	408,127	△28,375	△6.5
국채외채권매입	516,586	516,586	521,382	4,796	0.9

구 분	2025년 계획 (A)	2025년 수정	2026년 계획안 (B)	증 감	
				(B-A)	%
주식매입	2,031,139	2,031,139	1,225,163	△805,976	△39.7
기타유가증권매입	1,183,711	1,183,711	967,315	△216,396	△18.3

3) 2026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 현황 및 재정상태

가) 추정 재정운용 현황

❑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 재정운용표에 따르면, 교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수입과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6조 4,785억원, 사업외수익 9억원에서 연금급여 등 사업비용 6조 462억원, 사업관리비 593억원, 사업외비용 238억원 등을 감하여 총 3,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계획하고 있음.

< 2026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추정 재정운용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말 계획		2026년말 계획안(B)	증감 (B-A)
	당초(A)	수정		
1. 사업수익	6,945,002	6,945,002	6,478,481	△466,521
2. 사업비용	5,761,063	5,761,063	6,046,279	285,216
3. 사업총이익(1-2)	1,183,939	1,183,939	432,202	△751,737
4. 사업관리비	58,819	58,819	59,339	520
5. 사업이익(3-4)	1,125,120	1,125,120	372,863	△752,257
6. 사업외 수익	909	909	909	-
7. 사업외 비용	23,740	23,740	23,740	-
8. 경상이익[(5+6)-7]	1,102,289	1,102,289	350,032	△752,257
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02,289	1,102,289	350,032	△752,257
10. 당기순이익	1,102,289	1,102,289	350,032	△752,257

자료: 교육부

❑ 수익부문에서 교원은 2.9% 감소, 사무직원 0.6% 증가를 반영하여, 부담금 수입이 전년대비 125억원 감소하였음. 또한 자금운용수익 등은 전년대비 4,539억원(2025년 1조 9,444억원→2026년 1조 4,90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비용부문에서는 급여지출이 전년대비 2,852억원 증가(2025년 5조 7,611억원→2026년 6조 462억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및 기타경비 사업비용 등은 약 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나) 추정 재정상태

❑ 동 기금의 추정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2026년 말 총자산은 30조 1,054억원으로, 이 중 9.4%인 약 2조 8,334억원을 단기매매채권·주식 등 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90.6%인 27조 2,719억원을 만기보유채권·대여사업대여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임.

< 2026년 사학연금기금 추정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말 계획		2026년말 계획안(B)	증감(B-A)
	당초(A)	수정		
1. 유 동 자 산	3,329,925	3,329,925	2,833,436	△496,489
2. 비 유 동 자 산	26,553,733	26,553,733	27,271,977	718,244
(1) 투 자 자 산	24,923,879	24,923,879	25,975,300	1,051,421
(2) 기 타 자 산	1,028,134	1,028,134	742,083	△286,051
(3) 국고위탁대여금	199,710	199,710	155,948	△43,762
(4) 유 형 자 산	393,088	393,088	390,666	△2,422
(5) 무 형 자 산	8,923	8,923	7,981	△942
자 산 총 계(A)	29,883,658	29,883,658	30,105,413	221,755
1. 유 동 부 채	184,721	184,721	87,008	△97,713
2. 비 유 동 부 채	368,965	368,965	332,929	△36,036
부 채 총 계(B)	553,687	553,687	419,938	△133,749
1. 적립금및잉여금	25,117,561	25,117,561	25,467,592	350,031
2. 순자산조정	4,212,410	4,212,410	4,217,882	5,472
자 본 총 계(A-B)	29,329,971	29,329,971	29,685,475	355,504
자본 및 부채 총계	29,883,658	29,883,658	30,105,413	221,755

자료: 교육부

4.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교육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생활기반시설인 국립대 기숙사에 대하여 BTL방식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함.

❑ 교육부가 2026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전년 대비 1,023억 7,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한도액 (A)	2026년 한도액안 (B)	증감		2026년 사업내역
			(B-A)	%	
총한도액	-	102,373	102,373	순증	
1. 국가사업	-	102,373	102,373	순증	- 충남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	-	-	

자료: 교육부

나.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2026년도 교육부 소관의 BTL 정부지급금 규모는 전년 대비 539억 200백만원(38.8%) 증액된 1,929억 5,000만원임.

❑ 국립대 기숙사 및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414억 7,600만원(33.9%) 증액된 1,638억 4,200만원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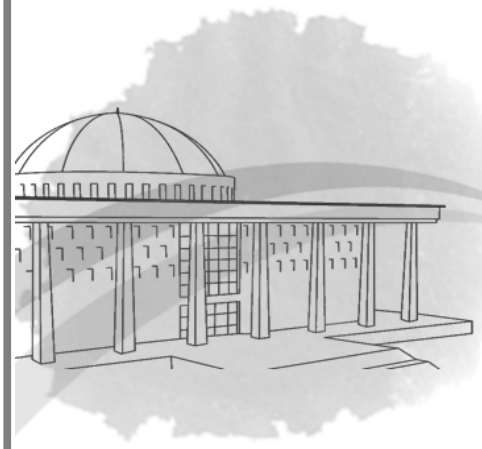
❑ 전국 초·중·고등학교(국립 제외)의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24억 2,600만원(74.5%) 증액된 291억 800만원임.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
소 계	139,048	192,950	53,902	38.8
국립대학 시설확충(국립대학)	122,366	163,842	41,476	33.9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6,682	29,108	12,426	74.5

Ⅱ. 검 토 의 견



1. 정책기획관

<세입>

1) 징계부가금(56-564)[5]

○ 현재 부과된 징계부가금 중 16억 1,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징계부가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부는 실제 미납된 징계부가금의 규모와 개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다하고, 미납된 징계부가금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징계처분의 사유로 부과된 징계부가금에서 각 학교별로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징계부가금(56-564)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해 국가가 수납할 징계 관련 부가금으로서, 공무원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로 부과하는 것임.[6]

---

5) 문의: 02-6788-5188

6)「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사. (생 략)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400만원(△36.4%)이 감액된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징계부가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징계부가금	12	66	42	△24	△36.4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적정 징계부가금 편성과 적극적인 징수 필요

❑ 징계부가금(56-564)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 수납액은 낮은 편이며 수납율은 최대 27.4%임.

< 최근 4년간 징계부가금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2	49	146	40	81.6	27.4	106
2023	55	107	-	-	-	107
2024	66	122	12	18.1	9.8	110
2025	66	17	3	4.5	17.6	14

자료 : 교육부

❑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부가금의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징계부가금의 전체 규모나 개별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이 불규칙하고 금액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결산 평균액인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징계부가금의 미납현황을 보면, 25년 6월말 기준 징계조치된 대상자를 상대로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 3,505만원으로, 이 중 2,330만원이 납부되고 16억 1,175만원은 미납 상태에 있음.

< 징계부가금의 미납현황(2025.6월말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처분 년도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배수	부과 금액	납부 금액	미납액	미납사유
안동대	2012	감봉	공금 횡령	1	10,700	-	10,700	압류가능 재산 없음
전북대	2018	정직	사기	3	51,000	1,000	50,000	징계부가금 대상자(외국인 전임교원)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조치되어 출국. 징계부가금 징수 불가능 북전주세무서장은 징수대상자 연락두절, 보유재산이 없어 국세체납처분 준용불가능등의 사유로 징계부가금 징수의뢰 반려
충남대	2019	해임	업무상 횡령	1	15,500	-	15,500	북대전세무서에 징수 의뢰(2021.6.29.), 북대전세무서로 미수납 채권 회수 관련 징수 의뢰 회신(2025.4.30.) 결과, 부동산 압류 중으로 시효중단 상태임.
국립 순천대	2019	파면	금품 수수	3	98,727	-	98,727	법정구속
한밭대	2020	정직	사기	1	32,815	22,300	10,515	분할납부 중(매월 1,000)
경북대	2021	해임	사기, 배임	1	215,262	-	215,262	관할 세무서 체납액 징수 위탁
부산대	2021	파면	배임, 사기, 횡령	1	86,478	-	86,478	납부독려진행

구분	처분 년도	징계 처분	징계 사유	배수	부과 금액	납부 금액	미납액	미납사유
전북대	2021	정직	공금 횡령	1	200,818	-	200,818	납부안내하였으나 폐문 부재이고 현재 다른 사건 및 공금 횡령 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심 진행 중
군산대	2022	정직	학생 인건비 회수	1	359,613	-	359,613	행정소송 진행 중
강원 대학교	2024	정직	사기	3	80,937	-	80,937	최근 행정소송 확정에 따라 징계부가금 고지서 재발부 예정
강원 대학교	2024	해임	사기	2	385,830	-	385,830	행정소송 2심 진행 중
강원대 학교	2024	정직	공금 횡령	2	43,168	-	43,168	행정소송 1심 선고, 항소 여부 대기중
국립군산 대학교	2024	해임	학생 인건비 회수	2	54,204	-	54,204	납부절차 진행중
총 계					1,635,052	23,300	1,611,752	

자료 : 교육부

대상자가 이미 출국조치되어 국내에 없는 경우 등 징계부가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징계부가금의 징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가능한 징계부가금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미납상태에 있는 징계부가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징수할 의지가 없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실제 미납된 징계부가금의 규모와 개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다하고, 미납된 징계부가금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별로 징계부가금의 부과 기준에서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부산대의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가 배임·사기·횡령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했음에도 재산상 이득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지만, 전북대의 경우에는 사기 사건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비위행위자에게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음.

또한, 동일한 징계사유(사기)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비위행위자에게 전북대의 경우 3배, 한밭대의 경우에는 1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동일 사안 간에도 큰 차이가 존재함.

❑ 물론 법률에 따라 징계사유의 행위 유형, 양태,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정할 수 있으나,[7] 과도하게 형평성을 잃은 처분은 징계처분의 일환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수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현행 법령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고려사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8] 법령에서 위임 없이 부처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4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4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 ~ 2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예산 및 기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그러나 동 기준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배임·사기·횡령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금품비위 금액등의 3~5배의 징계부가금은 부과되어야 함에도 1배에 불과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으며,

---

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징계부가금은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1의6]에 비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음.

법원의 경우에도 실제 재판에서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9]가 정하는 재판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법관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9)「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회계>

1) 정책연구개발사업(4033-300)[10)]

○ 교육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시에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결과물에 비공개 대상이 많아 불투명하게 운영('25년 10월 기준 29.7% 비공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과제의 공개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정책연구개발사업(4033-300)은 교육분야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새로운 정책도출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시의성·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7,200만원(△6.3%)이 감액된 10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10) 문의: 02-6788-5188

< 2026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정책연구개발사업	830	1,132	1,060	△72	△6.3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의 구체성 부족 및 공개율 저조 문제 개선 필요

❑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교육 혁신,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현안 적기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10억 6,000만원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총 3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임.

< 2026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정책연구개발사업	1,060	○ 정책연구비(260-02) : 1,060 ■ 정책연구 지원 · 정책연구 지원 : 1,060 (33.125×32개 과제)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12월)되면, 정책연구과제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차년도 정책연구 운영계획을 수립(차년도 1~2월)하고, 동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부처 내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국정과제·주요 현안과제 중심으로 과제 선정기준(중요도, 적절성, 활용도)에 따른 우선순위 검토 후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선정·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명과 과제별 연구비를 정하지 않은 채 연구비 총액만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어, 국회는 연구과제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이나 기존의 연구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연구과제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없음.

< 2023년~2026년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5년 10월 기준)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예산편성액	1,110 (34개과제 × 32.6백만원)	999 (30개과제 × 33.3백만원)	1,132 (34개과제 × 33.3백만원)	1,060 (32개과제 × 33.125백만원)
집행액	976 (30개과제 × 32.5백만원)	830 (34개과제 × 24.4백만원)	375* (10개과제 × 37.5백만원)	-
집행률	87.9%	83.1%	33.1%	

* '25년 정부 출범(6.3) 및 국정과제 발표(8.13) 등으로 하반기 정책연구 지원시기 변경(7월→9월)에 따라 예산집행 또한 순연됨. 현재 입찰진행 중인 건 포함 '25년 총 34개 과제가 선정되어 집행 예정임(11월 5일 기준 10개 과제 선금 집행 완료)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10월말 기준 과제수행 건수가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집행률도 33.1% 수준으로, 사업의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 집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진행한 정책연구과제의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어 국회를 비롯한 정책담당자나 연구자, 국민들이 해당 정책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부가 어떠한 주제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11)]

그런데, 실제 교육부에서 정책연구가 완료된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총 74개 중 현재(2025. 10월 기준) 52개의 정책연구과제만 공개(70.3%)

1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에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볼 때 공개율 저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관련 규정[12]에 따라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공개하고 있다는 의견임.[13]

❑ 그러나, 교육부가 2023년도에 수행한 정책연구과제를 기준으로 볼 때 29.7%에 해당하는 연구과제(74개 중 22개)가 모두 비공개대상 정보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검토가 필요할 것임.

---

1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교육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시에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의 구체성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과제의 공개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7031-315)[14)]

○ 인건비성 경비가 매년 동일하게 일정한 불용액(6억 7,000만원, 최근 4년간 집행률은 81~86%)이 발생한다는 것은 동 사업 예산이 실제 필요액 보다 과다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예산 산정 시에는 그간의 집행 경과와 실제 필요소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7031-315) 사업은 본부, 소속기관,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4,500만원(2.8%)이 증액된 53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14) 문의: 02-6788-5188

<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4,134	5,239	5,384	145	2.8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집행실적을 고려한 인건비성 경비의 편성 필요

❑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7031-315)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제복 구입,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은 2025년 7월 각 기관에서 조사한 2026년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정원)을 기준으로 인원(310명)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5,384	○ 상용임금(110-03) : 4,464 - 사회복무요원 보수 : 310명×1,200,000원×12월 ○ 피복비(210-03) : 53 - 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입 : 162명×309,840원 ○ 급식비(210-04) : 637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 310명×9,000원×19일×12월 ○ 국내여비(220-01) : 230 -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310명×3,000원×19일×12월

자료 : 교육부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0.8~86.1% 수준으로, 매년 약 6억 7,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2022	3,600	-	3,600	2,914	81.0	81.0	686
2023	4,473	△200	4,273	3,612	80.8	84.5	661
2024	4,804	-	4,804	4,134	86.1	86.1	670
2025	5,239	-	5,239	3,587	68.5	68.5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 예산이 인건비성 경비임에도 매년 일정한 금액(6억 6,100만원~6억 8,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계획 대비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배치 지연, 월중 신규 전입 등으로 인해 보수, 중식비, 여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가 매년 동일하게 일정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동 사업 예산이 실제 필요소요 보다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교육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산정할 때 그간의 집행 경과와 실제 필요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15)]

> ○ 교육부는 대학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 기자재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대학별 총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자재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 사업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환경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지원과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및 동물실험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6억 5,900만원(3.4%)이 증액된 2,02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15) 문의: 02-6788-5188

< 2026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22,650	195,666	202,325	6,659	3.4
○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263,078	111,029	163,664	52,635	47.4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59,572	84,637	38,661	△45,976	△54.3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1)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704-303) 사업의 내역 사업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① 산업수요, 교육과정 변화 등에 대응한 신규 범용 기자재 구매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을 위한 '교육실습기자재' 사업과 ②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한 반도체 기자재 등 고가의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및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을 위한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1,636억 6,400만원으로, '교육실습기자재' 사업에 923억 2,600만원,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에 713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131,029 ○ 교육실습기자재 : 92,091 - 2,488,946천원x37개교 ○ 고가첨단기자재 : 38,938 - 1,442,148천원x27개교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163,664 ○ 교육실습기자재 : 92,326 - 2,495,297천원x37개교 ○ 고가첨단기자재 : 71,338 - 2,642,148천원x27개교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12월)되면 교육부가 포뮬러 지표[16]에 따라 대학별 총액을 배분하고, 각 대학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다만, '고가·첨단기자재'는 대학이 한도액 내에서 우선 구매 대상을 요구('25.8월)하고, 교육부는 교육부 내에 설치된 고가·첨단 기자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타당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구매 대상을 선정('25.10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구체적인 구매대상이나 구매금액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총액만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16) 학생수, 기자재 보유·노후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37교 포뮬러 배분

❑ 이로 인하여 국회는 구매 대상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이나 기존의 구매 품목과 유사·중복되는 기자재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남.

❑ 교육실습기자재 사업의 경우에는 범용 기자재 구매 및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지출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포뮬러 지표에 따른 대학별 예산 분배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검토가 생략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 실제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의 경우에는 2025년 예산(920억 9,100만원)과 유사한 금액인 923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고가·첨단기자재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기자재 구매와는 달리 지출비용 1억원 이상인 고가·첨단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기자재의 구입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6년의 경우에는 2025년 389억 3,800만원인 동 사업의 예산이 713억 3,800만원으로 83.2% 증가(324억원)하였다는 점에서 예산 총액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포뮬러 지표에 따른 대학별 총액 배분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교육실습기자재 사업은 과거에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상적인 기자재와 고가·첨단기자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부터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학 단독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 기자재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반 기자재와 고가·첨단기자재를 구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따라서 해당 사업을 일반 기자재와 고가·첨단기자재로 구분한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을 일반 기자재와 동일하게 포뮬러 지표 기반의 총액 배분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고가·첨단기자재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실제로 포뮬러 지표에 따른 총액 배분 방식은 개별 기자재의 실질적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국립대학 전체 차원에서 첨단 기자재 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못하여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17]

예를 들어, 개별 대학은 포뮬러 지표에 따라 배정된 총액을 집행하는 데 치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기자재의 필요성보다는 예산 집행 자체가 우선시될 우려가 있음. 특히 표뮬러 지표 산정 시 집행률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개별 대학은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보다는 총액 확보와 예산 소진에 더 중점을 두게 될 수 있음.

❑ 이에 교육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가첨단기자재'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심사 필요

❑ 내역사업인 '동물실험센터 구축' 사업은 총 9개의 국립대학교에 동물실험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동물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18] 2026년도에는 진행 중인 3개교(경상대, 강원대, 제주대)의 동물실험센터 설립을 위하여 264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17) 교육부는 대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한 분야별(자연, 공학, 의학, 반도체 등) 기자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부합성, 중복성, 활용성, 적정성,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10월)한다는 입장임.

18) 총 9개교 : ('21년 사업)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22년) 제주대, 강원대, ('23년)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 2026년도 동물실험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동물실험센터 구축	26,493	○ 경상대 : 13,825 ○ 제주대 : 6,419 ○ 강원대 : 6,249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이미 우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시정요구(주의)를 받은 바 있음.[1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동 사업의 예산이 반영된 경상대, 제주대, 강원대의 경우에는 최대 집행률이 46.3%에 그치는 등 여전히 사업비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실집행액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편성과 예산교부로 최근 3년간 매년 이월액이 증가(강원대 : 3억 2,000만원 → 33억 3,900만원, 제주대 : 2억 7,300만원 → 36억 2,600만원, 경상대 : 4억 9,300만원 → 9억 9,600만원)하

19) 시정요구사항(주의) : 교육부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립대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용 지원시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장비구매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장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공동활용 효과 등을 위해 국립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를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022~2025년도 동물실험센터 구축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액 (A)	실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집행률 (B/A)
강원대	525	205	39.0	1,200	320	1,520	292	19.2
제주대	525	243	46.3	1,200	273	1,473	526	35.7
경상대	-	-	-	525	-	525	13	2.5

구분	2024년					2025.8월말					2026년
	예산	전년 이월	예산 현액 (A)	실집 행액 (B)	집행 률 (B/A)	예산	전년 이월	예산 현액 (A)	실집 행액 (B)	집행 률 (B/A)	예산
강원대	5,000	1,194	6,194	2,850	46.0	9,596	3,339	12,935	1,976	15.3	6,249
제주대	5,000	946	5,946	2,319	39.0	9,914	3,626	13,540	4,968	36.7	6,419
경상대	1,000	493	1,493	496	33.2	9,462	996	10,458	785	7.5	13,825

자료 :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에 대한 2026년 예산은 경상대, 제주대, 강원대의 동물실험센터 구축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 하에 남은 사업비 전액을 반영한 것인데, 그간의 집행실적과 최근의 집행현황, 전년도 이월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가능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경상대의 경우에는 총사업비(248억 1,200만원)의 과반이 넘는 예

산(138억 2,500만원, 55.7%)을 2026년도에 집행하게 되는데, 그간 설계 및 감리 선정 지연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되어 왔다는 점에서 2026년도 사업의 원활한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20]

○ 교육부는 보수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대학별 총액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방식을 채택하고, 실제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매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집행률 저하에 따른 이월액(2024년 한 해에만 약 3,920억)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자체수입금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립대학들이 당초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은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912억 7.100만원(△17.5%)이 감액된 9,01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 문의: 02-6788-5188

< 2026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997,298	1,115,224	901,638	△191,271	△17.5
○ 확충사업	267,912	354,200	180,856	△173,344	△48.9
○ 보수사업	515,014	379,650	473,582	93,932	24.7
○ 정책사업	115,794	93,493	83,358	△10,135	△10.8
○ BTL정부지급금	98,578	122,366	163,842	41,476	33.9
○ 의대여건개선	-	143,200	-	△143,200	순감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보수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과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 보수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과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보수사업’은 기존 건물에 대한 시설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여 건물의 수명 연장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보수·시설사업 관리용역·위험성평가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총 4,735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6년도 보수사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보수사업	473,582	○ 일반보수 : 471,472 - 대학보유 노후시설·설비 보수·보강,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 시설사업 관리용역 : 1,000 - 37개 국립대학 시설예산의 체계적인 집행 관리·강화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집행관리 사업비 ○ 위험성평가 용역 : 1,110 - 거점대학 9교 및 방송대(50), 교육대학 10교(10), 그 외 17교(30): 500(10교) + 100(10교) + 510(17교)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12월)되면 교육부가 일부 실소요액(2026년의 경우 749억원, 전체 예산의 15.7%)을 제외한 총액을 포뮬러 지표[21]에 따라 대학별로 배분하고, 각 대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2]에 따라 설치된 대학별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공모) 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집행하고 있음.

21) 학생수, 노후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37교 포뮬러 배분

22)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일부 실소요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업대상이나 금액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총액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회는 세부사업 대상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이나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국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낳게 됨.

❑ 특히 동 사업의 비용은 대부분 공사비(420-03)로 구성(2025년의 경우 전체 예산의 95.3%)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단가가 크기 때문에 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인하고 예산배분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총액배분 방식에 의해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70% 수준으로 집행률이 높지 못한데, 교육부는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을 국립대학에 교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1,497억 5,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매년 대규모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교부액의 집행잔액)되고 있음.[23]

23) 국립대학은 당해연도 교부액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자료작성시 이월액의 현황과 집행액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현액에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았음. 교육부는 동 사업은 타 사업(출연, 보조)과는 달리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별 학교의 집행 내역을 일일이 파악해야 이월액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보수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교육부		국립대학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 잔액	집행률
2021	159,735	159,402	159,402	159,559	125,924	836	32,799	78.9
2022	171,843	171,043	171,043	171,043	127,410	975	42,657	74.5
2023	519,701	518,821	518,821	518,821	387,017	4,430	127,374	74.6
2024	519,463	518,663	518,663	518,663	367,593	1,319	149,751	70.9

자료 : 교육부

이러한 이월의 규모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이 확대(1,718억 4,300만원→5,197억 100만원)되면서 같이 확대(426억 5,700만원→1,273억 7,400만원)되고 있음.

❑ 이처럼 동 사업의 집행률 저하, 예산 총액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월액의 증가로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국회 차원에서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부는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전체의 지출구조조정 총량 목표 달성 및 사업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보수사업이 포함된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정책사업비와 의대여건개선의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정책사업비의 2025년 예산은 934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1조 1,152억 2400만원)의 8.4%에 불과하고, 의대여건개선 사업은 의대증원과 이에 따른 의정갈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므로, 실제 지출구조조정의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전체 예산규모의 52.5%에 해당(2026년 기준)하며, 집행률이 높지 않고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는 '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교육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 사업의 예산 심의 시에는 그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 교육부는 시설 특성 상 파손 상황을 미리 예견할 수 없어 대학의 여건, 학교 구성원의 협의가 필요하여 모든 보수비를 심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모든 보수비를 명시하는 경우 긴급히 발생하는 소요에 대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2) 이월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처리방식 문제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은 실집행률이 높지 않음에도 교육부는 매년 편성된 예산 대부분을 국립대학에 교부하고 있어 2024년 기준 주요 사업에서 총 3,919억 1,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확충사업의 경우 최근 4년간 최저 1,041억 6,700만원에서 최고 1,910억 1,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으며, 보수사업의 경우 최저 327억 9,900만원에서 1,497억 5,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사업의 최근 4년간 교부액에 대한 이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확충사업	보수사업	정책사업
2021	136,545	32,799	49,562
2022	104,167	42,657	52,802
2023	170,875	127,374	45,820
2024	191,013	149,751	51,152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국립대학은 동 사업의 집행부진에 따른 이월액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8호[24]에 따라 자체수입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부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국립대학들이 오히려 자체 재원이 증가하는 인센티브를 얻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해 별도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25)]

❑ 이에 교육부는 이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집행률이 낮은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재정 유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11. 그 밖의 수입

25) 자료요청에 따라 최근(2025년 10월 31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2024년 81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음.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국고 이자 총액으로서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발생한 이자액만을 구분하여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또한, 해당 이자수입을 동 사업에 재투입하도록 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산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교육기획관

<일반회계>

1) 학생교육교류지원(4531-301)[26]

○ 교육부는 국비유학생 선발업무 보조인력을 위한 4대 보험료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 교육부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심사위원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하여야 할 것임.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학생교육교류지원(4531-301) 사업은 한국의 학생들을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글로벌 교육을 경험하게 하거나 외국의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친한(親韓) 인재를 양성하는 등 학생들간의 교육 경험을 확대하여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억 7,200만원(2.6%)이 감액된 13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6) 문의: 02-6788-5187

< 2026년도 학생교육교류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학생교육교류지원	11,175	14,054	13,682	△372	△2.6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6,093	6,545	7,015	470	7.2
○ 한일교육교류협력	3,042	5,235	4,450	△785	△15.0
○ 한국유학홍보	1,658	1,643	1,643	-	-
○ 청소년 교류 지원	382	631	574	△57	△9.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정확한 예산 편성 필요

❑ 학생교육교류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국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학문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유학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선발 전형을 통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국비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각 나라에 유학생으로 파견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며 2026년에 국비유학생 총 182명을 지원할 계획임.

이에 따라 국비유학생 선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을 1명 채용할 계획이며 이 보조인력에 대하여 지급할 급여, 정액급식비 등을 상용임금(110-03)·고용부담금(320-09)·복리후생비(210-12)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국비유학생 선발업무 보조인력 관련 예산안 >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B-A)/A
□ 상용임금(110-03)	30,689[27]	33,923	3,234	10.5%
○ 월급여	**25,648**	**27,504**	**1,856**	**7.2%**
○ 정액급식비	1,120	1,120	0	0%
○ 명절상여금	550	550	0	0%
○ 초과근무수당	3,602	4,749	1,147	31.8%
□ 고용부담금(320-09)	3,456	3,456	0	0%
○ 4대 보험료	**3,456**	**3,456**	**0**	**0%**
□ 복리후생비(210-12)	500	500	0	0%
○ 맞춤형 복지비	500	500	0	0%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비유학생 선발업무 보조인력의 2026년 월급여는 2025년 대비 7.2% 인상될 예정임. 월급여가 인상된다면 이에 맞추어 2026년 4대 보험의 보험료도 증액 편성하여야 할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2025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4대 보험의 사용자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내용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28].

27) 세부 항목을 전부 합하면 30,920천원이 맞겠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용임금 2025년 예산은 30,689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없이 반영한 것임.

28) 4대 보험 모두 사용자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면 보험료도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선발업무 보조인력의 월급여가 2026년에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에는 연금보험료 부담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5%였지만[29], 2026년부터는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기준소득월액의 4.75%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으므로[30] 이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였음.

면 이에 맞추어 4대 보험 고용부담금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29)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0)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시행일: 2026. 1. 1.>**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호의 해당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 교육부는 국비유학생 선발업무 보조인력 관련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고용부담금 예산(320-09)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2)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심사위원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 증액 필요

❑ 국비유학생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이 필요한데, 매년 국비유학생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심사위원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31].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숙박비 및 출장비 등을 위한 국내여비(220-01)가 부족하여 최근 2년간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220-02)에서 세목조정을 받아 충당한 바 있음.

< 최근 2년간 국내여비로 세목조정한 내역 >

(단위: 만원)

구 분	예산	세목조정	예산현액	세목조정 사유
□ 국내여비(220-01)				
○ 2024년	400	200	600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심사위원 여비로 사용하기 위해 세목조정
○ 2025년	400	250	650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31) 최근 3년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인원 및 심사위원 현황

연도	모집 인원	응시인원	심사위원 인원
2023	70	383	78
2024	58	435	84
2025	60	510	90

(자료: 교육부)

❑ 심사위원의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소요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 예산이 2년 연속 동결된 결과, 국외업무여비(220-02)로부터 세목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2026년 국내여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32].

32) 국내여비(220-01)로 세목조정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220-02) 예산현액의 감소로 2024~2025년 2년 연속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활용한 국비유학생 수학실태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2026년 국외업무여비(220-02) 예산의 적정 증액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3.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반회계>

1)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33]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교과목 운영, 교과목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대학에서 유사 교과목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면밀히 심사·선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이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사업은 공교육에 맞는 에듀테크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에듀테크 산업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축·운영하고, 교사·기업이 함께 에듀테크를 개발·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동 세부사업은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33) 문의: 02-6788-5189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이관되어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변경됨.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36억 2,800만원(45.7%)이 감액된 4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9,638	7,938	4,310	△3,628	△45.7
○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5,283	3,278	0	△3,278	순감
○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1,400	1,400	1,050	△350	△25.0
○ 교육현안 해결형 에듀테크 프로젝트	1,600	1,600	1,600	-	-
○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1,400	1,660	1,660	-	-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의 확산 효과 제고 필요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1301-301) 사업에 편성된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내역사업은 대학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여 고등교육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혁신적 교육 모델을 확산하는 고등교육 특화 소프트랩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과 기업이 매칭되어, 기업에서 AI 코스웨어를 적용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대학에서 이를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4년에는 22개 교과목이 신규개발(실증 포함, 이하 같음)되었으며, 2025년에는 2개 대학씩 공동으로 참여하여 7개 교과목을 신규개발하는 한편, 2024년에 개발된 교과목 중 14개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을 개발한 대학에서 고도화하고, 3개 교과목은 신규로 참여한 대학에서 실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동 사업은 2026년에 총 50개 교과목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4~2025년 사업 운영·참여 대학의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 현황 >

연번	구분	과정	교과목/프로그램	2024	2025
1	대학1	교과	일반물리학 및 실험	**신규개발** 22개 (100%)	**2024년 개발대학에서 고도화** 14개 (63.6%)
2	대학1	교과	대중문화속의영어의이해		
3	대학2	교과	디지털 기술과 미래사회		
4	대학3	교과	수학으로 여는 세상(대학수학)		
5	대학3	교과	간호연구		
6	대학4	교과	영어학개론		
7	대학5	교과	경제통계학		
8	대학5	교과	성인 학습 및 상담		
9	대학6	교과	미래사회와 소트웨어의 이해		
10	대학6	교과	보육과정		
11	대학7	교과	수학과 통계의 세계		
12	대학7	교과	대학생을 위한 기본수학		
13	대학9	교과	컴퓨팅사고-데이터기초		
14	대학9	교과	C프로그래밍		
15	대학9	교과	범죄와 형벌		**타대학에서 실증** 3개 (13.6%)
16	대학9	교과	창의코딩-모두의R		
17	대학10	교과	AI융합영어(초급)		
18	대학2	비교과	대학생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완전정복		**2025년 사업 제외** 5개 (22.7%)
19	대학8	비교과	학습공동체(스터디그룹)		
20	대학8	교과	중급 일본어강독		
21	대학4	교과	기초수학		
22	대학10	교과	초급토익		
23	대학11	교과	AI와함께하는 대학수학	-	**신규개발** 7개 ※ 2개 대학에서 공동 개발
	대학12	교과	대학수학2		
24	대학3	교과	AI코치 헬스케어용어		
	대학13	교과	AI코치 헬스케어용어		
25	대학14	교과	중국어회화		
	대학15	교과	Beginner Chinese I		
26	대학16	교과	음악의이해		
	대학17	교과	음악의이해		
27	대학18	교과	손에 잡히는 데이터시각화		
	대학9	교과	모두의파이썬		
28	대학9	교과	원가관리회계		
	대학19	교과	원가회계1		
29	대학20	교과	회계원리2		
	대학21	교과	재무회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4~2025년 사업 수행 경과를 살펴볼 때, 2026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은 2024년에 AI 코스웨어를 적용한 교과목을 보다 많은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학, 기초과학, 어문 계열 중심의 기초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2025년에는 대학 수요를 기반으로 하되 범용성 및 확산성을 고려하여 기초 및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됨.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의 효과는, 사업을 통해 개발된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을 보다 많은 대학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4년 사업 결과 및 2025년 사업 수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에 개발된 22개 교과목 중, 2025년 사업에서 해당 교과목을 개발한 대학이 이를 고도화하는 비중은 63.6%인 14개 교과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4년에 개발된 교과목을 다른 대학이 실증하는 비중은 13.6%인 3개 교과목 수준이고, 22.7%에 해당하는 5개 교과목은 2025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025년 사업에서는 2024년에 개발된 교과목을 실증할 대학을 신청받아 선정하였는데, 3개 대학이 신청하고 선정되어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을 보다 많은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당초 취지에 비하여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남.

이와 같이 해당 교과목을 개발한 대학에서 고도화하는 수요(14개)보다 다른 대학에서 실증하는 수요(3개)가 적게 나타난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에 한계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또한 2025년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개 교과목 중 2개 교과목의 제외 사유는 2024년 사업 운영 결과 비교과 과목은 학교별로 운영방식의 차이가 커서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었고, 3개 교과목은 해당 수업이 폐강되거나, 원어 강의 과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2024년 교과목 개발 대학에서 지원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임.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은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여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확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대학에서의 운영 중단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AI 코스웨어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과목당 약 2,500만원(2024년 평균)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발 교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는 교과목을 개발하여 실증을 거치기 전에 사업 지원 대상 교과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26년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은 2025년 24개 교과목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개 교과목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2025년과 유사하게 신규개발, 개발대학 고도화, 개발 교과목 타대학 실증 등이 포함될 예정임.

교육부는 2025년부터는 1개 교과목을 2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도록 하여, 1개 교과목을 1개 대학(교과목)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범용성 있고, 확산 가능성 높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의 자율적 교과목 운영과 교과목의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대학에서 유사 교과목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면밀히 심사·선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이 개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2704-503)[34]

○ 교육부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플랫폼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외국학생 지원 서비스 개발과 함께 외국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로 편성된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은 동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2704-503) 사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등·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국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34) 문의: 02-6788-5189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의 예산 3억 500만원이 일반연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 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	-	305	305	순증
○ 일반연구비	-	-	305	305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

❑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라 함)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혁신적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행정 등 전 분야에 적용되는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임.

동 사업은 2026년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이후, 2027~2030년까지 4개년 동안 154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ISP 수립을 위한 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중장기 계획 >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요예산	3.05억원	54억원	46억원	32억원	22억원
내용	•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모델 및 인프라 구축 사업 ISP	• AI 수강 로드맵, AI 맞춤형 통합 상담 구축 • 리전서비스	• AI 수강 로드맵, AI 맞춤형 통합 상담 구축 • 리전 서비스	• AI 강의 콘텐츠 자동 제작, 평가 자동화 기능 개발 • 리전서비스	• 사용자통합 인터페이스 구축, 타 대학 공유·확산 기반 구축 • 리전 서비스

자료: 교육부

❑ ISP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35]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함.

35) 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 2025. p.10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에 포함된 사업내용에 따르면, 동 사업은 ①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모델 및 인프라 구축, ②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리전 서비스 추진 등으로 구성되고, ③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소관으로 방송대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소요예산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154억원**
◦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모델 및 인프라 구축 - 학생 맞춤형 전공 추천 및 학업 로드맵 제공 체계 구축 - 인공지능 기반 학습지원 모델 설계 및 개발 후 공유·공동 이용 확산	104억원
◦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리전 서비스 추진 -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다국어 번역지원 자막 제공 기능 개발 - AI 자동편집 및 숏폼 생성기능 개발, 콘텐츠 대외개방 확산	50억원

자료: 교육부

❑ ISP 수립을 위한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교육부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플랫폼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모델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 맞춤형 전공을 추천하고, 학업 로드맵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학습

지원 모델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공유・공동 이용하여 확산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유에 대하여 교육부는 방송대에 연령・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방 등을 위하여 자율전공제, 공동학위제 등 탄력적 학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다양한 학습자와 제도 운영을 위해 진로・적성・학습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전공 추천, 개인화된 학습경로 설계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학업 로드맵 제공 체계가 구축될 경우, 학습자는 수강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과정을 추천받아 학업과정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맞춤형 전공 추천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20~2024) 자료에서 방송대 지원자는 3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2025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육 동기로 '취업・승진・창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42.7%(569명), 학과 선택 요인으로 '직장・사업과의 관련성'이 40.7%(54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방송대의 학습자는 도구적·실용적 동기로 특정 전공을 학습하기 위해 지원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자율전공제 등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학생 맞춤형 전공 추천 수요는 적을 것으로 보임.

< 방송대 지원자의 연령대별 추이 >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대 이하	24.2	28.5	27.1	24.9	23.6
30대	22.4	22.8	22.8	23.1	24.2
40대	26.2	24.4	24.0	24.0	23.0
5대 이상	27.2	24.3	26.4	28.0	2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이은경, 「신·편입지원자 추이 및 2024학년도 특성분석」, <IFDE 통계분석보고> 2024-제3호, 2024.1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p.10

< 대학교육동기 및 학과 선택 요인 분포>

(단위: 명, %)

대학교육동기	학생 수	비율	학과선택요인	학생 수	비율
취직·승진·창업에 도움	569	42.7	현재 또는 향후 계획하는 직장·사업과 관련	542	40.7
지적 호기심 충족	424	31.8	관련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298	22.4
못다한 학업의 꿈	143	10.7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	187	14.0
사회적 인정·자신감	69	5.2	자녀 학습이나 진로 지도에 도움	125	9.4
사회적 관계 확장	69	5.2	사회 또는 환경의 개선·개혁에 도움	89	6.7
상급학교 진학	58	4.4	기타	91	6.8
합계	1,332	100.0		1,332	100.0

주: 일부 항목의 경우 항목명을 간소화하거나 항목을 통합함

자료: 서희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의 입학 동기와 첫 학기 적응 실태 분석」, <IFDE 통계분석보고> 2025 Vol.02, 2025.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p.4, p.7

또한 동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학습지원 모델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다른 대학에 공유・공동 이용하여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자율적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플랫폼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외국학생 지원 서비스 개발과 함께 외국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해외 리전 서비스 추진을 통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다국어 번역지원 자막 제공 기능, AI 자동편집・숏폼 생성 기능 등을 개발하는 한편,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 확산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유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내・외 학습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성된 콘텐츠를 AI 번역 기능을 통해 다국어 자막으로 변환하여 국내・외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며, 해외 학생들에게 방송대의 교육 콘텐츠를 안정

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방송대의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볼 때, 외국학생 수는 400여명으로 재적학생 수의 0.4% 수준을 차지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출신 국가는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외국학생 수 기준 상위 5개국의 재적학생 중 18%는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다국어 번역지원 자막이 제공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경우, 외국학생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외국학생 유치의 다각화, 외국학생의 학업 지속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현황에서 해당 서비스의 수요자인 외국학생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방송대 외국학생 비율 >

(단위: 명, %)

2023			2024			2025		
재적학생 수(A)	외국학생 수(B)	외국학생 비율(B/A)	재적학생 수(A)	외국학생 수(B)	외국학생 비율(B/A)	재적학생 수(A)	외국학생 수(B)	외국학생 비율(B/A)
112,562	419	0.4	108,470	427	0.4	121,661	432	0.4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본교] - 공시정보 - 학생 - 4-마. 재적 학생 현황 중 정원 내,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중 외국학생 현황

< 최근 3년간 방송대 외국학생 출신 국가 상위 5개국 >

(단위: 명, %)

구분	2023			2024			2025		
	국가명	인원 수	비율	국가명	인원 수	비율	국가명	인원 수	비율
1위	중국	201	48.0	중국	201	47.1	중국	194	44.9
2위	미국	61	14.6	미국	64	15.0	미국	66	15.3
3위	캐나다	46	11.0	캐나다	44	10.3	캐나다	49	11.3
4위	일본	34	8.1	일본	35	8.2	일본	32	7.4
5위	베트남	14	3.3	베트남	15	3.5	베트남	15	3.5
이하	18개국	63	15.0	22개국	68	15.9	27개국	76	17.6
합계		419	100.0		427	100.0		432	100.0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본교] - 공시정보 - 학생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중 외국학생 현황

< 최근 3년간 방송대 외국학생 출신 국가 상위 5개국 학생의 중도탈락률 >

(단위: 명, %)

구분	국가명	2022			2023			2024		
		재적 학생 수 (A)	중도탈락 학생 수 (B)	중도 탈락률 (B/A)	재적 학생 수 (A)	중도탈락 학생 수 (B)	중도 탈락률 (B/A)	재적 학생 수 (A)	중도탈락 학생 수 (B)	중도 탈락률 (B/A)
1위	중국	247	38	15.4	201	36	17.9	201	32	15.9
2위	미국	69	20	29.0	61	12	19.7	64	15	23.4
3위	캐나다	43	8	18.6	46	11	23.9	44	10	22.7
4위	일본	37	5	13.5	34	3	8.8	35	4	11.4
5위	베트남	18	3	16.7	14	5	35.7	15	5	33.3
합계		414	74	17.9	356	67	18.8	359	66	18.4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본교] - 공시정보 - 학생 - 4-바. 외국인 학생 현황 중 외국학생 중도탈락 현황

- 셋째, 일반회계로 편성된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은 동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디지털교육기획관 소관으로 방송대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2026년 예산안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이러한 사업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정보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총괄 조직으로서 ISP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 사업의 준비를 위해 방송대와 논의하고 있으며, ISP 결과에 따라 디지털교육기획관 소관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일반회계 1301-301) 사업과의 연계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어 예산안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로, 같은 법 제5조(세출)에 해당되는 경우 동 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그 외의 사업은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 등으로 추진되는데,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같은 조 제1호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36)]

---

3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하 생략)

참고로 2024년에 시작된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4134-500)’ 사업은 대학 및 기관 등에서 개별 서비스 중인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학습자와 교수자 간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음.

또한 교육부는 동 사업이 방송대의 교수·학습, 교무·학사 행정 등 전 영역을 AI 기반 체제로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AI 코스웨어 적용 교과목을 개발하는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사업의 경우, 2024년에 시작되어 해당 사업 자체의 성과 도출 및 확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방송대의 플랫폼을 연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에듀테크 성장기반 조성 사업 중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통해 동 사업으로 개발된 플랫폼을 홍보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 투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동일한 회계로 편성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AI 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은 동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3)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4705-300)[37]

○ 교육부는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액을 산출하는 한편, 동 대회에서 초·중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4705-300) 사업은 교육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교육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정책 연구·분석을 실시하며, 사용자가 교육데이터를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동 세부사업은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데이터기반 교육행정 활성화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37) 문의: 02-6788-5189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500만원(3.4%)이 증액된 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	739	739	764	25	3.4
○ 데이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572	572	572	0	0.0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67	67	92	25	37.3
○ 데이터기반 교육행정 활성화	100	100	100	0	0.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학생 부문 지원 축소 지양 필요

❑ 교육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4705-300) 사업에 편성된 교육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및 학술대회 운영 세부내역사업은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여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 4,200만원은 2025년 예산 1,700만원과 비교할 때, 시상금 단가와 지원 비율 등이 증가하여 2,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교육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및 학술대회 운영 사업의 추진 내역을 살펴볼 때, 2026년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증액 사유는, 대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수상 분야를 5개에서 3개로 통합·조정하면서 시상금 단가를 인상하였고, 대회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심사)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 교육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및 학술대회 운영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구분	2025	2026(안)
시상금	(6백만원×5개팀)×30% = 9백만원	(10백만원×3개팀)×50% = 15백만원
운영(심사) 및 컨설팅	20백만원×30% = 6백만원	34백만원×50% = 17백만원
홍보, 협의회 등	2백만원	10백만원
합계	17백만원	42백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동 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는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의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수상 분야가 통합·조정되고 시상금 단가가 1,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2025년 대비 2026년이 아닌, 2024년 대비 2025년 변경사항이므로, 2026년 예산이 아닌 2025년 예산 편성 시 반영이 필요했던 사항임.

<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분야 및 자격요건 >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학생</th><th colspan="3">일반</th></tr>
<tr><td rowspan="2">2023</td><td>데이터 리터러시</td><td></td><td>데이터 분석</td><td>창업 아이디어</td><td></td></tr>
<tr><td>- 초등 4~6학년 학생, 중·고등학생
- 10~18세 청소년</td><td></td><td>- 대학(원)생 및 일반인</td><td>- 교(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등 교육 분야 관련 종사자</td><td></td></tr>
<tr><td rowspan="2">2024</td><td>데이터 분석</td><td>아이디어 기획</td><td>데이터 분석</td><td>서비스/상품</td><td>아이디어 기획</td></tr>
<tr><td colspan="2">- 초등 4~6학년 학생, 중·고등학생
- 10~18세 청소년</td><td colspan="3">- 19세 이상 일반인
- 대학(원)생, 학교교직원, 교사, 공무원, 예비창업자 등</td></tr>
<tr><td rowspan="2">2025</td><td>데이터 분석</td><td rowspan="2"></td><td>데이터 분석</td><td>서비스/상품</td><td rowspan="2"></td></tr>
<tr><td>- 중(2·3학년)·고등학생
- 14~18세 청소년</td><td>- 19세 이상 일반인</td><td></td></tr>
</table>

주: 2023년에 부문 구분은 없었으나, 다른 연도와의 통일성을 위해 유사한 범주로 표기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분야별 시상내역 >

구분			학생		일반			합계
2024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데이터 분석	서비스/상품	아이디어 기획	
	대상	교육부장관상	1팀(300만원)	1팀(300만원)	1팀(300만원)	1팀(300만원)	1팀(300만원)	5팀(1,500만원)
	최우수상	시도교육감상, 주관기관장상	14팀(각100만원)	12팀(각100만원)	1팀(100만원)	1팀(100만원)	1팀(100만원)	29팀(2,900만원)
	우수상	시도교육감상, 후원기관장상	14팀(각30만원)	11팀(각30만원)	2팀(각30만원)	2팀(각30만원)	2팀(각30만원)	31팀(930만원)
	합계							65팀(5,330만원)
2025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서비스/상품		
	대상	교육부장관상	1팀 (500만원, 노트북)		1팀 (1,000만원, 무선이어폰)	1팀 (1,000만원, 무선이어폰)		3팀 (2,500만원, 상품)
	최우수상	시도교육감상, 주관기관장상	16팀 (각100만원, 태블릿)		2팀 (각300만원, 무선이어폰)	2팀 (각300만원, 무선이어폰)		20팀 (2,800만원, 상품)
	우수상	시도교육감상, 후원기관장상	32팀 (각30만원, 무선이어폰)		3팀 (각100만원, 무선이어폰)	3팀 (각100만원, 무선이어폰)		38팀 (1,560만원, 상품)
	합계							61팀 (6,860만원, 상품)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예산안 산출내역과 실제 대회 운영 내역이 불일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개최하고 있어 당해연도 대회 종료 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차년도 대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산안은 대회 운영 일정과 부처 예산안 편성·제출 일정 상[38]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38) *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일정
대회공고 및 접수(2~4월) → 심사(6월) → 시상식(7월) 및 수상자 간담회(8월) 개최 → 대회 운영 평가 및 차년도 대회 운영계획 수립(교육청 협의, 11~12월)
* 부처 예산안 편성 및 제출: 5월말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려워 당해연도 대회 예산 내역을 기준으로 차년도 예산안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대회 운영 및 예산안 편성 일정 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차년도 예산안은 차년도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산출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해 연도 내역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에서 초·중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2025년 대회 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에 학생 부문의 참가자격(2024년: 초(4~6학년)·중·고등학생 또는 10~18세 청소년 → 2025년: 중(2·3학년)·고등학생 또는 14~18세 청소년), 분야(2024년: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 2025년: 데이터분석)가 모두 축소되었고, 2024년에 시상금 단가가 학생 부문, 일반 부문 모두 동일하였던 것과 달리 2025년에는 학생 부문의 시상금 단가가 500만원으로 일반 부문의 시상금 단가 1,000만원의 1/2 수준으로

감소되었음.

이와 같이 대회에서 초·중등학생 부분이 축소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경험, 지식 수준, 과제 수행 능력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대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격요건에서 초(4~6학년)·중(1학년)학교 학생 또는 10~13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였고,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2024년 대회의 경우 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분야의 접수작이 없었으며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 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판단되어, 2025년 대회에서 데이터 분석 분야로 통합·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시상금 단가는 학생 부문 수상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시상금 보다 디지털 기기 등을 선호하는 수요가 있어, 학생 부문의 시상금 인상폭을 일반 부문보다 축소하는 대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함.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의 참가자격과 분야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39]의 정

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

책과의 연계성, 대회 운영 결과, 최신 기술 동향, 시·도교육청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를 2024년부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고,[40] 2025년의 경우 시상금 총액에서 대상(교육부 장관상) 시상금 중 1,000만원을 제외한 5,86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000만원[41]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야 개편 등을 통해 2025년 자격요건에서 제외된 초·중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대회에서 초·중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교육부는 2026년에 학생 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분야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2026년 대회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이 교육데이터 활용 능력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회를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0)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2024년 및 2025년에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대회 통합 운영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공감하여 2026년부터 공동개최에 참여할 예정임.

41)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각각 1,500만원씩 집행

4. 인재정책기획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2232-323)[42]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과정 개발비 등의 소요 추정액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개발된 교육과정을 대학 간 공유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활용할 계획인 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2232-323) 사업은 대학생들이 윤리적 AI 활용, AI 정보의 비판적 평가 역량, AI를 이용한 실질적 문제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지원하고, 초·중등 AI 교육의 핵심인 교원이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내 AI 교육과정 개발·지원을 위한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은 118억 4,000

42) 문의: 02-6788-5188

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	-	11,840	11,840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예산안 세부 산출근거 점검 및 단계적 사업 확대 고려

❑ 내역사업인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은 대학이 비전공자 맞춤형 AI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AI 윤리의식·AI 활용 능력 등을 제고하고, 정규 교과 과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9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6년도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9,360	○ 교과과정 개발 : 9,000 - 300×30개교 ※ 300 = 240(과정 개발비) + 60(교수역량강화비) ○ 사업관리비: 360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사회 전반에서 AI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전공자도 기본적인 AI 역량을 갖추고, 윤리적·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신설되었음.

생활 및 전공에서 AI를 적용하는 방법(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의 AI의 일반적인 활용능력 제고와 더불어, AI의 작동원리와 한계, 위험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AI 리터러시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든 대학생의 AI 기초함량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이 사업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대학 간 공유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활용을 유도할 계획으로, 실제 만들어진 기본 교육과정이 사장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내용에 있어서의 충실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거로 참고하고 있는 K-MOOC 사업의 사례를 보면, 예컨대 2024년 신규 강좌에서 수강건수 하위 강좌 1~10위 강좌의 수강건수가 강좌당 22회 이하이며, 최하위 강좌는 4건으로 나타나는 등 신규로 개발된 강좌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의 경우에도 엄밀한 계획수립과 실제 이를 활용할 대학의 의견수렴이 철저히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시간이 필요하였으며, 현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학사운영 모델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입장이며, 2026년 교당 3억원(학교당 4편의 교육과정 개발), 30개교를 지원하고 이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단계이므로, 26년에 30개교를 일시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보면, 구체적으로 교과과정 개발을 위하여 각 학교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탑재용 강의 제작 비용으로 편당 6,000만원, 교수역량 강화로 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교육부는 강의 제작 비용으로 편당 6,000만원을 산출한 근거에 대해 교육과정 개발을 직접 지원한 사례가 많지 않아 가장 유사한 K-MOOC 사업을 참고하였는데, 2025년 K-MOOC 기본강좌 개발비

(15주 기준) 예산이 강좌당 6,000만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교수역량 강화 지원 비용(6,000만원)은 대학에서 교수 연수 프로그램 운영, AI 기반 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 개발 지원, 비전공-AI 전공 교수 페어링 활동, AI 융합 교육 성과 공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원 예정이며, 활동 내용별 예산 배분은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이라는 설명임.

❑ 그런데 2026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의 기본강좌 개발비는 무크 선도대학 강좌의 경우 편당 5,500만원, 개별 강좌 개발의 경우 편당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기본강좌의 편당 제작 비용 6,000만원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교수역량 강화비(6,000만원)는 비교대상이나 필요소요에 대한 별도의 산정 근거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강좌 개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 산정의 합리성이 떨어지며, 현재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어 실제 집행과정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음.[43]

43)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수역량 강화 예산은 학교별 AI 교육역량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AI교육 도입 초기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부터 계획했던 부분이므로 남은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니며 예산 집행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임.

❑ 한편, 동 사업의 사업관리비는 3억 6,000만원으로, 최초 대학선정(6,000만원), 사업안내 및 교육(5,000만원), 질관리(1억원), 성과확산(1억 5000만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음.

< 사업관리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사업관리비	360	○ 대학선정 : 60 ○ 사업안내 및 교육 : 50 ○ 사업의 질관리 : 100 ○ 성과확산 : 150

자료 : 교육부

그런데 사업관리비의 구체적 내역 요구에 교육부는 내역의 금액을 조정(성과확산에서 사업 질관리로 3,000만원 조정)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음. 이는 애초에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 사례의 하나로 보임.

< 수정된 사업관리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금액
지원 대학 선정평가		- 공모 및 심사 기준 마련	25
		- 심사위원 수당, 사전교육·회의	15
		- 평가 자료 제작·인쇄 - 평가 시스템 사용	20
소계			60
사업 안내 및 교육	사업 설명 및 교육	- 안내 자료 개발 - 교육 교안 개발, 강사료	30
		- 홍보자료 제작, 홍보비	10
	협의회 운영	- 회의비, 인쇄비 등 운영비	10
소계			50
사업 질관리		- 학점 인정 · 이수 관리 체계 지원	40
		- 대학별 학칙·학사제도 정비 지원	30
		- 학점 교류, 공동 교육과정 지원	30
		- 교육과정 개발 관련 컨설팅	30
소계			**130**
성과확산		- 성과 분석 및 평가	30
		- 공유·확산 전략 수립	30
		- 성과 아카이브 구축·사용	15
		- 성과보고서, 사례집, 백서 등 발간	10
		- 우수사례 동영상 등 웹 콘텐츠 제작	20
		- 인쇄비 등 기타 운영비	15
소계			**120**
합계			360

자료 :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비용을 재검검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사업추진 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문사회기초연구(R&D)(2432-301)[44]

○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은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학교당 연 40억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지원 분야, 선정 방법, 성과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임에도 사업 방향성 확정, 협약 준비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개시 시점을 3월로 설정하고 12개월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인문사회기초연구(R&D)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형태별(개인-공동-집단),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 학술·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역량 강화, 지식 창출, 학문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학문후속세대지원, 일반연구지원, 인문사회연구소,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학술연구포털구축,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이 있음.

44) 문의: 02-6788-5185

< 인문사회기초연구(R&D)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내역사업	사업내용
학문후속세대지원	인문사회분야의 잠재력 있는 박사급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학술·연구 활동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
일반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개인 및 공동연구자 기반의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창의적 연구기반 확대 및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
인문사회연구소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일반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집단연구를 통한 연구자 육성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대학	대학내·대학간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과 공유를 위한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 문제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인문사회융합 연구	해외연구소 및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 및 융합연구 모델 개발, 유명 석학과의 교류 활동으로 국제연구 역량 강화
학술연구포털구축	차세대 인문사회 학술연구사업 통합관리시스템(가칭 학술연구포털) 구축을 통한 전주기 사업관리 고도화 및 연구성과 활동도 제고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거점 국립대의 지역 연구거점 기반 마련 및 중점 테마연구소 육성을 통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자료 : 교육부)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96억 8,600만원(11.6%)이 증액된 2,86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문사회기초연구(R&D)사업의 내내역 사업에 '인문사회학술연구포털구축' 사업 1억 6,000만원,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120억원이 각각 순증되었음.

< 2026년도 인문사회기초연구(R&D)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인문사회기초연구(R&D)	248,865	256,981	286,667	29,686	11.6
○ 학문후속세대	94,970	105,570	107,360	1,790	1.7
○ 일반연구지원	52,523	52,290	55,130	2,840	5.4
○ 인문사회연구소	61,347	47,320	50,763	3,443	7.3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	24,000	30,000	33,000	3,000	10.0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16,025	21,801	28,254	6,453	29.6
○ 인문사회학술연구포털구축	-	-	160	160	순증
○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	-	12,000	12,000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R&D)의 내역 사업인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대학 내 연구관리체계 강화 및 중점연구소 등을 통한 신진연구자 중심 거대융·복합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임.

특히 '거점국립대'의 지역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 신진연구자 육성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 연구 역량 전반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과제(안)는 다음과 같음.

<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주요 추진과제(안) >

◦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지원)** 내실 있는 연구소 운영을 위해 기존 중복·부실 연구소를 조정·통합하여 대학의 자체 연구역량 강화 추진
- 연구소의 기본 자원, 발전가능성 등 고려 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 지급

◦ **(국내·외 융·복합 연구 수행)** 대학 내 중점테마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관(출연연, 기업, 해외 대학)과의 협력 연구를 통한 우수성과 창출
- 신진연구자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대학 내 미래 연구역량 확보
- 석·박사 참여연구원 대상 지원금 제공을 통한 미래 우수 연구인재 양성

< 주요 추진사항(안) >

구분	순수연구형	융합연구형
주요 추진 사항	• 연구소 관리체계 구성 시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만으로 구성 • 중점테마연구소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60% 이상은 인문사회과학 전공 전임 교원으로 구성	• 연구소 관리체계 구성 시 인문사회-타학문 분야 연구소 혼합 구성 • 중점테마연구소 연구진 구성 기준은 없으며, 출연연·민간 등 문제 중심 과제 추진을 위한 자율적 연구진 구성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거점국립대학 9개교[45]를 대상으로 1개교 당 연 40억원을 5개년 동안 지원(40억원×5년=200억원)할 계획으로,

2026년도(1차년도)에는 3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각 40억원씩 총 120억원이 편성되었고, 해당 지원예산은 사업개시 시점을 3월로 설정하여 12개월분(2026.3.~2027.2., 12개월)[46]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 (지원대상) 거점국립대 9개교
◦ (지원기간) 총 5년(3+2)
◦ **(2026년도 지원규모) 3개교×40억원(2026.3.~2027.2., 12개월), 총 120억원**

❑ 정부의 2026년도 전체 R&D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7조원(19.3%)이 증액되어 35.3조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교육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R&D)[47]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89억 2,600만원

45)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46) 대학회계는 학년도 기준으로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 종료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47) 교육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R&D)은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연구윤리활동지원이 있음.

(9.7%)이 증액되어 3,28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국가 전체 R&D 예산 규모의 약 1% 비중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교육부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R&D)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25년	2026년안
국가 R&D 예산(A)		295,969	353,000
교육부	인문사회 학술지원(R&D) 예산(B)	2,996	3,286
	비율(B/A)	1.01%	0.93%

(자료 : 교육부)

참고로, 동 사업 지원대상 거점국립대학 9개교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및 전임연구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거점국립대학 9개교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현황 >

구 분	강원대	경북대	경상 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개)	18	32	15	17	33	39	17	30	16
전임유급 연구원 (명)	44	27	39	93	31	30	19	22	31

※ 2025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자료 : 교육부)

< 교육부 2026년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R&D)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	'25 예산(A)	'26 예산안(B)	증감	
				(B-A)	(%)
1	인문사회기초연구(R&D)	256,981	286,667	29,686	11.6%
2	인문학진흥(R&D)	28,121	26,604	△1,517	△5.4%
3	사회과학연구지원(R&D)	13,670	14,427	757	5.5%
4	연구윤리활동지원(R&D)	861	861	0	0.0%
	R&D 합계	299,633	328,559	28,926	9.7%

(자료 : 교육부)

❑ 그러나, 동 사업은 향후 5개년 동안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학교 당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학교 당 연 40억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구소의 기본 자원,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급'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방법, 차등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2026년도에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인문사회분야 중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지정 또는 공모), 사업 성과의 점검·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교육부는 '인문사회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원금 차등 지급 기준, 지원 분야, 선정 방법, 성과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신규과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48].

그런데 동 사업은 신규과제임에도 협약 준비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개시 시점을 3월로 설정하고 12개월분 예산 전액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동 사업이 교육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선정방식이 거점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협약 준비기간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져 3월 사업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임.

그러나 2026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사업개시 전에 ① 사업공고,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③ 선정평가, ④ 최종선정 및 확정, ⑤ 협약체결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사업 개시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48)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5)

-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 참고로, 이공분야 대학의 연구소 개편·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신진 연구인력 중심의 혁신적 기초과학 거대 융복합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기초연구소(G-램프) 사업'[49]의 경우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연구개발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과제 사업비 예산의 경우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를 고려하여 사업개시 시점을 하반기로 설정하고 6개월분(2026.9.1.-2027.2.)만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 대학기초연구소(G-램프) 사업 >

◦ (지원내용) 대학의 연구소 개편·지원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혁신적 기초과학 거대 융복합연구(국제 공동연구 포함) 지원
◦ (지원분야) 기초연구 12대 분야 ※ 대학별 1개 분야 선택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4대 과학기술원 제외)
◦ (지원기간) 총 5년(3+2)
◦ (규모) 총 24개 대학(기존 20 + 신규 4) / 총 1,100억원(연 평균 50억원)
※ 기선정대학 평균 50억원(12개월분), 2026년 신규지원대학 25억원(6개월분)

< 주요 추진사항 >

구분		Ⅰ유형	Ⅱ유형
주요 추진 사항		• 연구소 관리체계 구성 시 자연과학 분야 연구소 필수 포함 • 중점테마연구소 세부 과제 연구 책임자의 60% 이상은 자연과학 전공 전임교원으로 구성	• 연구소 관리체계 구성시 공학 분야 연구소 필수 포함 • 중점테마연구소 세부 과제 연구 책임자의 30% 이상은 자연과학 전공 전임교원으로 구성
과제	수도권	2	1
	비수도권	2	1

(자료 : 교육부)

49)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대학기초연구소(G-램프) 사업'이 있음.
※ G-램프 : Global -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3)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50]

○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은 2026년도 신규과제가 1,633개로 전년 신규과제 3,326개 대비 1,693개 감축된 규모임. 교육부는 최근 신규과제의 편성 규모, 연구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국가연구소 사업’이 부처 간 공동 수행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소통체계 마련·운영, 연구소 기반 마련 관련 현황과 실태 점검·지원, 성과 관리 체계 마련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교육부 소관 ‘기본연구B’ 사업과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연구’ 사업은 지원대상, 연구기간 및 연구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목적 사업인바, 기본연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의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및 관리의 소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사업은 이공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역사업으로는 학문후속세대지원, 대학연구기반구축, 학술연구혁신지원 사업이 있음.

50) 문의처: 02-6788-5185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내역사업	사업내용
학문후속세대지원	석사학위과정생부터 우수한 비전임교원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연수 및 연구 참여 기회를 지원하여 연구 단절 방지 및 연구역량 제고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대학부설연구소 및 핵심연구지원센터 중심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기초연구 거점 구축,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마련 및 글로벌 수준의 거대 공동연구 수행 거점 마련 지원
학술연구혁신지원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대학, 보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추진

(자료 : 교육부)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77억 5,000만원(4.7%)이 증액된 6,207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11,597	593,048	620,798	27,750	4.7
○ 학문후속세대지원	110,102	156,032	186,534	30,502	19.5
○ 대학연구기반구축	233,122	292,946	307,600	14,654	5.0
○ 학술연구혁신지원	168,373	144,070	126,664	△17,406	△12.1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의 안정적 지원 필요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은 이공분야 석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에 이르기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따른 안정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단절 방지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박사후국내외연수, Post-Doc.성장형 연구지원 사업이 있음.

<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예산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안)		예산 증감 (B-A)
		과제수(신규)	예산(A)	과제수(신규)	예산(B)	
학문후속세대지원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2,850(1,500)	17,100	2,290(790)	18,462	1,362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2,281(1,200)	38,140	2,386(600)	44,825	6,685
	박사후국내외연수	946(400)	45,300	872(200)	42,420	△2,880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406(226)	55,492	475(43)	80,827	25,335
	합계	**6,483(3,326)**	**156,032**	**6,023(1,633)**	**186,534**	**30,502**

(자료 : 교육부)

❑ 석사·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전업(full-time)으로 재학 중인 자에 대해 학위논문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수 및 성장형 연구 사업은 박사후연구원이 국내외 대학·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공동 또는 개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음.

< 2026년도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지원 기준 >

구분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후연수 연수		Post-Doc. 성장형 연구	
			국내	국외	공동연구유형	단독연구유형
연구 기간	1년	1～2년	1～3년	1년	3년	
지원 대상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박사후연구원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또는 39세 이하	
지원 단가	연 12백만원	연 25백만원	연 60백만원		연 260백만원	연 60백만원
26년 과제 수	2,290 (신규 790)	2,386 (신규 600)	872 (신규 200)		475 (신규 43)	
26년 예산	18,462백만원	44,825백만원	42,420백만원		80,827백만원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05억 200만원 증액된 1,86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총 6,023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 예산 규모로 이 중 2026년도 신규과제는 1,633개 과제로 전년 신규과제 3,326개 대비 1,693개 감축된 규모임.

신규과제 감축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은 전년 1,500에서 790개로, ②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은 전년 1,200개에서 600개로, ③박사후국내외연수는 전년 400개에서 200개로, ④Post-Doc.성장형연구지원은 전년 226개에서 43개로 크게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신규과제 산출 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①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신규)1,500개×12백만원×6/12 = 9,000백만원	①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신규)790개×12백만원×12/12= 9,462백만원
②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신규)1,200개×25백만원×6/12 = 15,000백만원	②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신규)600개×25백만원×6/12= 7,500백만원
③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국내:300개×60백만원×6/12 = 9,000백만원 / 국외:100개x60백만원×12/12 = 6,000백만원	③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국내:150개×60백만원×6/12= 4,500백만원 / 국외:50개×60백만원×12/12= 3,000백만원
④ Post-Doc.성장형연구지원 (신규-공동)20개×평균300백만원×9/12 = 4,500백만원 (신규-개인)54개×70백만원×9/12 = 2,892백만원 (신규-비전임)152개×100백만원×6/12 = 7,600백만원	④ Post-Doc.성장형연구지원 (신규-공동)13개×평균260백만원×9/12= 2,650백만원 (신규-개인)30개×평균60백만원×9/12= 1,350백만원

(자료 : 교육부)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내에 비전임 교원 대상 연구지원 과제 신설(‘기본연구B’ 사업[51])에 따라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하였는바, 이에 따라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의 ‘신규과제’가 2025년도 수준만큼 편성되지 못하였다는 설명임.

❑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은 석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에 이르는 학문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연구기회 제공의 수혜 대상이 전년 대비 크게 감축하고 있어 이공 분야 연구자들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교육부는 최근 신규과제의 편성 규모, 연구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인문사회분야’ 석박사과정생 등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인문사회기초연구(R&D) 사업 내의 ‘학문후속세

51) 2026년도 예산안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2446-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술연구혁신지원’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 ‘기본연구B’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이공분야 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신진연구자로서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37억원 순증됨.

대지원’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에 내내역 사업별로 전년 대비 일정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신규과제를 편성하였음[52].

52) <인문사회기초연구(R&D)의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신규과제 산출 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①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1,200백만원 (신규) **100과제** 내외×평균 12백만원	①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2,400백만원 (신규) **200과제** 내외×평균 12백만원
②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9,000백만원 (신규) **300과제** 내외×20백만원×6/12개월	②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12,040백만원 (신규) **400과제** 내외×20백만원×6/12개월
③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95,370백만원 - A유형(신규) **200과제** 내외×평균 40백만원×9/12개월 - B유형(신규) **1,295과제** 내외×평균 20백만원	③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91,920백만원 - A유형(신규) **200과제** 내외×평균 40백만원×9/12개월 - B유형(신규) **1,295과제** 내외×평균 20백만원

(자료 : 교육부)

(2) 국가연구소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은 내내역 사업으로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국가연구소 사업이 있음.

< 대학연구기반구축 사업 예산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안)		예산 증감 (B-A)
		과제수(신규)	예산(A)	과제수(신규)	예산(B)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66(20)	202,430	173(14)	242,440	40,010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78(19)	80,516	75(10)	35,160	△45,356
	국가연구소	4(4)	10,000	8(4)	30,000	20,000
	합계	248(43)	292,946	256(28)	307,600	14,654

(자료 : 교육부)

❑ ‘국가연구소 사업’은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를 대학연구소에 지원하여 대학 강점 분야의 혁신적 연구 수행 및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여 세계 최초·최고의 선도적 연구를 이끄는 국가연구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 이공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연구소 당 연 100억원(교육부 50%, 과기정통부 50%)을 10년 간 지원하고, 혁신적·자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지원 방식은 연구, 인력, 시설·장비 등을 패키지형 블록펀딩(Block Funding)방식[53]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장기적·안정적 지원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바,

❑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생태계를 혁신하고 대학 연구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며 국내외 우수인재들의 연구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가연구소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대학의 이공 분야 대학부설연구소
* 4대 과기원 제외(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도 중복 신청·지원 불가)
◦ **(분야)** 대학의 강점·특화 분야(Bottom-Up 방식) * 융합 분야도 가능
◦ **(기간/규모)** 10년(3+4+3) / 연 100억원(교육부 50억, 과기정통부 50억)
* '25년 4개 내외, 사업 첫 해에는 6개월 分 지원 예정
◦ **(지원 방식)** Block Funding 방식의 패키지 지원(연구·시설·인력 등)

< 연차별 단계 구분 >

1단계			2단계				3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준비기	성장기		성숙기				정착기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 예산에는 4개 연구소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총 100억원(6개월분) 편성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4개 연구소 대상 계속사업비 200억원(12개월분)과 4개 연구소 대상 신규사업비 100억원(6개월분)으로 총 300억원을 편성하였음.

53) 연구, 인력, 시설·장비 등 개별 사업 형태로 각각 지원하지 않고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연구과제 구성, 인력 운영, 시설·장비 구축 등 연구소가 적재적소에 대규모 예산을 자율적으로 활용

< 2026년도 국가연구소 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국가연구소 : 10,000백만원 (신규) 4개 내외×평균5,000백만원 ×6/12=10,000백만원	◦ 국가연구소 : 30,000백만원 (계속) 4개 내외×평균5,000백만원 ×12/12=20,000백만원 (신규) 4개 내외×평균5,000백만원 ×6/12=10,000백만원

※국가연구소 사업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각각 50%분담[54]함에 따라 연구소당 연 100억원 지원 예산 중 50억원을 교육부 예산에 편성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의 1차연도인 2025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월 사업추진계획 공고, 2월부터 4월까지 사업설명회개최 및 사업접수, 5월부터 9월까지 선정평가 및 최종 선정, 9월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10월 현장 컨설팅 등 사업지원을 목표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 중 '2025년도 국가연구소 사업 지원대상'으로 최종 4개 대학연구소를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한 것으로 나타남.

54) <과기정통부 소관 2026년도 국가연구소 사업 예산안 선출 내역>
- (예산안) **30,000백만원**
- (목적) 미래 선도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소 육성

2025 본예산 산출내역	2026 예산안 산출내역
○ **연구활동비(360-5) : 10,000백만원** 가. 국가연구소(NRL2.0) : 10,000백만원 ・ 4과제 x 2,500백만원=10,000백만원	○ **연구활동비(360-5) : 30,000백만원** 가. 국가연구소(NRL2.0) : 30,000백만원 ・ 8과제 x 3,750백만원=30,000백만원

(자료 : 과기정통부)

< 2025년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 경과 >

<table>
<tr><th>사업
공고</th><th>사업
설명회</th><th>사업
접수</th><th colspan="3">선정평가</th><th>최종선정</th><th>협약체결
및
사업개시</th></tr>
<tr><td rowspan="2">2.10.</td><td rowspan="2">2.24.,
2.27.</td><td rowspan="2">2~4월</td><td>전문가
서면검토</td><td>예비평가
(토론)</td><td>본평가
(발표)</td><td rowspan="2">9월</td><td rowspan="2">9.1</td></tr>
<tr><td colspan="2">5~7월</td><td>8~9월</td></tr>
</table>

(자료:교육부)

< 2025년도 국가연구소 사업 선정 현황 >

대학	연구분야	연구소명
고려대학교	분자생명분야	융합분해생물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분야	멀티스케일물질시스템연구소
연세대학교	분자생명분야	바이오센터니얼융합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바이오의료융합 분야	글로벌헬스케어의공학연구소

(자료:교육부)

❑ 교육부는 국가연구소 사업 선정평가 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과 혁신적 연구성과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연구 주제· 역량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원 전략과 의지,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였다는 설명으로,

선정된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국가연구소의 명확한 사업 철학 및 개념을 공유하고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및 대학의 적극적 지원 유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할 계획에 있음.

❑ 교육부는 국가연구소 사업이 부처 간 공동 수행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우선, 동 사업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등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바 원활한 사업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처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마련·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55].

다음으로, 동 사업은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바, 국가연구소에 선정된 각 대학 연구소가 사업 준비단계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소 운영체계, 성과목표 설정,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소 기반 마련 관련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사업은 10년에 걸쳐 국가연구소 당 연간 100억원, 총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차별 성과 평가를 하는 등 철저한 성과 관리 체

55)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부·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연구소를 평가·선정하고 부처별 역할에 따라 지원 내용을 특화한다는 설명으로, 교육부는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및 학내 거버넌스 조정 지원 등을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적 연구 및 스케일업 R&D, 글로벌 협력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임.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 1>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의 기대효과 및 차별성

<국가연구소 사업의 기본 방향>

		AS-IS	TO-BE
벽 허물기	기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아닌 **대학 內 연구에 치중**	대학·출연연·민간·병원·지자체 등 **다양한 혁신 주체 협력**
	국가	주로 **국내**의 연구자(학생) 간의 공동 연구에 한정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위한 **기관 단위**의 **글로벌 R&D 촉진**
	부처	부처별 **파편화**된 사업 지원으로 부처 **역량 분산**	교육부·과기부가 **One team**으로 사업 운영
연구 지원 혁신	지원 방식	선정 단계부터 세부연구주제 등 정하도록 해 연구기관 **자율성 제한**	연구 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Block funding** 방식의 지원
	지원 내용	인력, 장비 등 지원이 **개별 사업 형태**로 제각각 지원	우수인력, 첨단장비 등 **세계적수준의 연구소 육성** 위한 **R&D 패키지 지원**
	지원 규모	연구소(센터) 별 중소규모 지원으로 대규모의 **혁신적 연구 추진에 한계**	연 **100억원**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국가연구소 사업과 他 사업 간 비교>

사업명	혁신연구센터(IRC)	국가연구소(NRL 2.0)	대학기초연구소(G-LAMP)
지원목적	전략 기술 연구·개발 및 연구집단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연구소 육성을 통한 대학연구시스템 혁신	신진 인력 중심 융·복합 연구 및 대학 내 부설연구소 정비
수행주체	과기정통부	교육부·과기정통부	교육부
지원대상	13인 이내 연구그룹	대학 내 부설연구소	대학
지원기간 /규모	10년(3+4+3) / 연 50억원	10년(3+4+3) / 연 100억원	5년(3+2) / 연 50억원
지원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대학 강점 분야(자율)	10대 기초과학 분야 중심
지원내용	연구 과제 수행	패키지형 블록펀딩 (연구·시설·인력 등)	중점테마연구 지원 및 학내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자료: 교육부)

<참고 2>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내용

평가 항목	세부 평가 내용	배점	
		예비평가	본평가
연구 개발	○ 연구의 원천성 및 혁신성 ○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탁월한 성과 도출 가능성 ○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의 탁월성 ○ 내.외부 공동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50	30
연구소 운영	○ 연구소 운영 철학 및 방향성 ○ 연구소장의 리더십 확보 방안 ○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및 지원 인력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연구 주제 관련 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등 연구 협력 계획의 구체성 ○ 연구소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 ○ 연구소의 단계별 자립화 및 지속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 전용 연구 공간 확보 여부 - 장비 등 인프라 구축 계획 등	30	40
대학의 지원의지	○ 재정 지원 및 인력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학내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의 적절성 ○ 인프라 제공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 연구소 자립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전략 - 연구소 자립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포함 ○ 연구소 창출 성과의 확보,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타당성 ○ 연구소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및 홍보 지원의 구체성	20	30
계		100	100

(자료: 교육부)

(3) 기본연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술연구혁신지원’ 사업은 내내역 사업으로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학제간융합연구, 미래도전연구지원, 글로컬R&D지원, 기본연구B 사업이 있음.

< 학술연구혁신지원 사업 예산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안)		예산 증감 (B−A)
		과제수(신규)	예산(A)	과제수(신규)	예산(B)	
학술연구혁신지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1,467(-)	61,542	639(-)	11,166	△50,376
	기본연구B (2026년 신규)	-	-	790(790)	23,700	23,700
	보호연구	163(10)	15,838	129(15)	13,600	△2,238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764(-)	45,980	501(-)	25,653	△20,327
	학제간융합	12(-)	2,025	5(-)	375	△1,650
	미래도전연구지원	50(50)	5,000	85(35)	12,800	7,800
	글로컬R&D지원	119(119)	13,685	239(120)	39,370	25,685
	합계	2,575(179)	144,070	2,388(960)	126,664	△17,406

(자료 : 교육부)

❑ ‘기본연구B’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기초연구 분야 과제 수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신진연구자로서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이공분야 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을 대상으로 연간 6,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개인 단위 연구지원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790개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총 237억원(6개월분)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기본연구B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 (지원대상) 비전임연구자 지원 ◦ (지원기간) 총 3년 ◦ (지원규모) 연간 6,000만원 ◦ **(2026년도 지원규모) 790개 내외×60백만원×6/12, 총 237억원**

(자료 : 교육부)

❑ 기본연구B 사업은 동일 세부사업 내의 내내역 사업인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과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분야, 연구형태 등에서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도부터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바 기본연구B 사업은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을 승계한 후속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본연구B 사업은 2024년 이후 축소된 비전임 교원 대상 지원 사업인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을 대체하고 풀뿌리 기본연구 복원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과 기본연구B 비교>

구 분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기본연구B(2026년 신설)
사업내용	대학의 비전임 연구인력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연구 과제 지원	기초연구 분야 과제 수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신진연구자로서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기회 제공
대상	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비전임 교원(박사후연구원 포함)
연구형태	개인연구(단독연구)	개인연구(단독연구)
지원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全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全 분야
연구기간	1~3년	3년
연간 연구비	연 70백만원 이내	연 60백만원
과제예산	11,166백만원(639개 과제(계속))	23,700백만원(790개 과제(신규))

(자료 : 교육부)

❑ 한편, 과학기술정통부 소관으로 '기본연구'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2024년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 것으로 이공분야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5,800만원씩 최대 5년 동안 지원하는 연구지원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2,000개 신규 과제를 대상으로 1,150억원이 편성되었음[56].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9.2.) 참고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연구’와 교육부 소관 ‘기본연구B’ 사업은 이공분야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초기 연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다만 지원대상을 각각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달리 정하고 있고, 연구기간 및 연구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기본연구와 기본연구B 사업 비교 >

구 분	기본연구(2026년 신설)	기본연구B(2026년 신설)
소관부처	과기정통부	교육부
사업내용	풀뿌리 기초연구 후속으로 초기 교원 및 지방 교원을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안전망 구축	기초연구 분야 과제 수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신진연구자로서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기회 제공
대상	전임교원	비전임 교원
연구형태	개인연구	개인연구(단독연구)
지원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全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全 분야
연구기간	최대 5년	3년
연간 연구비	연 58백만원 내외	연 60백만원
26년 과제예산	115,000백만원 (2,000개 과제(신규))	23,700백만원 (790개 과제(신규))

(자료 : 교육부)

❑ 2024년부터 기존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이 중단되었는바, 후속사업인 ‘기본연구B’ 사업 추진을 통해 이공분야

비전임 교원 대상 신규과제 지원을 지속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공분야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 및 지속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장 연구자들의 연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교육부 소관 '기본연구B' 사업과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연구' 사업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데 합리적 기준 없이 지원대상, 연구기간 및 연구비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고, 사업의 예산과 관리의 주체를 달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연구 지원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제선정 및 협약, 사업비 집행·정산, 평가 및 성과관리, 성과 점검·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유도 등 사업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바,

기본연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동 사업의 취지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및 관리의 소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AI 거점대학[57]

○ 내역사업인 'AI 거점대학' 사업은 AI인재양성을 통한 한국의 인공지능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있으나, ①AI관련 교육기반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단과대학 및 전공 신설에 따른 학생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교당 지급되는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②AI관련 사업이 교육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 사업은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우수대학(특성화 지방대학) 모델 육성·지원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AI 단과대학·전공 등을 운영하여 AI/AI+X 분야 학사 및 석·박사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거점대학(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57)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 중 내역사업
문의: 02-6788-5188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025년 대비 4,492억 5,000만원(105.9%) 증액된 8,73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424,300	873,550	449,250	105.9
○ 국립대학 육성사업	572,200	424,300	843,550	419,250	98.8
○ AI 거점대학	-	-	30,000	30,000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구체적인 예산 배분 및 사업 계획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AI 거점대학'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26년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 3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당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임.

< 2026년도 AI 거점대학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AI 거점대학	30,000	○ 3교 × 10,000 = 30,000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AI 단과대학·전공 등을 운영하여 AI 교육체계 개편·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프라·교원 등 교육기반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사 및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2024년 발표된 글로벌 AI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7.26점으로 대상국 83개국 중 종합 순위 6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세지표인 '인재' 지표에서는 종합 순위보다 낮은 1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2위에서 1순위 하락한 순위임.

<최근 5년간 글로벌 AI 지수 순위 변화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위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위	중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3위	영국	영국	영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4위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영국	영국
5위	이스라엘	이스라엘	독일	캐나다	캐나다
6위	독일	싱가포르	프랑스	한국	한국
7위	네덜란드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독일
8위	한국	네덜란드	한국	독일	캐나다
9위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10위	싱가포르	프랑스	아일랜드	핀란드	인도

자료: 교육부

<2024년 글로벌 AI 지수 '인재(Talent)' 지표 순위 및 점수>

순위	국가	점수	과학자 (Scientists)		전문가 (Professionals)		개발자 (Developers)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	미국	100	1	100	1	100	1	100
2	인도	42.23	24	10.8	2	74.7	2	55.9
9	중국	25.67	2	41.3	43	6.9	19	21.2
13	한국	19.70	11	20.3	13	15.3	16	22.8

자료: 교육부

❑ 또한, 구체적인 지표별 한국의 AI 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운영환경' 지표가 35위로 가장 낮으며, '인재', '연구' 지표가 13위로 두 번째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2024년 한국의 지표별 글로벌 AI 지수 순위 현황>

지표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개발	정부전략	상업
순위	13위	6위	35위	13위	3위	4위	12위
전년대비 순위변동	▼1위	▲1위	▼24위	▼1위	-	▲2위	▲6위

자료: 교육부

세계적으로 AI 개발 및 AI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하여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단위 AI 교육 및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AI거점대학'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AI거점대학” 운영모델(안)은 핵심 인프라 구축 확대 등 교육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교육기반은 운영되는 AI 중점 단과대학의 학생 정원 및 충원률에 따라 수요에 대한 변동이 있으므로, 선정대학에 대한 기준 설정과 구체적인 학생 증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역 AI거점대학 운영모델(안)>

▸ (교육체계) AI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모빌리티, 바이오 등) 기반 융합 분야를 연계한 단과대학, 융합트랙 구성 등
▸ (교육과정) AI 기술을 중심으로 기초수학-핵심이론-응용 프로젝트 연계 AI 전문 교육과정, 다양한 도메인 전공이 결합된 AX 교육과정, 전 학생 AI 기본교육 등
▸ (교육기반) 실습 중심 교육·연구를 위한 GPU·N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우수 교원 인센티브 지원 및 산업계·연구계와 인력교류 등

자료: 교육부

❑ 최근 3개년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 기준 2026년 정원이 2025년에 비해 982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AI(인공지능)분야 정원은 194명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AI거점대학으로 지정되어 AI 분야 신규 단과대학 등이 신설되는 대학의 경우, 동 단과대학의 정원 확대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실습 중심 교육・연구를 위한 실습기자재, 첨단설비와 같은 핵심 인

프라 구축 및 전문 교원 증원 계획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3개년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현황>

분야	학부							대학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순증 합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순증 합계
	학과	순증	학과	순증	학과	순증		학과	순증	학과	순증	
인공지능	7	195	8	200	11	194	589	3	96	5	60	156
반 도 체	14	654	9	226	7	129	1,009	3	70	6	64	134
기 타*	29	980	30	719	43	659	2,358	10	212	14	175	387
계	50	1,829	47	1,145	61	982	3,956	16	378	25	289	667

* SW·통신, 에너지 신소재, 미래차·선박·로봇, 바이오
자료: 교육부

❑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은 AI거점대학 육성을 위하여 국립거점대 3개교를 대상으로 100억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나, 예산액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지역 AI 거점대학 운영모델(안)을 통해 교육기반 구축, AI기본교육 과정 및 전문교육 과정 도입 등 계획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교육기반 구축과 교육과정 운영별 세부계획에 대한 예산 배분 계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역시 필요하겠다 하겠음.

❑ 둘째, 교육부 및 타부처의 AI 관련 사업과의 관련성 검토를 통하여 대학 선정 및 사업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내에서 AI인재양성 관련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운영중인데, 교육부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장학금 지원이 주요 목적이며(연구장학금에 55~65% 이상 지원 :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와 관계없이 1년이내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므로, AI관련 단과대학 및 전공을 신설하는 AI거점대학 사업과 별개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교육부 내 AI관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AI 관련 주요내용	2026 예산안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256-300)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AI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AI+X인재양성 부트캠프)	AI 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하여 AI 부트캠프 확대(3교→40교) 및 AI+X 융합과정 지원(신규 10교) 신설	134,175 (AI 62,000)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2303-300)	4단계 두뇌한국21 (AI교육연구단 지원) (신규AI+X교육연구단 지원)	글로벌 AI 인재 경쟁에 대응하여, 전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AI 분야 교육연구단(팀)에 연구장학금 지원(신규)	533,066 (AI 17,900)

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기업이 함께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AI 등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하는 사업임.
자료 : 교육부

❑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2개의 사업과 신규로 진행될 예정인 “AI거점대학” 사업이 별개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AI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한정된 교원인력·인프라가 분산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실습환경 부족, 전문교원 부족 등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사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함.

❑ 한편, 타 부처 역시 AI관련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인재양성 사업인 “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사업, “AI융합혁신대학원” 사업, “생성AI선도인재양성”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AI 중심대학” 사업이 신규로 반영됨.

‘AI중심대학’ 사업은 대학교(학부) 교육을 AI 중심으로 혁신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55억원이 편성되었음.[58)]

❑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의 “AI거점대학” 사업은 단과대학 및 전공 신설을 통해 학부 단계부터 점진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연구과제 중심의 산업지향적인 인재양성 사업으로 서로 구분된다는 설명임.

58) ‘AI중심대학’ 사업도 ‘AI거점대학’ 사업과 동일하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다만,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의 사업이 AI인재양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AI 중심대학” 사업이 신설된 만큼, 부처간의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할지와 관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중복 가능 여부, 학부-대학원 연계를 통한 인재양성 등 타 부처 사업들과의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인재양성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AI 관련 주요내용	2026 예산안
정보통신 방송혁신 인재양성 (2133-304)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AI대학원)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40,000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양성 (2232-302)	AI융합혁신대학원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지원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양성	21,000
생성AI선도 인재양성 (2232-314)	-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27,000
AI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R&D) (2232-316)	-	AI 융합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을 통해 미래 AI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인재 양성	34,000
AI·SW중심 대학 (2232-301)	AI중심대학	대학(학부) 교육을 AI 중심으로 혁신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모두의 AI 기반 마련	25,5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지역인재정책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2256-303)[59]

○ 한미대학생연수(WEST)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인원 대비 비율이 10분위 학생은 44.1%로 0분위(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비율인 4.3%에 비해 10배 가량되며, 지원 총액 역시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원인원 및 예산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음. 따라서, 다양한 소득계층 학생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홍보 방안을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2256-303)” 사업은 자기 개발 및 진로 탐색에 열정이 있는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 및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연수(WEST), 파란사다리, 한일대학생연수 사업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59) 문의: 02-6788-5193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6억 6,400만원이 증액(6.0%)된 117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3,247	11,090	11,754	664	6.0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843	2,843	2,388	△455	△16.0
○ 한미대학생연수(WEST)	6,258	4,021	5,234	1,213	30.2
○ 파란사다리	3,600	3,640	3,640	-	-
○ 한일대학생연수	564	586	492	△94	△16.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 인원 확대 필요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2256-303)” 사업 중 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연수(WEST)” 사업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생의 일(Work), 영어(English), 학습(Study), 여행(Travel) 프로그램으로, 2008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청년교류 기회 제공에 합의하여 시작된 사업임. 동 사업은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MOU 연장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며, 2028년 11월 해당 협약은 만료될 예정임.

❑ 동 사업은 2026년 예산이 2025년에 비해 12억 1,300만원이 증액(30.2%)된 52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한미대학생연수는 단·중·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간별로 참가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참가비 등 비용에 대하여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산정 시 소득분위를 활용하고 있음.

<한미대학생연수(WEST) 지원기준액 및 소득분위별 지원비율>

구분	금 액		0분위 (기초생활 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	4~5 분위	6~7 분위	8~9 분위	10분위
참가비	'22	단기 $6,150 중기 $7,770	100%	100%	100%	70%	50%	30%	20%	20%
	'23	단기 $6,330 중기 $8,000 장기 $9,730	100%	100%	100%	73%	53%	33%	23%	23%
	'24	단기 $6,640 중기 $8,400 장기 $10,210	100%	100%	100%	100%	75%	50%	35%	35%
	'25	단기 $6,840 중기 $8,652 장기 $10,520	100%	100%	100%	100%	75%	50%	35%	35%
생활비 (4주 기준)	'22	$1,000	100%	95%	90%	85%	75%	50%	50%	50%
	'23	$1,100	100%	95%	90%	85%	75%	50%	50%	50%
	'24	$1,200	100%	100%	100%	100%	75%	50%	50%	50%
	'25	$1,300	100%	100%	100%	100%	75%	50%	50%	35%
왕복 항공료	200만원		정 액							

자료: 교육부

❑ 2025년 기준으로 기초・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 참가자에 대해서는 참가비 및 생활비를 100%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분위별로 차등적으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음.

❑ 다만, 분위별 한미대학생연수(WEST)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2024년 지원인원은 299명으로 2023년에 비하여 117명 증가하였으나,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비용 100%를 지원받는 0분위(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 학생들은 93명으로 2023년에 비하여 41명이 증가하였으며,

소득분위가 가장 높은 10분위는 단일구간에서만 51명이 증가하였음.

❑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은 대학생들의 공평한 어학연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소득분위별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일구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가장 높은 10분위 학생들의 비율이 2024년에 전체 지원인원 대비 44.1%로 나타나는데 비해 0분위는 4.3%, 1분위는 11.7%로 10분위 학생 비율이 타 구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3개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소득분위별 지원인원>

(단위: 명)

연도 \ 분위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22	단기	2	14	4	6	4	2	2	1	5	14	53	107
	중기	10	11	10	8	3	0	8	1	4	5	39	99
	장기												미시행
	합계	12	25	14	14	7	2	10	2	9	19	92	206
23	단기	2	12	8	5	4	2	3	4	4	4	40	88
	중기	1	8	5	6	2	4	2	0	3	7	34	72
	장기	1	1	1	2	3	1	0	0	4	2	7	22
	합계	4	21	14	13	9	7	5	4	11	13	81	182
24	단기	5	7	10	8	5	0	1	4	8	9	43	100
	중기	8	26	10	12	5	3	7	7	11	12	79	180
	장기	0	2	4	1	0	0	0	0	0	2	10	19
	합계	13	35	24	21	10	3	8	11	19	23	132	299

*0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교육부

❑ 또한, 소득분위별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지원자들에게 지원한 총 예산은 3억 1,600만원인데 반해, 10분위

지원자들에게 지원한 총 예산은 15억 8,830만원으로 약 5배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동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학연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적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10분위 학생들은 지원비용을 35% 지원받음에도 예산지원 총액이 0분위(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음.

<최근 3개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소득분위별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 분위		0	1	2	3	4	5	6	7	8	9	10
22	단기	31.4	215.6	180	75.6	42.4	21.2	15	7.5	34	95.2	360.4
	중기	210	225.5	200	136	42	0	77.6	9.7	35.2	44	343.2
	장기											미시행
23	단기	37.4	219.6	142.4	76	50.8	25.4	27	36	32.4	32.4	324
	중기	25.1	196	119	122.4	34	68	23.6	0	32.4	75.6	367.2
	장기	31.6	30.8	29.9	51.2	64.2	21.4	0	0	53.6	26.8	93.8
24	단기	100	140	200	160	77.5	0	11	44	77.6	87.3	417.1
	중기	216	702	270	324	103.5	62.1	101.5	101.5	140.8	153.6	1011.2
	장기	0	68	136	34	0	0	0	0	0	32	160

*0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교육부

❑ 내역사업 중 하나인 “파란사다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해외 현장학습 기회(4~5주)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있으나, “한미대학생연수” 사업은 단기 뿐만 아니라 중기(12개월)·장기(18

개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성과를 제고하고 있음.

❑ 동 사업을 통한 10분위와 같은 고소득층 학생들의 참여 기회 보장도 중요하나,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며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32.2%가 10분위 학생인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계층별 예산 지원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기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 측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4~5분위 학생들은 참여비용의 75%를 지원받고 있으나, 해당 분위 참여인원은 2024년 기준 총 13명(4분위 10명, 5분위 3명)으로 참석인원이 타 구간 지원인원보다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기준 중위소득인 5구간 이하의 학생들에 대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를 2년의 기간 이내에서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러 소득계층의 학생들의 어학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점 등 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4~5구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업 운영 시 저소득층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구간(4~5구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원 비율 조정 등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비율이 100%인 0분위(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 학생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대학·지차체와의 홍보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2268-303)[60]

○ 내역사업인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업 예산이 1억 3,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학비리 등 문제 예방을 위하여 사학기관의 점검 및 회계감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2268-303)은 대학의 재정정보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집계·분석, 고등교육 재정 총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60) 문의: 02-6788-5193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7,700만원이 감액(3.3%)된 2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2,517	2,336	2,259	△77	△3.3
○ 고등교육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1,146	965	1,086	121	12.5
○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1,084	1,084	949	△135	△12.5
○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287	287	224	△63	22.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업 증액 필요

❑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2268-303)” 중 내역사업인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및 실태점검을 통해 사학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사학기관에 대한 실태점검과 회계감리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61], 제70조[62]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63]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은 점검대상인 하나의 사학기관에 대하여 실태점검과 회계감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사학기관의 예산 및 결산, 시설 및 기본재산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운영사항 및 관련 법령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에 대한 감리를 통해 외부 감사인

---

61) **「사립학교법」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사립학교법」제70조(보고·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63)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의 감사 절차 준수,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업은 2025년 대비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9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예산은 16개의 사학기관 점검을 위한 점검 수당 및 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2025년 30개의 사학기관을 점검한 것에 비해 14개 기관에 대한 점검 수당 및 운영비가 감액된 것임.

❑ 사학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대상 건수는 2022년 총 60개 기관에서 2025년 30개 기관으로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에는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점검대상 사학기관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추진 현황>

(단위: 개)

연도	구분				계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원격대학	
2022	34	17	8	1	60
2023	26	18	5	1	50
2024	16	11	2	1	30
2025	11	10	5	1	30
2026	16개 사학기관에 대한 점검 및 감리 수당 편성				16(예정)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전국 사학기관은 총 292개('24 결산기준)로 2025년 기준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주기가 10년이나, 2026년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16개 기관을 점검하게 되면 점검주기가 약 18.3년으로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주기가 길어져 동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또한, 2024회계연도 사립대학 종합자금결산 규모는 55조 9,867억원으로 2021년 대비 11.5%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사립대학 자금의 투명한 운영 측면에서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 점검 및 회계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최근 4개년 사립대학 종합자금결산 규모>

(단위 : 억원)

회계연도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총계
	일반	수익	소계			
2021	21,360	39,434	60,794	229,283	211,917	501,994
2022	21,949	39,473	61,422	235,290	227,661	524,373
2023	24,361	41,737	66,098	241,724	238,580	552,402
2024	23,839	43,466	67,305	253,122	239,440	559,867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최근 5년간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당 10건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오류 지적 비중이 2024년

31.1%로 2023년에 비해 12.5%p 상승하는 등 여전히 사학기관 실태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오류가 다수 있어, 사학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최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와 회계감리 주기가 축소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64]가 있음.

<최근 5년간 사학기관 실태점검 결과 지적 현황>

(단위 : 개, 건, %)

연도	점검 대상 수 (a)	지적건수 (b)	현장시정 건수 (c)	사후시정 건수 (d)	별도보고 건수 (e)	기관당 지적건수 (b/a)	중대한 오류 비중 (d+e)/b
2020	40	412	347	63	2	10.3	15.8
2021	50	455	359	94	2	9.1	21.1
2022	60	644	486	155	3	10.7	24.5
2023	50	522	425	97	-	10.4	18.6
2024	30	322	222	100	-	10.7	31.1
합계	230	2,355	1,839	509	7	10.2	21.9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따라서, 전년대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하여 사학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4) '25년 국정감사 : 사립대학 감사 축소 문제, 사학비리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김영호,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강경숙 의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2301-400)[65]

○ 기관평가 미인증 및 경영위기대학은 일반 재정지원 사업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RISE 사업 참여대상이 될 수 있어 참여조건을 보다 엄밀히 하고, RISE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평가 미인증 및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RISE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의무 매칭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는데, 26년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RISE 사업과 관련한 글로컬대학 및 의대 교육혁신 등 교부조건과 같은 배분내역 등 세부자료를 예산서에 제시하고, 예산 집행 시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감독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2301-400)사업(이하 'RISE 사업'이라 한다.) 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 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65) 문의: 02-6788-5193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393억 3,500만원이 증액(7.0%)된 2조 1,40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예산안 편성기준을 보면, RISE 사업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20% 이상의 지방비 의무 매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3,700	2,001,000	2,140,335	139,335	7.0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01	201,001	RISE 이관	-	-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00	21,000	RISE 이관	-	-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14,000	14,000	RISE 이관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00	25,800	RISE 이관	-	-
□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5,998	5,998	RISE 이관	-	-
□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14,200	14,200	RISE 이관	-	-
□ 마이스터대 지원	15,110	4,750	RISE 이관	-	-
□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9,600	9,600	RISE 이관	-	-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대학평가 미인증 대학 및 경영위기대학의 RISE 사업 참여

❑ RISE 사업은 지역-대학의 공동 해결을 위해 기존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RISE 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2025년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을 RISE로 통합하여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등 8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66]을 RISE에 통합하여 2조 140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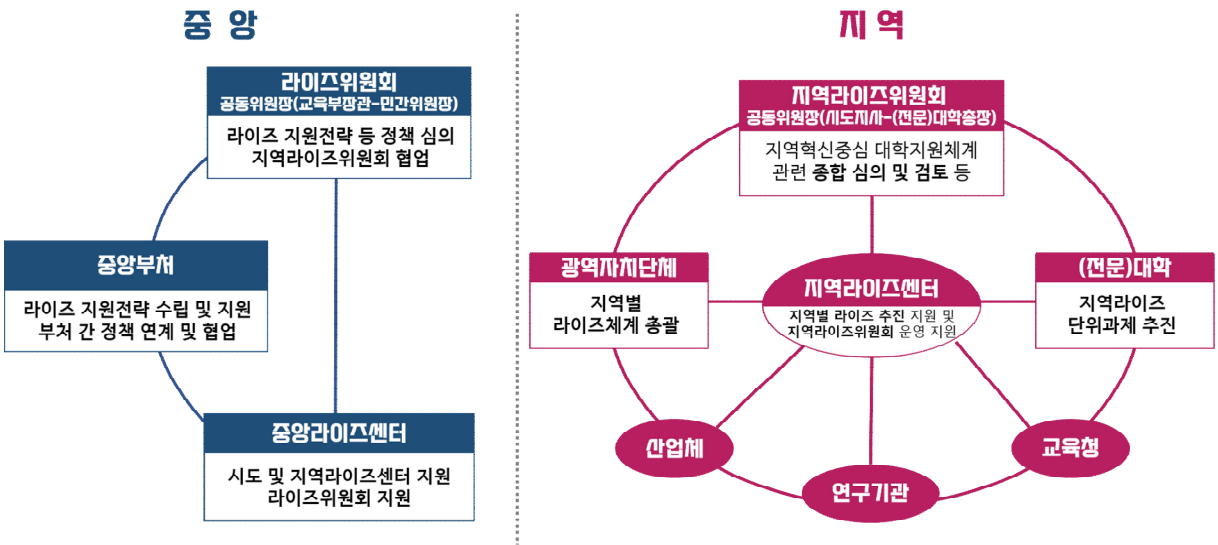
❑ RISE사업은 단일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5년까지 동 사업의 8가지 내역사업(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마이스터대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이 RISE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66)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마이스터대 지원,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 사업체계를 보면, RISE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출연금을 통하여 각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하는 기존 일반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역 RISE 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여, 지역 RISE 체계 하[67]에서 각 지역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지역 혁신에 적합한 대학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대학을 지역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육성-취업-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임.

<중앙-지역 RISE 거버넌스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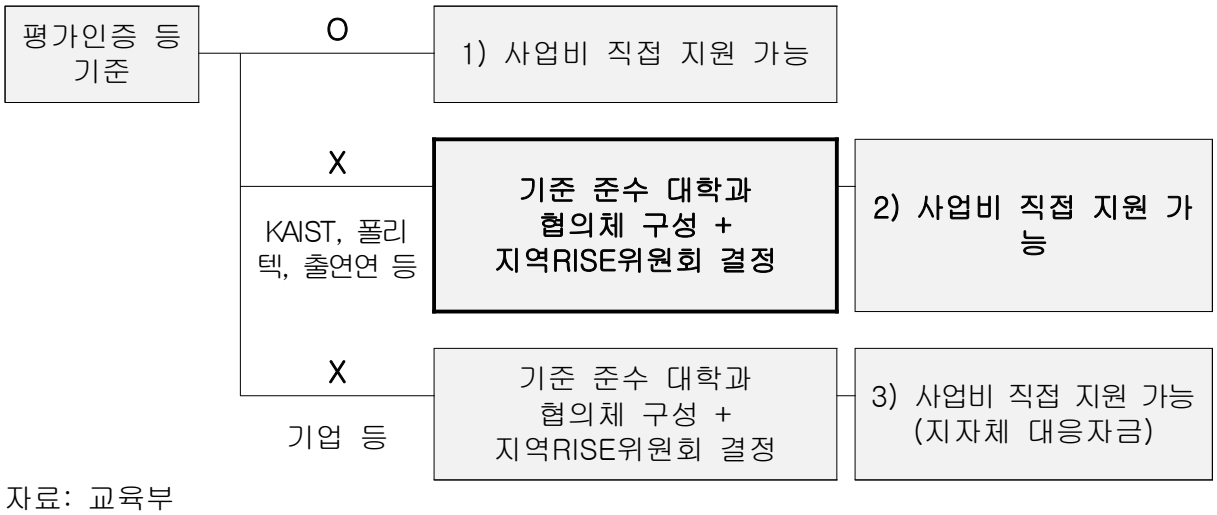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67) 지역RISE센터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에서 각 대학 선발에 관한 평가를 하며 그 결과를 지역RISE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

❑ 다음으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②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원 대상인 대학과 협의체 구성 이후 지역RISE위원회의 결정 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기업 또한 지원 대상 학교와 협의체 구성 이후 지역 RISE위원회가 결정 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대상>



자료: 교육부

❑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대학기관평가 인증제도 등의 법률적 근거와 취지를 살펴보면, (전문)대학기관평가 인증 제도란 (전문)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68]을 근거로 함.

기관평가인증은 인증·조건부인증·인증유예·미인증으로 총 4가지 판정유형이 있으며, 미인증 판정을 받는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이 제한됨.

❑ 한편,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제2호 및 제6호[69] 등에 근거함.

---

68)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6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3의2.「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또는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3의3.「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2025년 대학기관인증 미인증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보면,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은 일반대 18개교, 전문대 7개교로 총 25개교이며, 경영위기대학(사립대학)은 일반대 5개교, 전문대 4개교로 9개교가 지정되었음. 이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9개교는 모두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을 받았음.

<2025년 대학기관평가 미인증 대학 및 경영위기대학 현황>

구분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경영위기대학
일반대	가톨릭관동대, 감리교신학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수원가톨릭대, 신경주대, 아신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18교)**	대구예술대, 대전신학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5교)**
전문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7교)**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4교)**

자료: 교육부

❑ 그런데, 전국 RISE 사업 선정 대학의 현황을 보면, 25년 6월 기준 총 312개교이며, 이 중 대학기관인증 미인증을 받은 대학 25개교 중 5곳이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참여하고 있음.

<기관평가미인증 대학 중 RISE 사업 참여 대학>

지역	대학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충남	금강대학교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경북	영남신학대학교

자료: 교육부

<지자체별 RISE 대학 선정 현황 (`25.06. 기준)>

지역	선정대학	선정 대학 수
서울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37
부산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	20
대구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10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운대학교 등	12
광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등	17
대전	국립한밭대학교, 대전대학교, 건양대학교 등	16
울산	울산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4
세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등	5
경기	경복대학교, 동국대학교, 김포대학교 등	50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15
충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강동대학교, 유원대학교 등	18
충남	연암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건양대학교 등	25
전북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14

전남	국립순천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	17
경북	김천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선린대학교 등	30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등	19
제주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3
합계	-	312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의 사업 참여에 대하여 교육부는 RISE사업은 지방-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근 지역사회의 중심지인 지역대학이 비록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대학의 인프라, 인적·물적 자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며,

이러한 기관평가 미인증 및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인증받은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실제로 광양보건대학교는 보건 중심의 전문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협의체[70]를 구성하여 RISE사업에 선발되었고, 전남 지역의 지역의 건강행태 관리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 구강관리 서비

70) 협의체 구성: 국립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광양보건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한영대학교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노력을 통한 대학-지역 동반성장을 강구하고 있음.

스, 노인 대상 물리치료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는 목원대학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전 지역의 늘봄학교 강사 수급 불안 및 교육 프로그램 품질 편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육부는 대학기관평가 미인증인 대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이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대학에 투입되도록 하고, 대학의 자구노력 촉진을 위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경영위기대학과 미인증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사항>

구분	일반 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육부	타부처	지자체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 또는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제한	제한	사업 주체별로 지원 여부 판단 ※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경영위기/미인증 대학 정보 통보 (교육부→타부처·지자체)		제한 (신·편입생 대상)	제한 (신·편입생 대상) ※ 경영위기대학 중 기관평가인증 대학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 한해 허용

* 결산서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정진단이 곤란한 대학은 경영위기대학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 제한(일반재정지원, 교육부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자료: 교육부

❑ RISE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중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사업은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RISE 사업의 취지가 중앙부처 중심의 지원대학 선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발전과 연계된 대학선정은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대학선정의 기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정책간의 충돌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의 RISE 사업 참여의 확대가 일반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따라서, 인증받은 대학과의 협의체 구성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참여 조건을 보다 엄밀히 하고, 미인증 대상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상시화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보다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비록 RISE 사업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기관평가 미인증 및 경영위기 대학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를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 RISE 사업의 성과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지자체 → 대학)

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부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통해 지역별 성과를 점검·평가하게 됨.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설정한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지역 및 대학의 설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교육부는 지역별 자율성과지표(정량평가)를 바탕으로 RISE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별 RISE 추진과정 평가(정성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추진과정이 RISE 체계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게 됨.

<RISE 사업 공통평가지표 구성(안)>

지표 분류	지표명	
공통 성과지표 (안)	① 지역별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 경제 영향력 증가율
RISE 추진과정 평가항목 (안)	① 예산 확보·집행 등 사업 운영, 성과관리의 적절성	
	② 거버넌스 구축·운영의 적절성	

자료: 교육부

❑ 따라서, RISE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기관평가 미인증 및 경영위기대학의 지역 RISE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의 적절성, 예산 집행 관리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개별 세부지표를 설정하는 등 해당 대학에 대한 사업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별 RISE 추진과정 등 점검 기준·배점(안) >

점검 영역	점검 기준	배점 (총 600점)
지역 고등교육 혁신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 지역 RISE 추진체계의 적정성 - 시·도별 RISE 전담부서·기관 및 지역RISE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 중·장기적인 지역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 지역RISE센터 중심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 초광역 및 범부처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200
RISE 예산 확보 및 예산 지원 전략의 적정성	▸ (광역·기초)지자체 매칭 등 국고 외 예산 확보의 적정성 ▸ **지역 RISE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의 적정성** ▸ **대학의 효율적 성과 창출 유도를 위한 예산 집행 관리 체계의 적정성**	100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	▸ 지역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활용의 적절성 ▸ 자율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등의 적절성 ▸ 지역대학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의 적정성	100
당해연도 자체평가의 적정성	▸ 지역 RISE 센터의 자체평가 계획의 적정성 ▸ 지역 RISE 센터 자체평가 과정·결과의 적정성	100
중앙-지역 협업 영역 과제 운영의 적정성	▸ RISE 체계 내 중앙-지역 협업 영역(글로컬대학, 의과대학 지원, 늘봄 프로그램 지원, 8개 이관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과제 등) 운영의 적정성	100

자료: 교육부

2) RISE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의 확보에 대한 점검과 기준 설정 필요

❑ RISE 사업은 2026년부터 8개 내역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20% 이상의 지방비 매칭 의

무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음.

❑ RISE 사업은 2026년에 총 2조 1,40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비 의무 매칭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매칭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4,280억 이상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함.

❑ 2025년 6월 기준 RISE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매칭액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 예산액 1조 5,383억 1,900만원에 대하여 총 3,588억 6,700만원의 지방비가 매칭되었음.

<시·도별 RISE 사업 예산 현황>

지역	국고 합계 (백만원)	대학역량 기반		지역역량 기반					지방비 매칭액 (백만원)
		자율재구조화 사업 수주율	글로컬 대학*	계획 우수 등	늘봄	시범 지역	매칭 률	의대	
서울	63,998	43,998	-	8,500	4,000	-	4,400	3,100	21,650
부산	158,685	101,545	39,640	3,500	-	3,000	3,500	7,500	31,609
대구	85,817	58,870	11,147	3,500	-	3,000	1,000	8,300	13,968
인천	22,310	9,010	-	3,500	4,300	-	3,500	2,000	3,600
광주	81,090	48,570	3,045	17,375	4,300	-	3,500	4,300	15,215
대전	73,677	52,294	3,308	12,375	-	-	1,000	4,700	6,767
울산	51,852	33,222	11,130	3,500	-	-	2,500	1,500	11,348
세종	15,179	11,679	-	3,500	-	-	-	-	2,336
경기	65,263	43,063	-	13,500	-	-	3,500	5,200	11,413

지역	국고 합계 (백만원)	대학역량 기반		지역역량 기반					지방비 매칭액 (백만원)
		자율재구조화 사업 수주율	글로컬 대학*	계획 우수 등	늘봄	시범 지역	매칭 률	의대	
강원	141,125	71,305	55,920	8,500	-	-	1,000	4,400	25,466
충북	109,034	55,779	26,880	17,375	-	3,000	3,500	2,500	23,231
충남	120,937	81,822	10,000	17,375	4,340	-	5,400	2,000	30,523
전북	117,211	66,086	35,625	3,500	-	3,000	5,400	3,600	40,522
전남	95,191	47,291	31,000	8,500	-	3,000	5,400	-	31,098
경북	210,286	124,786	66,200	8,500	4,300	3,000	2,500	1,000	50,629
경남	138,186	73,086	42,500	13,500	-	3,000	4,400	1,700	31,717
제주	40,674	33,674	-	3,500	-	-	2,500	1,000	7,775
계	1,590,515	956,080	336,395	150,000	21,240	21,000	53,000	52,800	358,867 (22.5%)

주1: 국고는 '25.9월 기준, 지방비 매칭액은 '25.6월 기준 자료임(추경으로 변동 가능)
* '25년 본지정 글로컬대학(7개 모델)의 1차년도 지원금은 11월 중 확정 예정으로 동 자료에는 미반영

주2: 의과대학 인센티브 총액 551억 5000만원 중 11억 3,000만원은 KAMC(의대협회)에 지급하였으며, 가톨릭관동대는 기관인증 미평가에 따라 지급이 제외됨.

자료: 교육부

❑ RISE 사업은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중요한 사업임.

❑ 따라서, RISE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대학 재정지원의 연속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2026년 RISE 사업 예산 증액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의무매칭에 따른 지방비 소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확보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액에는 2023년부터 진행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대학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차이 등에 따라 의과대학 인센티브 지급액이 상이하고, 2026년부터 RISE 사업에 이관된 8개 내역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일부 지급하여야 하므로,

<8개 이관사업 예산 및 사업기간>

사업명	예산(`25년)	사업기간	사업명	예산(`25년)	사업기간
BRIDGE3.0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억원	~`26.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일반대)	258억원	~`28.2
마이스터대 지원	47.5억원		창업교육선도대학 (SCOUT)	60억원	
신산업분야 특화선도전문대학	142억원	~-27.2	COSS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억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전문대)	96억원		산학협력단지 조성	140억원	유동적

자료: 교육부

RISE 사업으로 이관된 8개 내역사업 및 기존 진행하던 글로컬대학 사업종료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비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건전

성에 따라 지원되는 국고액(사업비)에 대한 의무매칭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배분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RISE 사업의 예산서 세부자료 구체화 및 예산 집행 감독체계 강화

❑ RISE사업은 단일 내역사업으로 2조 1,403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에는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지정에 따른 대학별 지급액과 의대 교육혁신 지원액이 반영되어 있음.

❑ 특히, 교육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RISE사업비를 교부할 때,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는 교부조건에 해당되는 대학에 일정액을 보장하고, 남은 예산을 각 대학의 사업계획에 따라 재배분하게 됨.

❑ RISE 사업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대학 혁신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와 별개로 교육부가 교부조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한 예산 배분항목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사업대상을 특정한 예산 항목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서에 교부조건에 따른 예산 배분의 구체

적인 세부내역이나 배분기준 등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며, 특히 RISE 사업은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교부조건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근거자료를 별도로 명시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RISE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관련 사항>

① 글로컬대학(국중·사립대) :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 지원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원

※ 거점국립대 지원분은 '26년 정부안부터 「국립대 육성사업」에 편성

- 중앙단위 평가를 통해 모델 지정·지원금 확정 → 지역별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을 부가하여 교부

② 의대 교육혁신 지원 :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과정 혁신 지원, 지역·필수의료 교육 강화 등 의학교육의 질 제고 도모

※ 지역별 자금 교부 방식은 글로컬대학과 동일(교부조건 부가)

자료: 교육부

❑ 한편, 2024년까지 진행되었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대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운영실태 점검[71]에 따르면, 연구비 편취,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위반 등 부적정

7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5.11.4.

집행사례가 총 980건(총 408억원) 적발되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 연구비 청구 및 페이백 등 연구비 집행 부적정이 421건,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 및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 위반 339건,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120건 등으로 총 980건임.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

분야	적발건수	적발액수	제도개선
연구비 집행 부적정	421건	8.4억원	①다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부정행위 제재 수단 강화
입찰담합 및 계약절차 위반	339건	327.4억원	①쪼개기 수의계약 점검 강화 ②국가계약법 준법 교육실시
예산관리 부적정	120건	16.2억원	①지자체 주도 예산관리 ②지자체별 예산 차등 지원
성과관리 부적정	60건	-	①중복수급 관리 ②불성실 연구자 제재 강화
계	980건	408억원	-

자료: 국무조정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5년) 국비 1조 1,84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2025년부터 RISE 사업으로 통합되었음.

RISE 사업은 RIS 사업과 동일하게 지역대학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 주도의 RIS 사

업과 차이점이 있음. 이에 따라 총괄대학 소속의 총괄운영센터가 사업비를 집행하던 RIS사업과 달리 RISE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지역 RISE 센터가 집행하면서 앞서 밝힌 예산의 부적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RIS사업과 RISE사업 재원 체계 비교>

구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주체	대학(주도), 광역지자체, 기업	광역지차제(주도), 대학, 기업
재원규모	`24년 기준 3,400억원	`26년 기준 2조 1,403억원 (`25년 기준 2조 10억원)
재원집행	총괄대학 소속 총괄운영센터	지역RISE센터(비영리법인)

자료: 교육부

❑ 다만, RISE 사업 역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예산 사용 목적을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재원규모가 2026년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2조 1,403억 3,500만원으로 2024년 RIS 사업 예산인 3,400억에 비하여 6.3배 수준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RISE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RIS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를 바탕으로, 위법·부적정한 집행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RISE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집행 상황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국립대학육성사업[72)]

○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①장기적인 재원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성과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②연구중심대학 혁신을 위한 우수 교원 확보 등 보완 제도에 대한 이행계획을 설정하고, ③연구대학 인센티브 배분 기준 설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 지역사회 여건, 인재양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우수대학 모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임

72) 세부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2704-301)" 의 내역사업
문의: 02-6788-5193

❑ 동 사업은 “국립대학육성사업”, “AI거점대학”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내역사업인 “국립대학육성사업”은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의 일환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73]”(이하 공식명칭 ‘거점국립대육성지원’이라 함)를 포함하고 있음.

❑ “거점국립대육성지원” 사업은 교육 분야의 6대 국정과제 중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성장 전략’에 맞추어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의 연구대학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5극 3특[74]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

73)

<거점국립대육성지원(“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요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거점국립대 교육 혁신 지원	국립대학육성사업 (2704-301)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인공지능 거점대학	
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301-400)
거점국립대 고가·첨단기자재 지원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2704-303)

74)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중부권) 및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4,492억 5,000만원이 증액(105.9%)된 8,73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424,300	873,550	449,250	105.9
○ 국립대학육성사업	572,200	424,300	843,550	419,250	98.8
○ AI 거점대학	-	-	30,000	30,000	(신규)

자료 : 교육부

❑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8,435억 5,000만원으로, 국립대 유형별 재정 지원액를 살펴보면, 일반국립대 28개교(국가중심대학 17개교, 교대 11개교)에 대한 재정 지원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나, 거점국립대 9개교에 대한 지원액이 전체 예산 증액분(4,192억 5,000만원)만큼 증가함.

< 2026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거점대지원] ▸ 199,170백만원	[거점대지원] ▸616,200백만원**(+417,030백만원)**
[일반국립대지원] ▸국중대(17교)+교대(11교) : 223,930백만원	[일반국립대지원] ▸국중대(17교)+교대(11교) : 223,900백만원
총계 : 424,300 백만원 ※ 사업관리비 1,200 포함	총계 : 873,550 백만원 ※ 사업관리비 3,450 AI거점대학 30,000 포함

자료: 교육부

❑ 2026년 거점대지원 예산 증액분 총 4,170억 3,000만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거점국립대 지원액이 2025년 대비 630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또한,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예산 2,340억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사업에서 거점국립대 지원분에 한해 이관되어 편성됨.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국립대학육성사업

(`25) 424,300백만원 → **(`26요구)840,100백만원**, 425,800백만원 증액

-(산출근거)

- **거점국립대 지원 262,200백만원**
-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00백만원**
-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234,000백만원**

자료: 교육부

<2025년 대비 2026년 거점대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비고
거점국립대 지원(재정지원)	199,170	262,000	63,030	증액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	120,000	120,000	신규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	234,000	234,000	이관 (RISE사업)
계	199,170	616,200	417,030	-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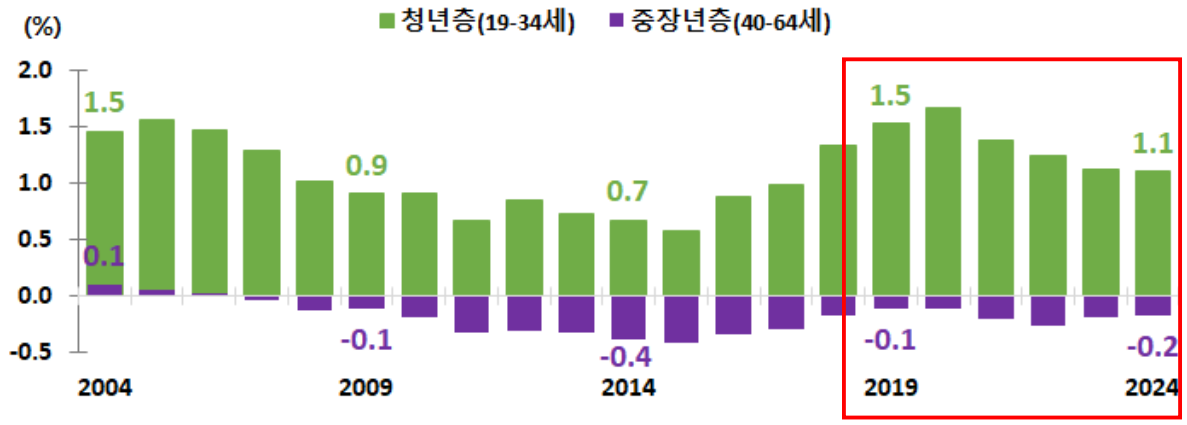
1) 성과목표 사전 설정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등 사업 보완 필요

❑ 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은 거점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평균 2,4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서울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000만원으로 약 2.4배 차이가 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성장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통계조사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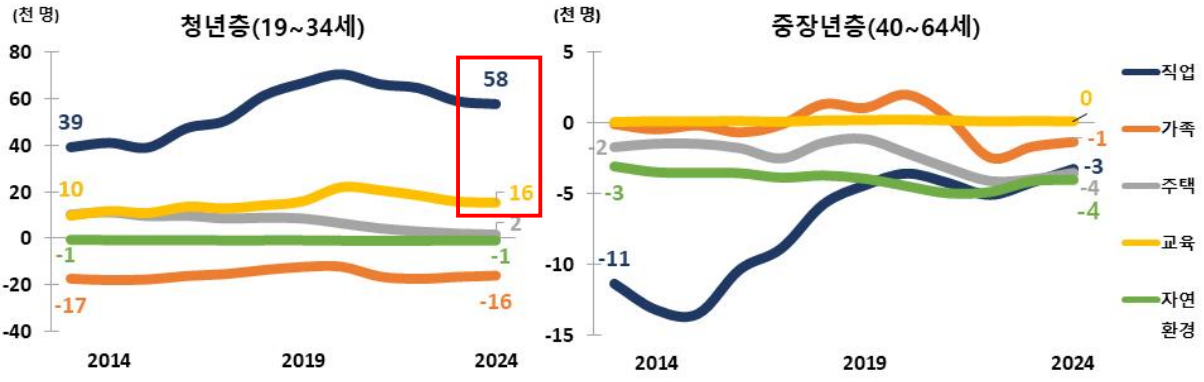
펴보면, 최근 20년간 19~34세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지속적인 순유입이 발생하였음. 또한, 2024년 청년층의 수도권 순이동 사유로 직업이 가장 높으며(58,000명), 교육이 두 번째로 높게(18,000명)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투자는 지역의 균형성장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수도권 청년층과 중장년층 순이동률>



자료: 통계청

<수도권 1인 이동자의 전입사유별 순이동>



자료: 통계청

❑ 다만, 이러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등이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재정확대와 관련하여,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약 4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75]. 그런데 현재의 예산편성방식은 예산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지역정주율 등)를 보다 엄밀히 사전에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 달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아울러 재정투입과 관련하여서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에 따라 금융·보험업분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4)의 개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나,

75)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안)」, p23

정부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예산투입과 더불어 다른 보완적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로 정부[76]에서는 재원조달방안 다양화를 위해 대학의 R&D 유치 확대 및 지자체 지원 및 기부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중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원의 다양화 방안>



자료: 교육부

❑ 둘째,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과 더불어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원인사 운영 특례 및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등 보완적인 제도 시행에 대한

76)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향(안)」, p23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시・도[77]에 대하여 특화지역이 지정되었으며,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 규제특례 제도임.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육성법」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한 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나갈 계획임.

❑ 다만, 거점국립대는 국가 재정에 기반한 운영 구조와 교원의 공무원 신분 등 인사・재정・조직 운영 전반에 행정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거점국립대에 우수 교원 확충을 위한 인건비 상한 특례, 정년기준 완화, 산업계 겸직 활성화와 같은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등 범부처 협의체계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77) 부산,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규제 특례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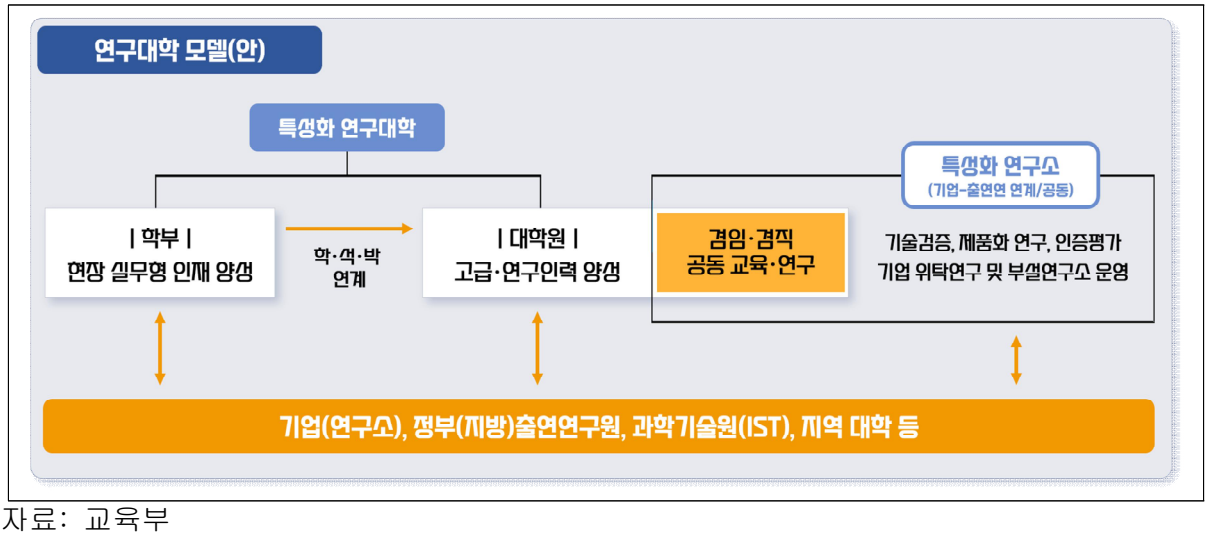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 셋째, 국회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역별 구분된 산출근거의 제시와 이를 반영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2026년 예산안에는 내역사업인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하위사업으로 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일반 재정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 거점국립대 일반 재정지원 사업과 별도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 혁신 단과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1,200억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인재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5극 3특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산학연 협력기반 특성화 대학 모델을 3곳 선정하여 연구대학 인센티브를 교당 약 400억원 지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거점국립대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연구대학 모델(안) 이외의 연구중심대학 선발 체계과 같은 이행계획이나, 선발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 기준 설정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산학연 협력기반 특성화 연구대학 모델(안)>



자료: 교육부

<전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현황>

지역 (특례적용건)	특례 주요내용	적용기간/적용대상
부산 (2건)	①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졸업학점의 1/4 → 1/2이내 ② **비전임교원 정년기준(65세) 완화**	'25.4.21. ~ '29.4.20./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대구 · 경북 (6건)	①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졸업학점의 1/4 → 1/2이내	'25.4.21. ~ '29.4.20./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②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25.4.21. ~ '29.4.20./ 국립경국대, 경북대
	③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25.4.21. ~ '29.4.20./ 국립경국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④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상향** : 공공기관, 출연연 및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는 기관에 한해 실습지원비율 확대(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50%)	'25.6.9. ~ '29.6.8./ 국립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⑤ **단일교지 요건 완화** : 해당 캠퍼스에 한해 단일교지로 인정	'25.6.9. ~ '29.6.8./ 대구한의대, 한동대
	⑥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 해당대학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 지급 허용	'25.6.9. ~ '29.6.8./ 경북대
광주 · 전남 (8건)	① **학점인정 범위 및 기준 완화** : 타교 교육과정 이수결과 학점으로 인정(1/2→3/4범위 내) ②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	'22.3.1. ~ '26.2.28./ 전남대, 목포대 등 15개교
	③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에 한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허용	'25.4.21. ~ '29.4.20./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
	④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25.4.21. ~ '29.4.20./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
	⑤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⑥ **비전임교원 정년기준(65세) 완화**	'25.4.21. ~ '29.4.20./ 국립목포대, 전남도립대
	⑦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 정원외 편입학 허용** :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100,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100 이내 범위에서 허용	'25.6.9. ~ '29.6.8./ 국립목포대
	⑧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25.6.9. ~ '29.6.8./

지역 (특례적용건)	특례 주요내용	적용기간/적용대상
	: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율 확대(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이내 → 50%이내)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
대전 · 세종 · 충남 (5건)	①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 ② **현장실습 운영 특례** : 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지원비 확대(25→50%) ③ **자율주행 로봇 실증 교육과정 규제특례** :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인근 공원에서 실증 교육과정을 운영 ④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기준 완화** :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학과 간 타 대학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 필요 인정 학점 기준 완화(1/2→ 3/4 이내)	'23.3.1. ~ '27.2.28./ 건양대, 충남대 등 23개교
	⑤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대학이 위치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	'25.4.21.~'29.4.20./ 건양대
울산 · 경남 (9건)	①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	'22.3.1.~'26.2.28./ 경상국립대, 창원대 등 6개교
	②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에 한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허용	'25.4.21.~'29.4.20./ 창원대
	③ **계약정원·학과 설치·운영 규정 완화** : 대학이 위치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내 소유 또는 임차 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운영 허용 ④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25.4.21.~'29.4.20./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⑤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대학이 위치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	'25.4.21.~'29.4.20./ 울산대
	⑥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 제한 규제 완화** : 강사의 교수시간 주당 9시간 이하(최대12시간)로 적용 허용	'25.6.9.~'29.6.8./ 울산대
	⑦ **대학의 주요보직에 개방형 공모제 도입** : 대학 부총장 및 대학원장·단과대학장에 외부인사 임명 허용	'25.6.9.~'29.6.8./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지역 (특례적용건)	특례 주요내용	적용기간/적용대상
	⑧ 표준현장실습 직무교육시간 및 실습지원비율 확대 : 중앙부처·지자체가 선정·관리하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율 확대(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이내 → 50%이내) **⑨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 해당대학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 지급 허용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충북 (6건)	**① 겸임교원 채용 규제 완화** : 1년 미만 단위 임용 및 별도 채용절차 특례 부여 **②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 이동수업 운영승인 권한을 지역협업위원회에 부여	'22.3.1.~'26.2.28./ 강동대, 충북대 등 15개교
	③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 **④ 비전임교원 정년기준(65세) 완화**	'25.4.21.~'29.4.20./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⑤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제한 완화 : 해당대학 재직중인 교직원에게 일반연구비 지급 허용	'25.6.9.~'29.6.8./ 국립한국교통대, 충북대
	⑥ 표준현장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 : 실습기관이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일 경우 실습지원비율 확대(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이내 → 50%이내)	'25.6.9.~'29.6.8./ 건국대(글로컬), 국립한국교통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강동대, 충청대, 한국교원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전북 (3건)	**① 통합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허용** :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에 한해 전문학사학위 수여 허용 **② 동일 학교법인 내 대학 통합시 통합되는 대학으로 산학협력단의 잔여재산 등 포괄적 승계 허용**	'25.4.21. ~ '29.4.20./ 원광대, 원광보건대
	③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 정원외 편입학 허용 :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100,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100 이내 범위에서 허용	'25.6.9.~'29.6.8./ 원광대
계	**7개 지역(12개 시·도), 총 39건**	

자료: 교육부

6.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일반회계>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78]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에 따라 출연 예산이 달라지므로, 자체수입에 관한 세부 산정 근거를 객관화하여 예산 집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관의 통합 지원 및 구축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7억 5,700만원(33.2%)이 증액된 70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78) 문의: 02-6788-5193

< 2026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113	5,298	7,055	1,757	33.2
○ 인건비	6,774	6,978	7,255	277	4.0
○ 경상비	3,238	3,645	3,591	△54	1.5
○ 사업비	12,383	11,927	10,660	△1,267	10.6
○ 자체수입	△17,252	△17,252	△14,451	2,801	16.2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전기이월금 세부 산정 방식 명확화 필요

❑ 동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사업으로 인건비가 2025년 대비 2억 7,7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비는 5,400만원 감액, 사업비 역시 12억 6,700만원 감액되었음. 다만, 자체수입이 28억 100만원이 감액(172억 5,200만원 → 144억 5,100만원)되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사업 예산은 총 1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예산(A)	2026예산안(B)	증 감	
			(B-A)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298	7,055	1,757	33.2
○ 인건비	6,978	7,255	277	4.0
○ 경상비	3,645	3,591	△54	1.5
○ 사업비	11,927	10,660	△1,267	10.6
○ 자체수입	△17,252	△14,451	2,801	16.2
- 학점은행제 수수료	△12,693	△12,169	524	4.1
- 독학학위제 수험료	△577	△533	44	7.6
- 이월결산잉여금	△3,596	△1,367	2,229	62.0
- 기타수입	△386	△382	4	1.0

자료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79]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19조제7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출연기관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운영 사업 등 국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80]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수지차 보전기관[81]으로,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임[82].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부내역을 자체수입에 반영한 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있음.

---

79)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80) 교육부 소관 수지차 보전기관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81) 공공기관 유형별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현황

구분	기관수	공공기관					비공공기관
		소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출연	37	36	-	-	15	21	1
보조	25	21	-	1	2	18	4
합계	62	57	-	1	17	39	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2)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 168p

이에 따라 수지차 보전기관은 자체수입액을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과소 계상되거나 일부 자체수입이 누락되는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출연금 규모가 과다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반대로 과다계상되는 경우 출연금이 과소 편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한 기관 고유의 목적 달성이 저해될 수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2026년 예산은 총 지출 예산 215억 600만원에서 자체수입액 예산(예산 편성 시 추정치)인 144억 5,100만원을 차감한 총 70억 5,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음.

이때 진흥원 자체수입액 예산을 살펴보면, 이월결산잉여금이 22억 2,900만원 감액되어 자체수입액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와 경상비 등이 각각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출연하는 예산은 17억 5,7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된 것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회계연도 결산 시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한 결산잉여금이 발생함. 이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83]에 따라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

8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고 있어 당해연도 결산잉여금이 차년도 전기이월금으로 반영되고 있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므로 자체수입액을 과소계상하는 경우 지급받는 출연금이 많아지게 되며, 과다계상되는 경우 지급받는 출연금이 적어지게 됨. 이에 따라 예산 편성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수입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함.

❑ 그러나, 최근 2개년 결산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은 20억 200만원, 2024년은 5억 6,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전기이월금은 2025년 전년동 수준으로 추계되어 3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실제 2025년 전기이월금(=2024년 결산잉여금)보다 30억 3,400만원 많은 수준임.

<2023～202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수입(A)	24,883	22,984	20,421
- 기관 출연금	8,840	6,969	5,113
- 사업수입	12,932	12,315	12,860
- 기타수입	303	397	446
- 전기이월금	2,808	3,303	2,002
지출(B)	21,580	20,982	19,859
- 인건비	6,396	6,579	6,744
- 경상비	3,268	3,167	2,784
- 사업비	11,916	11,236	10,331
결산잉여금(A-B)	3,303	2,002	562

자료: 교육부

<2024～2026년 자체수입 예산 및 전기이월금 산정 방식>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자체수입 예산	산출 방식
2024년도	학점은행제 수수료	12,693	- '23년 예산(12,035백만원) +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5.46%, 658백만원)
	독학학위제 수험료	577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기타수입	386	- 최근 5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전기이월금	3,596	- **최근 3개년 결산잉여금 평균액**(2,859백만원) + 전전기이월금(737백만원)
합계		17,252	
2025년도	학점은행제 수수료	12,693	- 전년동
	독학학위제 수험료	577	- 전년동
	기타수입	386	- 전년동
	전기이월금	3,596	- 전년동
합계		17,252	
2026년도 (안)	학점은행제 수수료	12,169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독학학위제 수험료	533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기타수입	382	- 최근 3개년 결산 평균액 반영
	전기이월금	1,367	- **최근 3개년 결산잉여금 평균액 반영**
합계		14,451	

자료: 교육부

❑ 이는 COVID-19로 기관 주요 사업인 학점은행제 수수료, 독학학위제 수험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했던 기간 동안 증가한 결산잉여금을 기준으로 전기이월금이 편성된 것으로, COVID-19 종식 이후 자체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023년～2026년 전기이월금 예산 및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예산안 편성 시 전기이월금 세입예산	2,969	3,596	3,596	1,367
결산 시 결산잉여금	2,002	562	-	-

자료: 교육부

❑ 결산잉여금은 인건비, 사업비 등 집행실적(지출) 및 사업수입(수입)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전기이월금(=직전년도 결산잉여금) 예산 편성 역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전기이월금 세부 산정 기준을 단순 직전 3개년도 결산잉여금의 평균을 반영하는 방식에서 최근 자체수입 실적 추이 및 당해연도 수입 추계 등을 함께 고려하는 등 전기이월금 산출을 위한 산정 근거를 다각화하여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84]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직업계고 취업자 수 감소 등 사업수요와 최근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예산 추계를 보다 엄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4606-30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술·기능인재가 사회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참여 수당 및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취업연계 장려금, ②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으로 구성됨.

❑ '취업연계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고졸청년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장실습 지원금'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84) 문의: 02-6788-5193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억 5,000만원(0.1%)이 증액된 1,02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1025억 3,000만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에서 전년대비 3억 3,000만원(1.9%)이 증액되었고, “취업연계 지원금”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21,480	102,380	102,530	150	0.1
○ 취업연계 장려금	102,000	83,616	83,616	0	0.0
○ 현장실습 지원금	18,000	17,670	18,000	330	1.9
○ 사업관리비	1,480	1,094	914	△180	16.5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법상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85],

❑ 그런데,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보조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같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보조비목 타당성	・ 근거법령상 보조비목으로 적절한지 여부 - 근거법령상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 ※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비목이 아닌 부처 직접사업비, 민간위탁비 등으로 추진 필요
정책적 지원 필요성	・ 국가정책상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사업목적이 명확・타당하며,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지 고려 ※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등 고려

자료: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85)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 p.103

❑ 그런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 사업은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 내역사업인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3점’을 감점을 받았음.

동 사업은 현재 「교육기본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내역사업인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닌 사업수혜자로 해석되는 등 보조사업자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이 있음.

또한,「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3조는 재정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시책 마련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보조사업을 진행할 근거로 봄이 어렵다는 것이 주요 평가 내용임[86].

86)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p.196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법적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5.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8.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사람
한국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교육부는 동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6호등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은 아니나, 정책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추

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근거 마련 검토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또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를 동 사업의 법적근거로 보아 국가가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국가로 볼 것이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국가사무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보다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 예산 집행 수준에 맞춘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세부 산정 근거 명확화 필요

❑ 2024년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794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24년도 예산액 대비 77.7%가 집행되었음. 또한, 취업연계 장려금의 실제 지원 인원 역시 산출 근거인 20,400명에 못미치는 15,885명을 지원함.

❑ 취업연계 장려금의 예산지원 방식을 보면, 직업계고 학생 또는 일반고 직업계 위탁교육과정 학생들이 신청하면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해당 학생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이 확인된 학생에 대하여 선지급의 방식으로 5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선지급 방식으로 장려금이 과오지급되거나, 재직 도중 퇴사 시 환수절차를 밟게 되는 등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2024년부터 3개월 재직이 확인된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재직 후 잔액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즉, 2024년도 편성된 예산은 2024년에 고3인 학생들이 조기취업한 경우와 2023년에 고3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받게 되는 것임.

<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인원 및 지원 금액>

(단위:명, 백만원)

사업연도 (사업비 기준연도)	학년도 (고3학년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백만 원)
2021	2020	16,177	64,708
	2021	2,302	11,510
2022	2021	18,902	94,510
	2022	1,498	7,490
2023	2022	20,146	100,730
	2023	254	1,270
2024	2023	15,885	79,425
	2024	사업 방식 변경으로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조기취업은 10월 1일을 기준으로 가능하며, 사업방식이 후지급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기준연도에 고3인 학생들은 3개월 재직 후인 차년도에 장려금을 받게 되므로 2024년에 고3인 학생들에 대한 장려금을 불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사업방식 변경으로 2024년도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나, 동 사업은 졸업 후 30개월 이내에 12개월을 재직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2023년 ~ 2025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뒤늦게 취업하는 경우 '취업연계 장려금'을 받음에 따라 수급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직업계고 졸업자 수의 감소(2020년 89,998명 → 2024년 63,005명)와 더불어 취업자의 감소(2020년 24,938명 → 2024년 16,588명)가 나타나고 있는바, 취업 학생 수 자체는 감소하여 지원인원이 감소하고 있음.

<직업계고 인원 및 취업통계 현황>

(단위: 개교, 명, %)

학교유형 (조사년도 기준)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취업률	진학률	졸업자 대비 취업자
전 체	2024	63,005	16,588	30,216	1,716	1,059	13,426	55.3	48.0	26.3
	2023	71,591	19,526	33,621	1,940	971	15,533	55.7	47.0	27.2
	2022	76,760	22,709	34,686	1,873	942	16,550	57.8	45.2	29.5
	2021	78,994	22,583	35,529	1,809	862	18,211	55.4	45.0	28.5
	2020	89,998	24,938	38,215	1,585	970	24,290	50.7	42.5	27.7

자료: 교육부

주1: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times 100$

주2: $\text{진학률(\%)} = \frac{\text{진학자}}{\text{졸업자}} \times 100$

❑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인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할 경우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①예산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졸업자들의 12개월 의무재직 이행 현황 파악과 ②최근의 취업자 수 변동현황,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수요 등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최근 2년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세부산출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산출내역	산출내역
・취업연계 장려금: 83,616백만원 (1차 지급분) 20,400명×2백만원=40,800만원 (2차 지급분) 14,272명×3백만원=42,816만원	・취업연계 장려금: 83,616백만원 (1차 지급분) 20,400명×2백만원=40,800만원 (2차 지급분) 14,272명×3백만원=42,816만원

자료: 교육부

<최근 4년 예산 산출 근거 인원 및 실제 지원 인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직업계고 취업자 수		24,938	22,583	22,709	19,526	16,588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40,000	133,000	102,000	102,000	102,000
	결산	40,000	76,218	102,000	102,000	79,425
	예산산출 근거인원	10,000	31,000	20,400	20,400	20,400
	실제 지원인원	10,000	18,479	20,400	20,400	15,885

자료: 교육부, 2025.10. 기준

❑ 한편, 내역사업인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2026년에 180억이 편성되었음. 현장실습 세부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에 비해 지원금 지급인원이 500명 감소하였으나, 현장실습 시행일수가 2일 늘어 2025년에 비해 3억 3,000만원이 증액됨.

<최근 2년간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세부산출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산출내역	산출내역
・일당 3만원×38일×15,500명	・일당 3만원×**40일**×**15,000명**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실습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현장실습 시행일수를 38일로 산출하였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

로 현장실습 평균시행일수가 증가한 결과, 2024년 39.28일로 증가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함.

<최근 5년 현장실습 평균일수 현황>

(단위: 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장실습 평균일수	27.16	34.02	36.32	38.42	39.28

자료: 교육부

❑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의 최근 3개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집행률은 88.4%이나, 최근 2년간 집행률이 2023년 78.5%, 2024년 74.6%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A)	결산(B)	불용액	집행률(B/A)
2022년	24,000	17,907	6,092	74.6
2023년	20,528	16,118	4,409	78.5
2024년	18,000	15,906	2,093	88.4
2025년 10월	17,670	-	-	-

자료 : 교육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현장실습 인원 감소가 발생하였으나, 우수 산업체 참여 확대 등 현장실습 제도를 체계적

으로 지원함에 따라 학생 수 대비 현장실습 참여율이 19%에서 21%로 2%p증가하였고,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을 반영하는 등 현장실습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최근 5개년 현장실습 인원을 살펴보면, 2024년 13,499명으로 2020년에 비해 4,673명이 감소하는 등 비록 현장실습 평균일수는 2020년에 비하여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현장실습 인원은 감소하였음.

<최근 5개년 현장실습 인원 현황>

(단위: 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장실습 인원	18,172	20,295	16,433	13,983	13,499

자료: 교육부

❑ 직업계고 졸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들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취업률은 2021년 이후 꾸준히 55%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이는 진학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졸업자 수 대비 진학자 비율(진학률)은 2020년 42.5%인 것에 비하여 2024년 48%까지 증가하여 취업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신청하는 현장실습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짐.

❑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의 집행률이 최근 3년 동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현장실습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가 되는 현장실습 인원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교육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의사, 직업계고 취업 및 진학 현황 등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3)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8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 대상이 10구간 이하 학생들로 확대(대학: 9구간 이하 → 10구간 이하, 대학원: 6구간 이하 → 10구간 이하)되고, 이자 면제 대상이 1~6구간 이하의 의무상환개시 전 대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대출 회수율 관리 및 대출 교육 강화 등과 같은 사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출연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한국장학재단 고유사업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 이차보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추가지원",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고유사업비", "재단운영비" 등 총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87) 문의: 02-6788-5193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31억 3,800만원(3.2%)이 증액된 4,21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한국장학재단 출연	367,382	407,913	421,051	13,138	3.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201,812	224,733	227,267	2,534	1.1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이차보전	32,835	46,500	51,451	4,951	10.7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추가지원	11,839	11,254	11,777	523	4.7
○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27,489	27,315	28,532	1,217	4.5
○ 고유사업비	42,118	41,854	43,993	2,139	5.1
○ 재단운영비	51,289	56,257	58,031	1,774	3.2

자료 :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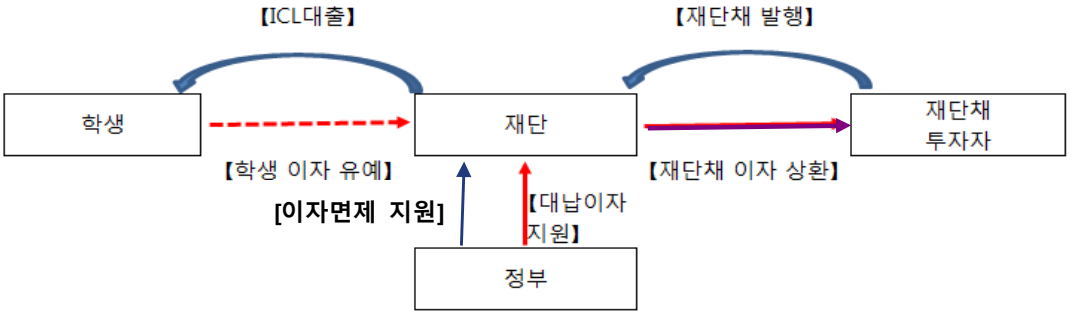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 “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 사업 중 내역사업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자” 사업의 2026년 예산은 2025년에 비하여 25억 3,400만원 증액된 2,27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자” 는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이라 함)을 위한 채권 발행의 이자 지급액인 채권대납이자 예산과 ②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자(학생)의 면제된 이자 지급분을 충당하는 이자면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자금 대출 재원 확보를 위한 채권발행 이자>



채권조달		ICL		일반상환	
채권발행		채권만기 시 상환(학생 원금 상환액)			
채권이자 3.0% (예시)	금리 차 1.3%	대납이자 예산 지원		이차보전 예산으로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1.7% (‘25년기준)	대납이자 예산지원	이자면제 예산	학생 이자 상환액으로 납부	군이자면제 예산으로 지원
		(이자면제 대상 아닌 경우)	(이자면제 대상인 경우)	(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자면제 대상인 경우)

❑ 동 사업의 예산 증액분은 2026년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①학자금 대출의 대상 확대와 ②이자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을 반영함.

❑ 현행 ICL 사업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제1항[88]에서 자격요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서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대상을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생활비 대출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학부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대학의 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속대학(교)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공통)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요건 - **등록금대출**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인 자 - **생활비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자. 단, 학자금지원 9구간인 경우, 긴급생계곤란자*는 신청 가능 * ① 부·모의 사망 , ② 부·모의 파산, ③ 부·모의 개인회생, ④ 부·모의 실직, ⑤ 부·모의 폐업, ⑥ 본인의 파산, ⑦ 본인의 개인회생, ⑧ 본인의 폐업, ⑨ 본인이 청소년복지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증빙서류 등 상세 요건은 기타 참조) ※ (공통)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소득요건 적용 제외
	대학원	▪ 대학원 및 전문대학교의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8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정하여 고시한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 2026년 예산안에는 ①학부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 적용 대상을 10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②대학원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대출 대상을 4구간 이하에서 10구간 이하로 , 생활비 대출 대상을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대출을 위한 채권 발행 이자지급분을 증액 편성함.

이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제도개선(안)>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25-2학기	'26-1학기~	~'25-2학기	'26-1학기~
등록금대출 (전면확대)	9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1구간)	4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6구간)
생활비대출 (선별개선)	8구간 이하	8구간 이하 (유지)	4구간 이하	6구간 이하 (+2구간)

자료: 교육부

❑ 또한, 2026년 예산안 편성시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시행 예정[89]」인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면제 내용을 반영하고, 계류 중[90]인 법률안 중 이자면제대상을 현행 졸업

8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405
9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83

후 2년 기간이내인 기준 중위소득 이하(5구간 이하)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이하(6구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함. 즉, 2026년 예산안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면제분, 1~6구간 채무자들의 이자면제 기간 확대에 따른 평균 1년 이자면제분[91]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2026년 이자면제 대상 확대 계획(안)>

이자면제대상 (도입시기)	이자면제 기간	
	~2025년	2026년~
군복무자 ('13~)	군 복무기간	(좌동)
기초·차상위·다자녀 ('22~)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좌동)
1~5구간 ('24.7~)	졸업 후 2년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6구간 ('26~)	이자지원 대상 아님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자 ('24.7~)	상환유예기간	(좌동)
자립준비청년 ('26~)	이자지원 대상 아님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자료: 교육부

❑ 이러한 지원대상의 확대는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 및 학자금 부담 완화 등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사업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음.

91) 현재 의무상환 중인 채무자들의 졸업 후 의무상환개시 도달 기간은 평균 3년으로 졸업 후 2년 범위 제한 삭제 시 약 1년 이자면제 기간 연장 효과가 있음.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이외의 등록금, 즉 실제 등록금과 지급받은 국가장학금의 차액에 대하여 학자금 대출을 지급 받고 있음. 따라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 따라 10구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ICL을 희망하는 10구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대출 수요가 타 구간에 비하여 많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도 대상이 10구간 이하로 6구간 확대됨에 따라 신규 대출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구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장학금	Ⅰ유형		전액	600만원			440만원			360만원		100만원	-
	다자녀	첫째, 둘째		610만원			505만원			465만원		135만원	-
		셋째 이상		전액								200만원	-

자료: 교육부

❑ 그런데, 최근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현황을 보면 ICL 손실액이 2023년 110억 3,200만원이며, 이는 2022년 손실액 대비 2억 200만원 감소한 수치이긴 하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신규대출 확대로 인해 손실 보전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규대출에 대한 대출 회수율 관리 등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금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년 ('18년 손실액)	'21년 ('19년 손실액)	'22년 ('20년 손실액)	'23년 ('21년 손실액)	'24년 ('22년 손실액)	'25년 ('23년 손실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A)	금액	2,980	4,398	6,545	8,561	16,254	16,283
	인원	449	705	1,137	1,505	2,696	3,042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B)	금액	1,750	751	1,684	3,301	11,235	11,032
	인원	230	150	413	713	2,082	2,038
합계 (A+B)	금액	4,730	5,149	8,229	11,862	27,489	27,315
	인원	679	855	1,550	2,218	4,778	5,080

주)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전전년도(Y-2년)에 확정된 상각 실적을 예산으로 편성 중
자료: 한국장학재단

❑ 따라서,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자 증가로 인한 대출 회수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채권 회수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10구간 대상자 또는 5~10구간 대학원생과 같은 신규대출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제도에 대한 안내교육, 대출금 상환 채납 시 강제 징수 등 절차 안내와 같은 상환교육 강화하는 등 신규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자 면제와 관련하여 신규 이자 면제 대상(자립준비청년 등)의 자격 요건 검증 및 자격 종료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같은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7. 의대교육지원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92]

○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계획한 내용과 달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예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은 '26년 타당성재조사 수행 여부를 검토중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26년 편성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며, 동 사업의 예산이 46억(2021~2025년) 교부되어 사장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사업은 국립대병원 신축, 개·보수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의학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44억 8,100만원(20.9%)이 증액된 1,41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92) 문의: 02-6788-5188

< 2026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병원 지원	107,960	117,057	141,538	24,481	20.9
○ 시설확충 및 보수	56,133	74,566	100,773	23,207	35.1
○ 장비구입 및 교체	29,884	15,503	17,129	1,626	10.5
○ 정책사업	21,943	26,988	23,636	△3,352	△12.4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미반영 문제

❑ 동 사업은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금을 교부하고,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보조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임.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증가해 왔으나, 국립대학병원들이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률은 최저 52.0%에서 최대 77.8%임.

< 최근 4년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	65,260	66,343	66,343	11,264	77,607	50,767	26,452	388	77.8
2023	78,833	62,296	62,296	26,452	88,748	40,976	46,887	885	52.0
2024	111,369	107,960	107,960	46,887	154,847	76,845	77,670	332	69.0
2025.10월	117,057	48,169	48,169	77,670	125,839	36,557	-	4,107	31.2

자료 : 교육부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5년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5억 6,800만원이 감액된 994억 9,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하였음.[93)]

그런데, 정부안으로 제출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정책사업으로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 사업(126억원)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전년도에 대비 244억 8,100만원이 증액된 1,415억 3,800만원으로 편성됨.

❑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교육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심각하게 악화된 국립대병원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재부의 재정자율평가지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목표 달성시, 사업별 특성을

93) 교육부, 「2024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5.5.

고려하여 감액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임.

❑ 그러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스스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제도적 장치임. 특히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업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취지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예산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

❑ 동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컨대, 2025년 시작 사업인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건립, 제주대병원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건립, 충북대병원 임상연구동 환경개선 등의 경우 관련 지침 개정,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환경개선 검토 등의 사유로 2025년 10월말 현재 편성 예산이 전혀 집행

되지 않고 있어 2026년 동 사업들의 집행이 불투명함에도 동 사업들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였음.

<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10월말 기준					2026
	교육부		병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건립	**500**	**-**	**-**	**500**	**-**	**727**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25,430	-	13,020	38,450	4,204	45,967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	875	875	61	936	490	2,824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디지털항암센터 건립	2,030	-	665	2,695	593	4,200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3,100	-	1,496	4,596	-	2,000
제주대병원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건립	**500**	**-**	**-**	**500**	**-**	**816**
충남대병원 임상연구 교육실습동 건립	500	500	-	500	87	1,700
충북대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500	-	-	500	-	100
충북대병원 임상연구동 환경개선	**375**	**-**	**-**	**375**	**-**	**3,714**
경북대치과병원 장애인 편의 및 노후안전시설 개선	1,177	1,177	-	1,177	487	512
서울대치과병원 연구동 리모델링	1,493	1,493	-	1,493	-	4,095
칠곡경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5,080	5,080	2,491	7,571	1,343	5,036
충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1,000	-	500	1,500	320	1,000
강원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500	-	-	500	-	500
경상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500	-	-	500	-	500
합계	43,560	9,125	18,233	61,793	7,524	73,691

자료 : 교육부

< 2025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미집행 사유 >

경북대병원 생명의학연구원 건립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 개정으로 전기실을 최하층에 둘 수 없게 변경됨에 따라 변경안에 대해 기재부 사전 협의 중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기본·중간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로 사업 지연,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어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여부 검토 중

제주대병원 임상교육실습동 및 의생명연구원 건립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위한 기획용역 준비 중
충북대병원 미래혁신교육센터 건립	건물평면 내부검토 후 공공건축심의로 지연,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조달청 설계용역 계약 지원, '26년 1분기 설계비 선금 집행예정
충북대병원 임상연구동 환경개선	환경개선 관련 내부검토 장기화로 추진 지연, '26년 1분기 설계비 선금 집행예정
서울대치과병원 연구동 리모델링	'25.6~10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진행으로 집행지연, 11월 중 설계용역 선금 집행예정
강원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계획 수립(25. 5.)후 예상 공사비 과다 산출되어 어린이 병원 증축 방안으로 계획 변경(25. 8.), 총사업비 심의 후(25.9.), 건축기획용역 입찰 진행 중으로 '26년 초 기획용역 선금 집행예정
경상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물 신축에 따른 이전 부지 활용으로 계획 변경(25. 4.), 한국방통대 부지 이전(~25.11.) 후 건립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 예정

자료 : 교육부

❑ 특히,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중간설계 및 조달청 적정성 검토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어 타당성 재조사 여부를 검토(기획재정부)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현재 병원의 입장으로, 2026년 편성된 예산 20억원의 불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2025. 8.) 제주대병원에서 예산의 미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이 사업의 예산집행 경과를 보면, 2021년(6억 100만원)과 2022년(8억 9,500만원) 편성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5년 예산 31억원 또한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처럼 2021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약 46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교부이후 해당 병원에서 집행 보류됨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예산 편성시 자체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사업의 26년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한편,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130억 2,000만원)을 포함한 2025년 예산현액은 384억 5,000만원인데, 2025년 10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42억 400만원(10.9%) 수준임.[94]

2025년 실시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사유,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2026년 배곧서울대병원 건립 기존계획(459억 6,700만원) 대비 60.3%(275억 6,800만원)를 삭감한 183억 9,9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계획과 달리 2026년 예산을 편성함.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이후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집행계획을 확인하여 향후 집행가능성[95]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액대로 편성하였다는 의견임.

---

94) 2022년 시작된 동 사업은 같은 해 79억 9,200만원의 예산을 병원에 교부(79억 9,200만원)하여 실제 30억원이 집행되었지만, 시설공사 유찰 등의 사유로 2023년(52억 1,500만원)과 2024년(28억 4,300만원)에는 편성된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았음

95) 교육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우선시공분공사 착공('25. 8.), 본공사 착공('26. 1.), 우선시공분 기성금 지급('26. 2., 70억원), 본공사 선금 지급('26.3., 1,258억원) 등 일정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과 동일한 예산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제주대병원의 사례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국고 예산의 선 교부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집행점검을 통해 예산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책임교육정책관

<일반회계>

1)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96]

○ 교육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설비, 비품비 또는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되던 것을 통합한 것이며, 방과후학교 운영비, 초등 늘봄교실 리모델링,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등 총 25개[97]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7억 9,400만원(1.4%)이 증액된 582

96) 문의: 02-6788-5186
97) 2025회계연도에는 국립부설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6회계연도에는 미편성되었고, 2026회계연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립부설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원이 포함됨.

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24개의 계속사업과 1개의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으로 276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 규모 또한 가장 큰 사업으로 2025년에 비해 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로 국립부설학교 독서·인문교육 지원 사업에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5,968	57,435	57,435	58,229	794	1.4
·방과후학교 운영비	2,744	3,708	3,708	4,242	534	14.4
·초등늘봄교실 리모델링	42	41	41	41	0	0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1,337	1,299	1,299	1,299	0	0
·유아교육 지원	1,239	1,213	1,213	1,331	118	9.7
·깨끗한학교 만들기	1,888	1,862	1,862	1,540	△322	△17.3
·교과교실제운영	1,200	1,166	1,166	1,166	0	0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2,066	1,860	1,860	1,860	0	0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7,161	26,819	26,819	27,664	845	3.2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202	196	196	196	0	0
·학교 Wee 클래스 상담지원	1,277	1,277	1,277	1,319	42	3.3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767	745	745	745	0	0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738	717	717	717	0	0
·학교 안전강화	310	301	301	100	△201	△66.8
·교육복지우선지원	200	194	194	194	0	0
·중학교 자유 학기제 지원	258	251	251	251	0	0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4,879	5,026	5,026	5,202	176	3.5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95	92	92	92	0	0
·교원연구비 지급	1,314	1,291	1,291	1,291	0	0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1,824	1,865	1,865	1,865	0	0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2,270	3,947	3,947	2,568	△1,379	△34.9
·상설연구학교 역량강화 지원	324	315	315	315	0	0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지원	400	300	300	300	0	0
·산업재해 예방	450	441	441	441	0	0
·과학·수학·융합 교과 교실지원	2,582	2,509	2,509	2,509	0	0
·국립부설학교 독서·인문 교육 지원	-	-	-	980	980	순증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교육부) 참조

나) 검토의견 :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98]은 학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8억 4,500만원(3.2%)이 증액된 27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립부설학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58,229	794	1.4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6,819	27,664	845	3.2
- 확충사업	16,992	14,134	△2,858	△16.8
·(경상국립대 부설고) 급식소 및 체육관 신축	83	-	△83	순감
·(한국경진학교) 교사동 증축	4,498	-	△4,498	순감
·(제주대 부설고) 학교증설 교실 신축	5,075	-	△5,075	순감
·(한국우진학교) 별관교사동 및 주차장 신축	5,314	4,702	△612	△11.5

98)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인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전북대 부설고) 본관 개축	1,357	8,000	6,643	489.5
·(진주교대) 부설초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665	1,000	335	50.4
·(충북대) 부설고 스포츠문화관 신축	-	255	255	순증
·(한국교원대) 부설고 여자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	177	177	순증

자료 : 교육부 제공

❑ 동 내역사업은 부족한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여건을 제고하는 '확충사업', 노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보수비를 지원하여 건물 수명 연장 등을 지원하는 '보수사업'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시설 개선, 탄소중립 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 캠퍼스 구축,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의무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확충사업은 국립부설학교 시설에 대한 신·증축 및 노후된 건물을 개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28억 5,800만원(16.8%)이 감액된 14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확충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5개의 국립부설학교에서 시설확충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한국우진학교와 전북대 부설고 및 진주교대 부설초의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계속사

업으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고, 충북대 부설고와 한국교원대 부설고의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를 편성하였음[99].

< 2026년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계획 >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6년 예산 현황		'26년 추진계획
				구분	예산	
합계						
한국 우진학교	별관교사동 및 주차장 신축	21-26	14,861	계	4,702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비	4,466	
				감리비	235	
				시설부대비	1	
전북대 부설고	본관 개축	22-27	23,039	계	8,000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비	5,980	
				감리비	2,000	
				시설부대비	20	
진주교대 부설초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25-28	17,305	계	1,000	실시설계 및 공사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공사비	840	
				감리비	150	
				시설부대비	10	
충북대 부설고	스포츠문화관 신축	26-29	10,628	계	255	기본설계
				기본조사설계비	255	
				실시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99)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교육부)에 제출된 예산안 산출내역은 국립부설학교 42개교 전체를 기준으로 단가와 대상학교가 작성되어 있음.

한국교원대 부설고	여자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26-28	4,230	계	177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비	88	
				실시설계비	89	
				공사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자료 : 교육부

❑ 계속사업 중 한국우진학교와 전북대 부설고의 시설확충 사업은 각각 별관교사동 및 주차장 신축 사업과 본관 개축 사업으로, 한국우진학교의 경우 20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전북대 부설고의 경우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진주교대 부설초의 시설확충 사업은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음.

❑ 한편, 한국우진학교와 전북대 부설고의 시설확충 사업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예산의 이월 및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진주교대 부설초 사업의 경우도 2025년도의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부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우진학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집행률이 20%보다 낮게 나타났고[100], 2021년도, 2023년도, 2024년도의 경우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101].

2025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집행률이 23.7%로 나타났는데, 2024년

100) (교육부 제공) 2021년도와 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이 2%로 나타났음.
101) 2022년도의 경우 예산 불용액이 26억 9,800만원임.

도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해체감리자 지정기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진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북대 부설고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집행률이 40%보다 낮게 나타났고[102], 동일한 기간 모두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5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집행률이 31.9%로 나타났는데,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설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2025년 4월에서야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집행률 및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한국우진학교 (별관교사동 및 주차장 신축)					전북대 부설고 (본관 개축)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이월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이월
2021	352	352	7	2%	344	-	-	-	-	-
2022	2,658	3,002	304	10%	-	952	952	366	38%	562
2023	2,284	2,284	53	2%	2,228	1,500	2,062	568	28%	1,486
2024	3,575	5,803	1,103	19%	3,379	5,643	7,129	1,328	19%	3,092

자료 : 교육부 제출 자료 편집

102) (교육부 제공) 2025년도의 경우 8월말 기준 집행률이 3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25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진주교대 부설초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6억 6,5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8월말 현재 조달청 설계공모 공고를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서류 보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는 설계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안으로 한국우진학교와 전북대 부설고 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공사비를 편성하였고, 진주교대 부설초 사업의 경우 공사비를 편성하였음.

❑ 연례적인 낮은 집행률과 예산의 이월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연부율 및 사업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연도별 투자계획과 편성된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우진학교와 전북대 부설고 사업이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과 예산의 이월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예산안 편성시 연부율 외 사업의 진척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학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한국우진학교 (별관교사동 및 주차장 신축)	14,861 ('21~'26)	설계비	348 (85.3%)	4 (1.0%)	56 (13.7%)						408 (100%)
		공사비 등 (비율)	4 (0%)	2,654 (14.4%)	2,228 (12.1%)	3,575 (19.3%)	5,314 (28.8%)	4,702 (25.4%)			18,477 (100%)
		예산(안)	352	2,658	2,284	3,575	5,314	4,702			18,885
전북대부설고 (본관 개축)	23,039 ('22~'27)	설계비		952 (100%)							952 (100%)
		공사비 등 (비율)			1,500 (6.8%)	5,643 (25.5%)	1,357 (6.2%)	8,000 (36.2%)	5,587 (25.3%)		22,087 (100%)
		예산(안)		952	1,500	5,643	1,357	8,000			17,452
진주교대부설초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17,305 ('25~'28)	설계비					665 (100%)				665 (100%)
		공사비 등 (비율)						1,000 (6%)	7,820 (47%)	7,820 (47%)	16,640 (100%)
		예산(안)					665	1,000			1,665

자료 : 교육부 제공 자료 편집

❑ 또한, 동 지침에서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시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103], 교육부는 설계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편성하거나,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를 편성하였음.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공사비는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적

103)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128p

정 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104)]

❑ 따라서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 및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사업추진 단계별로 산업 진척도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04)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82p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105]

○ 동북아역사재단은 자체수입 과소계상으로 예산과 결산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지차보전기관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체수입 산정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함.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2447-301)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출연하여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현안 분석, 조사·연구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자체수입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동북아 역사·영토교육사업 등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05) 문의: 02-6788-5184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600만원(△0.1%)이 감액된 160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5,672	16,045	16,029	△16	△0.1
○ 사업비	5,443	6,607	5,895	△712	△10.8
-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658	556	606	50	9.0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1,336	1,228	1,533	305	24.8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458	275	485	210	76.4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324	252	288	36	14.3
-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 사업	900	1,672	949	△723	△43.2
- 교류 및 홍보 사업	625	375	530	155	41.3
-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	494	1,494	770	△724	△48.5
- 연구관리 및 지원	123	123	163	40	32.5
-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525	632	581	△51	△8.1
○ 인건비	8,203	8,480	8,777	297	3.5
○ 경상비	2,940	2,977	3,062	85	2.9
○ 자체수입	△944	△2,019	△1,705	314	15.6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자체수입 산정방식의 체계화 필요

❑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서, 매년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으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수입예산으로 편성함.

❑ 이러한 수지차 보전방식은 기관에 대한 출연금의 규모가 기관의 자체수입과 결산잉여금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지출예산 및 자체수입의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자체수입이 과소 계상되거나 지출이 과다 계상되는 경우 예산 절감의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고, 기관의 자체수입이 과다 계상 또는 지출이 과소 계상되는 경우 실제 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관의 안정적 사업 수행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재단의 예산 추계가 실제와 괴리되지 않도록 자체수입 산정방식의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재단의 예산 구조는 지출예산의 경우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로 구분되고, 수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과 이월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됨. 자체

수입은 이자수입과 잡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이월결산잉여금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지출예산 중 미집행분을 반영한 금액임.

❑ 재단의 이자수입은 2022년 이후 매년 결산액이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결산액이 예산액의 약 12.7배, 2024년에는 약 9.2배에 달하는 등 큰 폭의 괴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자체수입 전체에서도 예산액과 결산액간 차이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체수입의 과소 계상은 예산의 절감이라는 수지차보전기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재단의 수입 예산·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수입	1. 자체수입	142	336	142	432	219	453	309
	- 사업수입	-	-	-	-	-	-	-
	- 사업외수입	142	336	142	432	219	453	309
	(잡수입)	119	278	119	139	188	168	186
	(이자수입)	**23**	**58**	**23**	**293**	**31**	**285**	**123**
	2. 이월결산잉여금	802	759	802	1,040	725	725	1,710
	- 전기이월금	802	759	802	1,040	725	725	999
	- 전전기이월금	-	-	-	-	-	-	711
	3. 출연금	16,937	16,937	17,626	17,626	15,672	15,672	16,045
	4. 이월사업비(전기사고이월)	-	392	-	270	-	151	-
총 계		17,881	18,424	18,570	19,368	16,616	17,001	18,064

자료: 교육부

❑ 재단은 그동안 자체수입 산정 시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을 근거로 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2024년도 결산액(4억 5,300만 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예산과 결산 간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단일연도의 결산 수치를 단순 적용한 것은 이자수입의 변동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 지적됨.

< 최근 3년간 재단의 수입예산액 세부 산출 근거 >

(단위: 백만원)

연도	내역	예산액	예산액 산출근거(최근 3년간 평균 예·결산액 등)
'24년	**잡수입**	**188**	**145('20년) + 140('21년) + 278백만원('22년)/ 3**
	이자수입	**31**	**18('20년) + 17('21년) + 58백만원('22년)/ 3**
	결산잉여금	725	377('20년) + 759('21년) + 1,040백만원('22년)/ 3 * (누락) '22년도 지출결산 차차기이월금 238백만원
	계	944	
'25년	**잡수입**	**186**	**140('21년) + 278('22년) + 139백만원('23년)/ 3**
	이자수입	**123**	**17('21년) + 58('22년) + 293백만원('23년)/ 3**
	결산잉여금	1,710	759('21년) + 1,040('22년) + 1,198백만원('23년)/ 3 + 711** * '23년도 지출결산 차차기이월금 473백만원 + (누락분) '22년도 지출결산 차차기이월금 238백만원
	계	2,019	
'26년 (정부안)	**잡수입**	**453**	**'24년도 수입 결산액 반영**
	이자수입		
	결산잉여금	1,252	1,040('22년) + 1,198('23년) + 1,129백만원('24년)/ 3 + 130** * '24년도 지출결산 차차기이월금 130백만원
	계	1,705	

자료: 교육부

❑ 2024년도 결산 기준 전체 이자수입 2억 8,500만 원 중 약 52%인 1억 4,800만 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에 따른 것으로, 재단의 이자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추이는 신규채용과 정년퇴직 인원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2006년 설립 이후 약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정년퇴직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재단이 정년퇴직 예정 인원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퇴직급여충당금 변동 규모는 일정 수준 예측 가능함.

< 2024회계연도 재단 이자수입 구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치금액	이자수입 (구성비)	비고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4,437	148 (51.9%)	
출연금 운용금액	37,847	96 (33.7%)	이자수입 발생 누적 운용금액
기타	2,501	41 (14.4%)	출판, 기타수입금, 사고이월금 등
합계	44,785	285	

자료: 교육부

< 연도별・직군별 예상 정년퇴직 인원 >

(단위: 명)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구직	2	1	3	2	5
행정직	2		1	3	2
무기계약직		1		1	

자료: 교육부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 역시 자체수입 검토 시 최근 3~5개년 결산실적 추이 또는 금액을 고려하고, 내역의 신설·폐지와 같은 특이 소요도 함께 반영할 것을 요구함.

<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내 자체수입 검토요령 >

◇ 수입 항목 별 최근 3년간('22~'24) 또는 5년간('20~'24) 수입 결산실적 추이 또는 금액을 고려하여 검토(연평균 증가율 등)
* 예시) ① 매년 수입결산액이 불규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최근 3~5년간 결산평균금액**을 **반영**하여 추계
② 매년 수입결산액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
→ **최근 3~5년간 연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추계

※ 특이소요(수입 항목 중 내역 일부 폐지·신설 등)도 체크 필요

자료: 교육부

❑ 따라서 재단은 수지차보전기관의 본래 취지인 예산의 합리화와 정부출연금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추세, 퇴직급여충당금 운용 규모 등 구체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음.

9.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일반회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106]

○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정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교부금이 감액되는 경우 지방 교육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은 교육세분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이는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6년도의 경우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비한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방교육사업의 수행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시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의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제1조),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107]로 구성됨(제3조)[108].

106) 문의: 02-6788-5185
107) 교육세입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1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제3조제1항), 이 중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되나(제5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제5조의3 신설, ’23. 12. 31.)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에 해당하는 재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됨[109][110].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1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

<table>
<tr><th colspan="2">종류와 재원</th><th colspan="2">교부 기준</th></tr>
<tr><td colspan="2">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td><td colspan="2">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td></tr>
<tr><td rowspan="3">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td><td>국가시책
(60%)</td><td>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td><td>·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되, 필요시 교부시기 조정 가능</td></tr>
<tr><td>지역현안
(30%)</td><td>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td><td rowspan="2">·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수시)</td></tr>
<tr><td>재난안전관리
(10%)</td><td>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td></tr>
</table>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10) 해당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8%로 상향했던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2026년부터 3%로 회복)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2025.2.20.)되어 전체회의 계류 중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시적 교부 기준>

종류		교부기준	한시적(2024~2026)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내국세의 20.79% 중 96.2% + 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내국세의 20.79% 중 3.8%**
	국가시책	3%의 60%	3%의 60% (180/380≒47.4%)
	지역현안수요	3%의 30%	3%의 30% (90/380≒23.7%)
	재난안전관리	3%의 10%	3%의 10% (30/380≒7.9%)
	디지털교육혁신	**<신설>**	**0.8%의 100% (80/380≒21.0%)**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17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전출금 제외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71조 6,741억 8,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72조 2,794억 3,800만원 대비 6,052억 5,800만원(△0.8%) 감액되었음.

<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본예산(A)	2025년 예산현액 (추경반영)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620,773	72,279,438	70,281,203	71,674,180	△605,258	△0.8
◦ 보통교부금	62,224,931	69,659,572	67,732,259	69,010,114	△649,458	△0.9
◦ 특별교부금	2,395,842	2,619,866	2,548,944	2,664,066	44,200	1.7
국가시책	1,135,058	1,067,409	1,033,814	1,261,926	194,517	18.2
지역현안	567,529	743,713	726,916	630,963	△112,750	△15.2
재난안전관리	189,177	247,905	242,306	210,321	△37,584	△15.2
디지털	504,078	560,839	545,908	560,856	17	-

(자료: 교육부)

❑ 구체적으로 보통교부금은 69조 10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9조 6,595억 7,200만원 대비 6,494억 5,800만원(△0.9%)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2조 6,640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6,198억 6,600만원 대비 442억원(1.7%) 증액되었음.

❑ 특별교부금별로는 국가시책 1조 2,619억 2,600만원, 지역현안 6,309억 6,300만원, 재난안전관리 2,103억 2,100만원, 디지털 5,608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945억 1,700만원이 증액(18.2%)된 반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각각 1,127억 5,000만원, 375억 8,400만원이 감액(△15.2%)되었고, 디지털 특별교부금은 1,700만원 증액 되었음.

이와 같이 특별교부금별 증감액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2023년도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예산액 전액을 교부한 반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일부 미교부하였는데[111]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2023년도 정산분 반영 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정산분이 다른 특별교부금보다 크게 감정산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다른 특별교부금에 비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111)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시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5.5)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4.30)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준수 필요	[지적사항]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세수감소 대응책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불용조치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확정금액을 그대로 교부하고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은 감액하여 교부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준수할 것	시정	'24년 특별교부금은 세수결손분을 반영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분비율 준수	조치완료

나) 검토의견

(1) 세수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 대응 필요

❑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112]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서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59조)[113]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14]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음.

< 2025년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본예산 현황 >

구분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 수입	자체 수입	내부 거래	기타	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교부금*	국고 보조금	특별회계 전입금**					
금액(억원)	690,058	63	4,561	31,020	148,198	6,524	50,890	9,369	940,619
비중(%)	73.4%	0.0%	0.5%	3.3%	15.8%	0.7%	5.4%	1.0%	100.0%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

(자료: 교육부)

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113)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와 연동하여 그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당초 세수 추계에 따른 예산액과 실제 수납된 징수액 간 오차로 인한 변동성이 발생할 밖에 없는 구조로,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교부금 규모의 조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이 이루어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5]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제2항), 예결산상 차액(세계잉여금[116])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제3항).

-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예산액(추계액) 대비

115)「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16)「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지방교부세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징수액이 많을 경우 초과분을 다음연도 중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반영하고, 예산(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적을 경우 부족분을 다음다음 연도 교부금 본예산 편성시에 감정산하여 반영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교부금 추이를 살펴보면, 내국세 및 교육세 증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년도 증(+) 정산분 반영, 불용 등에 따라 연도 중 본예산 대비 변경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교부금 추이 및 변경(정산) 규모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본예산(A)	추가교부(변경) (B)			합계(A+B) (예산현액)	본예산 대비 변경액 (B/A)
		당해연도 추가경정 (순증감)	전년도 정산금	불용		
2016	41,228,353	1,933,149	-	-	43,161,502	4.7%
2017	42,931,736	1,786,761	1,872,494	-	46,590,991	8.5%
2018	49,540,693	-	2,912,093	-	52,452,786	5.9%
2019	55,248,823	-	5,281,687	-	60,530,510	9.6%
2020	55,372,241	△1,861,069	31,897	-	53,543,069	△3.3%
2021	53,230,001	6,365,795	741,258	-	60,337,054	13.4%
2022	65,059,537	10,985,419	5,252,633	-	81,297,589	25.0%
2023	75,760,666	-	-	△10,397,000	65,363,666	△13.7%
2024	68,873,209		36,439	△4,252,436	64,657,212	△6.1%
2025	72,279,438	△1,998,235			70,281,203	△2.8%

(자료 : 교육부)

또한, 전전년도 감(-) 정산분이 있는 경우 본 예산에 반영되어 편성되는 바 2026년 예산안에는 2024년도 감(-) 정산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구 분	산출 내역 (2024년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1,389,047백만원 반영)
보통 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69,010,114백만원 가. 내국세분 교부금 (67,975,226백만원) · 내국세 × 20.79% × 96.2%=68,594,958 · **2024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619,732백만원** 나. 교육세분 교부금 (1,034,888백만원) · 교육세 6,443,294백만원 - 유특회계2,638,044백만원, 고특회계2,046,554백만원 = 1,758,696백만원 · **2024년 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723,808백만원**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1,261,926백만원 · 내국세×20.79%×3.8%×(180/380))=1,283,482백만원 · **2024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21,556백만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630,963백만원 · 내국세×20.79%×3.8%×(90/380))=641,741백만원 · **2024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10,778백만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210,321백만원 · 내국세×20.79%×3.8%×(30/380))=213,914백만원 · **2024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3,593백만원**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560,856백만원 · 내국세×20.79%×3.8%×(80/380))=570,436백만원 · **2024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9,580백만원**

(자료 : 교육부)

❑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최근 4년 연속(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연도 중 추가경정 또는 불용, 본예산 편성 시 감(-) 조정분 반영 등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당초 교부금 산정액 대비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3년 연속(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추계 오차[117]로 내국세

입 및 교육세입이 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교부금 10.4조원, 4.3조원을 연도 중 각각 불용 처리하였고, 2025년도에는 교부금 2조원을 추가경정으로 감액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2024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감(-) 정산분 1.4조 원이 반영되었음.

❑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정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교부금이 감액되는 경우 지방 교육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인건비	전출금	이전지출	물건비	자본지출	상환지출	예비비·기타	내부거래	계
금액(억원)	565,228	174,070	37,131	39,826	119,622	0	4,239	505	940,619
비중(%)	60.1	18.5	3.9	4.2	12.7	0	0.5	0.1	100.0

(자료: 교육부) ※ 적색 테두리는 고정지출

117) < 세수추계 오차 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내국세	본예산(최초편성)	239.6	296.1	358.0	321.6	338.1
	실제수납액(결산액)	296.4	352.3	306.1	298.3	327.4*
	차이	56.8 (23.7%)	56.2 (19.0%)	**△51.9 (△14.5%)**	**△23.3 (△7.2%)**	**△10.7 (△3.2%)**
교육세	본예산(최초편성)	5.3	5.3	4.7	6.2	6.0
	실제수납액(결산액)	5.1	4.6	5.2	5.4	5.8*
	차이	△0.2 (△3.8%)	△0.7 (△13.2%)	**0.4 (9.6%)**	**△0.8 (△12.8%)**	**△0.2 (△3.3%)**

* 2025년은 실제수납액(결산액)이 아닌 기획재정부 2025년 세수 재추계(9.25.) 결과 예상세입액
(자료 : 교육부)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경우 시·도교육청은 보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118]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19])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교부금 감액에 대응한 바 있음. 2025년도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대응 계획에 따르면 기금보유액 및 예비비 활용, 지출 구조조정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며, 2026년도 예산안도 세수결손에 따른 감(-) 정산분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교부금이 감액 편성되었는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방향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교부금 감액	기타(지자체 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 전출금	지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시설비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2023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5,000	△3,000	△6,743
2024	△44,567	5,707	6,843	888	△8,107	△10,679	△4,152	△3,342	△4,850
2025	△19,273	1,626	3,165	-	△3,067	△4,392	△2,309	△2,365	△1,614

※ 2023~2024년은 기재부 재추계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서 증감액 기준

※ 2025년은 세입경정으로 인한 감추경 이후 시도교육청 대응 계획(8월 기준 조사)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최종 결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교육부)

118)「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19)「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그런데 시·도교육청별로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어 대응 여력이 부족한 교육청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도교육청의 주요 가용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도조례로 사용요건과 연내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어(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의 50~90%)[120] 시·도교육청별로 적립금 활용 여건에 차이가 있고, 기금보유액 규모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여 기금보유액만으로 해당 연도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 2025년 추경감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및 기금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보통교부금 본예산 확정 교부액*	보통교부금 추가경정 감액	참고. 2025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계	**696,596**	**△19,273**	**35,362**	**30,130**
서울	62,413	△1,727	3,828	8,672

120)「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 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시·도교육청별 재정안정화계정 사용한도(2025.7.11. 현재)>
※ 사용한도: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0%	50%	70%	70%	80%	85%	70%	70%	70%	70%	50%	90%	70%	80%	70%	80%	50%

(자료: 교육부)

구분	보통교부금 본예산 확정 교부액*	보통교부금 추가경정 감액	참고. 2025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부산	38,439	△1,064	4,281	3,874
대구	31,161	△862	1,981	2,464
인천	38,665	△1,070	1,418	128
광주	20,848	△577	1,293	154
대전	20,941	△579	1,224	254
울산	17,258	△477	214	692
세종	9,060	△251	1,125	273
경기	170,521	△4,718	3,620	532
강원	31,333	△867	4,996	5,740
충북	28,196	△780	2,763	571
충남	39,699	△1,098	814	32
전북	36,144	△1,000	2,565	1,525
전남	39,243	△1,086	990	648
경북	46,598	△1,289	2,954	3,301
경남	55,139	△1,526	1,273	1,019
제주	10,937	△303	22	250

*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사업 부서 및 교육청 신청 등으로 조정되어 연도말 교육청별 금액 확정
** 추후, 시·도교육청 추경 등으로 변동 가능성 有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세수결손 등에 따른 교부금의 지속적인 감액 현상은 교육현장의 재정 불안을 가중시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재정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 간 교육환경 불균형이 커질 우려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계획적으로 대응하여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세수입의 장기적 추이와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과 예산 및 기금별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한 세수결손은 경제상황 변동성으로 불가피한 것일 수 있으나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되어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규모 변동성 고려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121]의 일부를 합산한 금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교부금에 포함되는 교육세의 일부는 현재 교육세 세입액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규모임. 다만,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교육세의 경우는 보통교부금으로만 합산됨[122].

현행법상 교육세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편성 이후, 잔액의 5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그 나머지 50%를 보통교부금에 배분하는 구조임[123].

---

121) 국세인 교육세를 말함

1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12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 그런데,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2025.7.31.)과 연계하여 교육세를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세 및 특별회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124]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하고,

②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하여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해당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함.

그리고 ③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금액 40%를 보통교부금에 지원하는 내용임[125][126].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24) 정부는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표준구간 신설, 세율을 인상하여 국정과제 소요에 활용한다는 계획임.

과표구간(수익금액)	현 행		개 정 안
~ 1조원	0.5%	⇨	0.5%
1조원 ~			**1.0%**

125) 교육부 보도자료 (2025. 8. 28.)

126) 이와 관련하여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이 반영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213294호)과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 발의, 의

<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 >

현행(2025년)		개편안(2026년~2030년)
❶ 유특회계 예산 편성 이후, 잔액을	⇨	❶ 고특회계 금융보험업분(증세포함) 전출 이후, 잔액을
❷ 고특회계 50% 전출		❷ 영유아특별회계 60% 전출
❸ 보통교부금 50% 전출		❸ 보통교부금 40% 전출

(자료 : 교육부)

❑ 참고로 교육세의 배분 연혁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3년부터 교육세(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였으나, 2017년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시 재원 일부[127]를 교육세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2023년도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시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을 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음.

❑ 최근 5년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세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에 약 1.7조원을 우선 배

안 제2213036호)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127) 3~5세 누리과정 재원 중 유치원분 전출(어린이집 지원분은 국고로 부담)

분하고 남은 금액 약 3.6조원을 보통교부금 배분하였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가 신설된 2023년도부터는 유특회계 우선 배분 후 남은 금액을 5:5로 고특회계와 보통교부금에 각각 배분하였는데, 2023년도에는 약 1.5조원, 2024년과 2025년도에는 약 2.2조원 규모임.

< 최근 5년 교육세 배분 규모 >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세 수입		5.3	5.3	4.7	6.2	6.1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		1.7	1.7	1.7	1.7	1.7
'유특회계 전출 이외 교육세'		3.6	3.6	3.0	4.5	4.4
(5:5)	고특회계(50%)	-	-	1.5	2.2	2.2
	보통교부금(50%)*	3.6	3.6	1.5	2.2	2.2

* 전전년도 정산분 미포함
※ 조 단위 표기로 인해 소수점 이하 금액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 교육부)

❑ 그런데,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에 따른 교육세 배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9년도까지 교육세 수입(증세분 포함) 기준 고특회계는 약 3.7조원 영유아특별회계는 약 3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보통교부금은 약 2조원 규모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에 따른 교육세 배분 규모 추이 >

(단위: 조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교육세 수입		6.4	8.0	8.4	8.7
고특회계 전출(금융보험업분)		2.0	3.5	3.6	3.7
'금융보험업분 이외 교육세'		4.4	4.5	4.8	5.0
(6:4)	영유아특별회계(60%)	2.6	2.7	2.9	3.0
	보통교부금(40%)	1.8	1.8	1.9	2.0

※ 교육세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계값에 2027년부터 증세분(+1.3조원) 적용
금융보험업 : 2024년 결산(2.0조) 및 2027년 증세분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증가율(4.9%) 적용
(자료 : 교육부)

❑ 2026년도 교부금 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을 전제로 편성하였는데, 2026년도 교육세분 보통교부금(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제외)은 1조 7,586억 9,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2조 1,690억 1,200만원만원 대비 4,103억 1,600만원(△18.9%) 감액되었음.

교육세 배분 개편(안)으로 영향으로 2026년도 교육세 세입액(6조 4,432억 9,400만원)이 전년 교육세 세입액(6조 402억원) 대비 6.2% 증가하였음에도 교육세분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비교 (보통교부금) >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69,659,572백만원** 가. 내국세분 교부금 (67,077,580백만원) ・내국세×20.79% × 6.2% = 67,440,885백만원 ・2023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363,305백만원 나. 교육세분 교부금 (2,581,992백만원) **・교육세 6,040,200백만원** – ❶유특회계 1,702,175백만원, ❷고특회계 2,169,013백만원 = ❸ **2,169,012백만원** ・2023년 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412,980백만원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69,010,114백만원** 가. 내국세분 교부금 (67,975,226백만원) ・내국세× 20.79% × 96.2%=68,594,958백만원 ・2024년 내국세 교부금 정산분 △619,732백만원 나. 교육세분 교부금 (1,034,888백만원) **・교육세 6,443,294백만원** – ❶고특회계 2,046,554백만원, ❷유특회계 2,638,044백만원 = ❸ **1,758,696백만원** ・2024년 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723,808백만원

(자료 : 교육부)

❑ 이번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안)은 교육세분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이는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은 교육세 개편(안)이 반영된 내용으로, 동 예산안을 바탕으로 2026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및 시·도교육청별 본예산 편성 준비 중으로 2026년도 교부금이 전년 추경예산 대비 약 1.4조원 증액으로 상승률이 축소되어 시·도교육청 인건비 상승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128]되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기금활용 및

지출구조조정(시설비, 교육사업비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2026년도의 경우 보통교부금 감액에 대비한 재정운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방 교육 사업의 수행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시 이번 개편안의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128)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교부금(세입 결산) 증가액은 2.7조원이고 최근 5년간('20~'24) 연평균 시·도교육청 인건비(세출 결산) 증가액은 2.4조원임.

10. 교원학부모지원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129)]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참여기관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협의체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기 보다,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2232-323) 사업은 일반대학 및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 사범대학 등) 학생들이 AI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동 세부사업은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129)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2232-323)" 중 내역사업
문의: 02-6788-5189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의 예산 118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	-	11,840	11,840	순증
○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	-	-	9,360	9,360	순증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	-	2,480	2,480	순증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사업의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 필요

❑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2232-323) 사업에 편성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내역사업은 초·중등 AI 교육의 핵심인 교원이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AI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사업출연금으로 2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참여기관(대학연구팀)의 교육과정 개발 16억원, 협의체(권역별 교·사대 컨소시엄)의 교육과정 적용 준비 8억원, 출연기관의 사업관리 8,000억원임.

< 2026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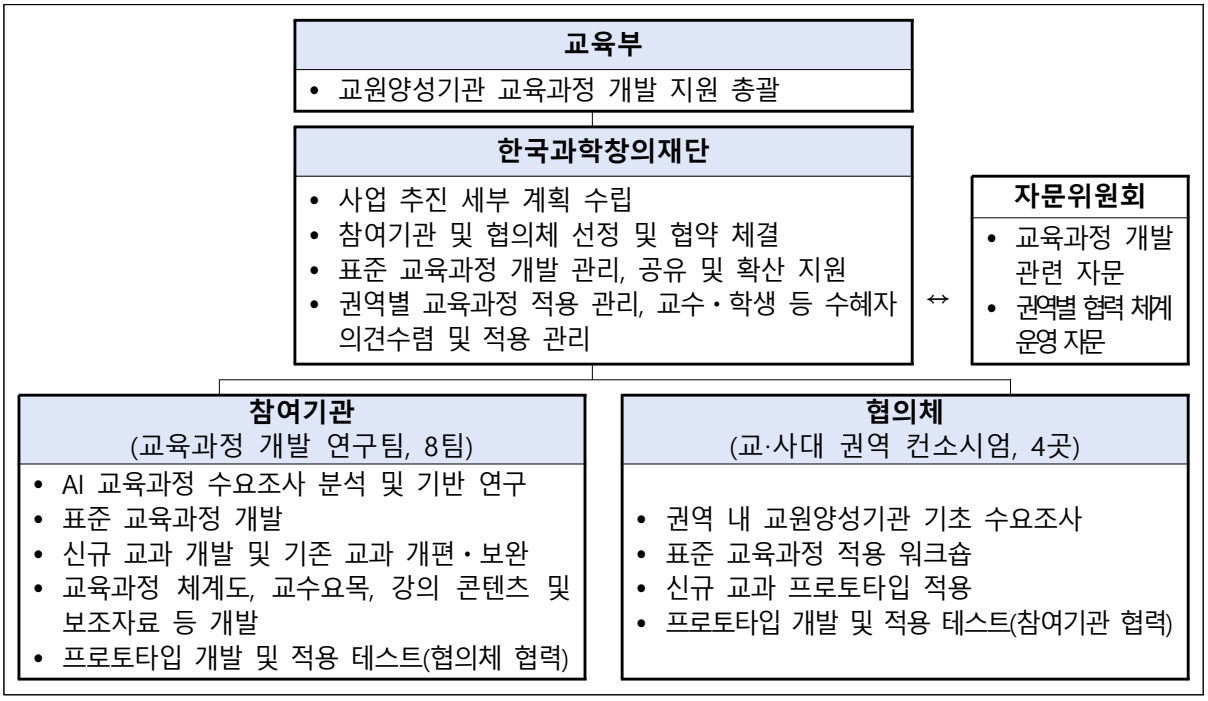
구분	편성내역
총 예산액	24억 8,000만원
교육과정 개발	◦ 16억원: 8팀 × 2억원 - 8개 참여기관(대학연구팀) ・초등과정 4팀, 중등과정 4팀 - 2억원 ・표준 교육과정 개발: 5,000만원 = 1식 × 5,000만원 ・신규 교과 개발: 6,000만원 = 2개 × 3,000만원 ・기존 교과 개편·보완: 9,000만원 = 6개 × 1,500만원
교육과정 적용 준비	◦ 8억원: 4개 협의체 × 2억원 - 4개 협의체(권역별 교·사대 컨소시엄) ・수도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 2억원 ・협의체 구성 등 6,000만원 ・시범적용 8,000만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 6,000만원 = 3회 × 2,000만원
출연기관 사업관리	◦ 8,000만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총괄하고 출연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업을 관리하며, 참여기관과 협의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됨.

구체적으로 참여기관은 AI 교육과정 수요조사 분석 및 기반 연구, 표준 교육과정 개발, 신규 교과 개발 및 기존 교과 개편·보완 등을 수행하고, 협의체는 권역 내 교원양성기관 기초 수요조사, 표준 교육과정 적용, 신규 교과 프로토타입 적용 등을 수행하며, 프로토타입 개발 및 적용 테스트는 참여기관과 협의체가 협력하여 수행함.

< 2026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주체별 수행내용 >



자료: 교육부

❑ 이와 같은 사업 예산안 편성 및 운영 계획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은 기본적으로 참여기관(개발)과 협의체(적용)에서 각각 수행하게 됨.

교육부는 참여기관과 협의체를 분리·운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AI 교육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AI 기술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는 동시에, 교육학 일반이론 및 컴퓨터 교육 교과교육론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해야 하는 것이므로, AI 중심대학·대학원 등 AI 전문 분야, 교육학·교육공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과 AI 교육 관련 현장 교사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참여기관과 협의체를 통일하여 운영하는 경우 개발 대학의 사정만 반영되어 교육과정이 표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는 참여기관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단에 교과교육 연구진 이외에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 및 다양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또한 교육과정은 교원양성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므로, 참여기관과 협의체를 분리하여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 교육

과정 적용 단계에서 개별 대학의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야하며,

표준화 과정 이후 이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맞추어 적용하기 위해 시범적용, 워크숍 개최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여기관과 협의체를 분리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수행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참여기관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협의체를 각각 별도로 구성하기보다,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130]

130)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협의체 내에서 교육과정 개발부터 적용까지 수행할 경우 협의체별로 개발가능한 교육과정 수, 참여 가능한 전문가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고, 협의체 내에서도 각 대학이 수정·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시범적용, 워크숍 개최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참여기관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는 교원양성기관 구성원을 포함하거나 교육과정 개발 시 교원양성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과정 적용·운영을 고려한 개발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131]

○ 교육부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에서 연례적인 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액을 면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고대여학자금융자(6036-3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융자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132] 등에 근거를 두고 수행됨.

---

131) 문의: 02-6788-5189

13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①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자금대여사업
2. 주택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26년도 계획안 현황

❑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6억 7,100만원(5.0%)이 감액된 317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계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B-A)	%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51,288	33,412	31,741	△1,671	△5.0
○ 기타 민간융자금	51,288	33,412	31,741	△1,671	△5.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액 산출 필요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2026년 계획안 317억 4,100만원은 2025년 계획액 334억 1,200만원의 산출내역에 최근 4년간(2021~2024년)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출되었음.

< 2026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

구분	산출내역
계획안	· 31,741백만원(9,386건 × 3,381천원)
건수	- 2025년 계획액 건수 × 최근 4년간(2021~2024년) 지급건수 연평균 증감률 = 9,667건 × (1+△2.9%) ≒ 9,386건
단가	- 2025년 계획액 단가 × 최근 4년간(2021~2024년) 집행액 연평균 증감률 = 3,420천원 × (1+△1.2%) ≒ 3,381천원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관련 내역>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1~'24 연평균증감률
지급건수	14,870	13,970	14,530	13,611	△2.9
집행액	53,101	51,225	54,162	51,288	△1.2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2026년 계획안의 산출기준인 2025년 당초계획액 334억 1,200만원은 2025년 7월에 170억 9,100만원 증액된 505억 300만원으로 수정되었고, 2025년 8월 기준 집행액은 441억 2,500만원으로 당초계획액을 107억 1,300만원 초과함.

이와 같이 2025년 당초계획액은 실제 수요보다 적게 편성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근 4년간(2021~2024년)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더 감소된 2026년 계획안의 집행과정에서도 2025년과 같이 초과 수요에 따른 계획액 변경이 예상됨.

❑ 아울러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2023~2025년 계획액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된 바 있으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증액 변경되었고, 2026년 계획안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 사유가 없음에도 전년 대비 5.0%가 감액됨.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액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집행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및 사유
	당초(A)	수정(B)	증감(B-A)		
2023	41,481	57,370	15,889	54,162	(보통) 집행부진
2024	37,125	54,451	17,326	51,288	(미흡) 성과목표 미달성, 중복 수혜 및 퇴직자 상환 관리 문제 해소 부족
2025	33,412	50,503	17,091	(44,125)	(미흡) 집행부진
2026	31,741				

주: 2025년 집행액은 2025년 8월 기준, 2026년 당초 계획액은 계획안 기준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교육부는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에서 연례적인 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액을 면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금급여(6131-400)[133)]

○ 교육부는 국가재정 소요의 적정 규모 예측과 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면밀히 추계하여 계획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연금급여(6131-400)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133) 문의: 02-6788-5189

(2) 2026년도 계획안 현황

❑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3,447억 5,400만원(7.0%)이 증액된 5조 2,66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연금급여 사업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계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B-A)	%
□ 연금급여	4,817,689	4,921,681	5,266,435	344,754	7.0
○ 연금지급금	4,817,689	4,921,681	5,266,435	344,754	7.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연금급여의 면밀한 추계 필요

❑ 최근 5년간(2022~2026) 연금급여 사업의 당초계획액(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 3조 7,032억원이었으나 연평균 9.2%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5조 2,664억원 규모로 편성됨.

이러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요는 당초계획액을 초과하여 2022~2024년 동안 계획액 증액 변경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수정계획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로 당초계획액 연평균 증가율 10.0%를 2.0%p 상회함.

2025년에도 2,031억원을 증액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수정계획액은 5조 1,24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2025년 동안 수정계획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당초계획액의 연평균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연금급여 사업 계획액(안)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연평균증가율		
						'22~'24	'22~'25	'22~'26
당초(A)	37,032 (8.7)	41,083 (10.9)	44,845 (9.2)	49,217 (9.7)	52,664 (7.0)	10.0	9.9	9.2
수정(B)	38,605 (12.3)	43,784 (13.4)	48,408 (10.6)	51,248 (5.9)	-	12.0	9.9	-
변경액(B-A)	1,573	2,701	3,563	2,031	-	-	-	-
결산(C)	38,597 (12.3)	43,624 (13.0)	48,281 (10.7)	-	-	11.8	-	-
부족액(C-A)	1,565	2,541	3,436	-	-	-	-	-

주: 1. 2025년 수정 계획액, 증가율, 변경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규모 기준임
2.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계획액 편성 당시 보다 많은 연금급여 지급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급여 지급 수요 증가가 가속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이 완료된 2024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8만 465명에서 연평균 7.6% 수준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 10만 7,717명에 이르렀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수 추이 >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합계 (증감률)	80,465 (9.1)	87,093 (8.2)	93,872 (7.8)	101,015 (7.6)	107,717 (6.6)	7.6
교원 (증감률)	57,960 (9.5)	62,841 (8.4)	68,120 (8.4)	73,547 (8.0)	78,457 (6.7)	7.9
사무직원 (증감률)	22,505 (8.1)	24,252 (7.8)	25,752 (6.2)	27,468 (6.7)	29,260 (6.5)	6.8

주: 수급자 수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기준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또한 각 연령계층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수와 비중은 증가 추세인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및 유소년인구(0~14세)가 차지하는 수와 비중은 감소 추세이고, 학령인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직, 폐교 등으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134]

<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2022~2072년) >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총인구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고령인구 (65세 이상)	898	944	994	1,051	1,298	1,715	1,891	1,868	1,727
	(17.4)	(18.2)	(19.2)	(20.3)	(25.3)	(34.3)	(40.1)	(44.2)	**(47.7)**
생산연령인구 (15~64세)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71.1)	(70.7)	(70.2)	(69.5)	(66.6)	(58.0)	(51.9)	(48.9)	**(45.8)**
유소년인구 (0~14세)	595	571	549	526	416	388	375	293	238
	(11.5)	(11.0)	(10.6)	(10.2)	(8.1)	(7.7)	(8.0)	(6.9)	**(6.6)**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령계층의 인구가 해당 연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추계 기준, 2023.12.

134) 폐교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 폐지 등으로 퇴직한 경우가 준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함.

<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 추이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급자 수		321	340	353	379	**408**
지급액	폐교~개시연령[1] 전	3,685	3,628	3,407	3,028	2,995
	개시연령 이후	2,570	3,251	3,995	5,048	5,993
	합계	6,255	6,879	7,402	8,076	**8,988**

주: 1) '개시연령'은 폐교가 아닌 '일반 퇴직'에 따른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학령인구(6~21세)(2022~2072년) >

(단위: 만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합계	750	730	715	698	597	412	425	377	278
증감	-	△20	△15	△17	△101	△185	13	△48	△99
(증감률)	-	(△2.7)	(△2.1)	(△2.4)	)(△14.5	(△31.0)	(3.2)	(△11.3)	(△26.3)
초(6~11세)	270	261	248	234	161	156	153	123	94
중(12~14세)	137	136	138	140	115	68	83	71	48
고(15~17세)	132	136	138	137	133	69	82	74	52
대(18~21세)	210	197	190	187	188	119	108	109	8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추계 기준, 2023.12.

❑ 연금급여 지급은 의무적 지출 사업[135]이므로 당초계획액을 초과하는 수요는 계획액을 증액 변경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초과 수요에 따른 기금용계획 변경은 2018년부터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연금급여 지급 계획액은 국가재정 소요에 대한 적정 규모 예측과 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실제 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산출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수지 적자와 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136]을 차지하는 연금급여 지급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1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36) 2026년 계획안 기준 78.5%(총지출 6조 7,123억원 중 5조 2,664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수지 적자 및 기금 고갈 시점 추계 >

구분			재정수지 적자	기금 고갈
사학연금	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	2020.10.	2029년	2049년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2025.2.	2028년	2042년
감사원	제5차 연금재정 장기추계 재추계	2025.6.	2028년	2046년
대한민국정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2025.9.	2026년	2047년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2., 감사원, 「감사 보고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2025.6.,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2025.9.

11.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일반회계>

1)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137]

○ 부산대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 사업은 장애학생 대상 예술중·고등학교인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과 전국단위 모집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인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그리고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인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세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 9월 2일 개교하였음.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19억원(383.9%)이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137) 문의: 02-6788-5186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과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에 각각 40억원과 1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2,300	3,100	15,000	11,900	383.9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300	0	0	-	-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0	0	4,000	4,000	순증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0	3,100	11,000	7,900	254.8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부산대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동 사업은 교육부가 2017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174개교였던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면서[138] 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충하겠다는 추진과제를 설정함에 따라 시작된 사업임.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여,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장애학생 대상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의 경우 체육에 재능 및 잠재력이 있는 장애학생에게 체육 분야에 특화된 교육 제공 및 장애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전국단위 모집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잔여용지 수용에 따른 건설보상비와 조적, 미장, 기계, 전기, 통신, 관급자재 구입 등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2년차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로 총 40억원을 편성하였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2년차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로 총

138) 2025년 8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6개소로 증가하였음(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5.8., 교육부).

11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6년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 편성내역 >

구 분	산출내역('26예산안)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4.000백만원 - 건설보상비 × 1식 = 296백만원 - 2년차 공사비 × 1식 = 2,800백만원 - 2년차 감리비 × 1식 = 900백만원 - 2년차 시설부대비 × 1식 = 4백만원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11,000백만원 - 2년차 공사비 × 1식 = 9,670백만원 - 2년차 감리비 × 1식 = 1,300백만원 - 2년차 시설부대비 × 1식 = 30백만원

자료 :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교육부) 참조

❑ 한편, 사업 시작 당시 계획에 따르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하였으나,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 9월에 개교하여 당초 계획보다 3년 6개월 지연되었고,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5년 공사착공과 동시에 인허가 미완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5년 6월부터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음.

❑ 이렇듯 동 사업은 사업 시작 당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6년 1월부터 공사가 재개될 예정으로, 교육부는 현재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정된 사업비 177억 2,800만원과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2년차

공사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합하여 총 217억 2,800만원을 2026년도에 전부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 국립대학(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비 교부 및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19	1,361	-	1,361	16	1,345	-
	2020	195	1,345	1,540	800	736	4
	2021	13,186	736	13,922	768	13,154	-
	2022	4,594	13,154	17,748	-	17,748	-
	2023	-	17,748	17,748	-	17,748	-
	2024	-	17,748	17,748	-	17,748	-
	2025	-	17748	17748	20	17,728	-

자료: 교육부

< 2026년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 >

	계획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비고
1월	공사(대체시설 이전)		소요기간: 착공일로부터 960일
2월		2,000	
3월			
4월		2,000	
5월	공사(철거 및 토공사)	1,000	
6월	공사(토공사 및 지정공사)		
7월		2,000	
8월	공사(골조공사)		
9월		6,000	
10월			
11월			
12월		8,728	

자료: 교육부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2024년도에 이월된 95억 3,500만원과 2025년도 예산 31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6억 3,500만원의 사업비 중 2025년도에 80억 7,300만원이 연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139], 2026년도에 동 사업에 대한 예상 소요예산액은 155억 6,200만원으로, 교육부는 내년으로 이월될 사업비 45억 6,200만원과 2026년도에 예산안으로 편성한 2년차 사업비 110억원을 합한 155억 6,200만원 전액을 2026년도에 전부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 국립대학(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비 교부 및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2021	1,950	-	1,950	77	1,873	-
	2022	9,557	1,873	11,430	445	10,885	100
	2023	-	10,885	10,885	506	10,379	-
	2024	-	10,379	10,379	844	9,535	-
	2025	3,100	9,535	12,635	1,987	미정	미정

자료: 교육부

< 2026년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 >

	계획	예산소요(단위: 백만원)	비고
1월	동절기 공사중지	-	'25.06.02. ~ '28.01.27.
2월		-	

139) 2025년 8월말 기준

3월	공사 (골조공사)	1,600	
4월		1,500	
5월		1,300	
6월		1,400	
7월		1,700	
8월	공사 (조적, 창호공사)	1,700	
9월		2,300	
10월		2,000	
11월	공사 (유리, 외장공사)	1,000	
12월		1,062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사업 시작 당시 계획에 따르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하였는데, 교육부는 두 사업 모두 2027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2028년 3월에 개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사업 시작 당시 계획 보다 최소 5년 이상 개교일이 늦춰질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2025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후 건축협의를 신청, 12월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2026년 6월 공사 착공을 통해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은 잔여 용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남아

있어 동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공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부분적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 부산대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모두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필요한 공정을 진행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또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최초 장애학생 대상 예술 중·고등학교인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전국단위 모집 체육 중·고등학교인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음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예체능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특별회계>

1) 영유아특별회계 신설[140]

○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신설하는 영유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유아특별회계’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보육을 전담하는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의 필요에 따라 도입 예정[141]인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된 재원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국정과제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정부)은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

140) 문의: 02-6788-5192

141)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위한「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036호)이 발의(2025.9.16.)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중임. 동 제정안은 참고사항으로「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폐지와 일반회계(국고)로 운영하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동하여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영유아특별회계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9조 2,23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이 9조 1,956억 6,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9.7%를 차지함.

< 2026년도 영유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	-	-	9,223,335	9,223,335	9,223,335	순증
총수입	-	-	-	9,223,335	9,223,335	9,223,335	순증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	-	287	287	287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287	287	287	순증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	-	8,436	8,436	8,436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	-	8,436	8,436	8,436	순증
89 세계잉여금이입액	-	-	-	18,950	18,950	18,950	순증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	-	-	18,950	18,950	18,950	순증
91 전입금	-	-	-	9,195,662	9,195,662	9,195,662	순증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	-	9,195,662	9,195,662	9,195,662	순증

자료: 교육부

❑ 영유아특별회계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회계이동 전) 본예산 대비 7,851억 4,300만원(9.3%), 제2회 추경 대비 6,720억 5,800만원(7.9%) 증가한 9조 2,23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부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 6,792억 7,700만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조 8,386억 2,000만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지원 2조 1,383억 1,600만원 등이 있음.

- 신규 세부사업으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에 4,703억 3,500만원이 편성됨.

❑ 참고로, 2025년도에는 '영유아보육료 5% 인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제2회 추경을 통해 1,130억 8,5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1,289억원을 편성[142]한 바 있음.

142) 정부는 '27년도까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을 **2025년도 예산총칙에 목적예비비로 2,6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무회의(2025. 7. 29.)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2026년도 영유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총 계	(8,139,624)	(8,438,192)	(8,551,277)	9,223,335	9,223,335	9,223,335	순증
총지출	(8,139,624)	(8,438,192)	(8,551,277)	9,223,335	9,223,335	9,223,335	순증
160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3,102,013)	2,838,620	2,838,620	2,838,620	순증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1601-300)	(3210631)	(3,102,013)	(3,102,013)	2,838,620	2,838,620	2,838,620	순증
1631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	-	470,335	470,335	470,335	순증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1631-301)	-	-	-	470,335	470,335	470,335	순증
1633 영유아보육료지원	(2875105)	(3,268,057)	(3,381,142)	3,679,277	3,679,277	3,679,277	순증
영유아보육료 지원 (1633-331)	(2850100)	(3,240,039)	(3,353,124)	3,644,273	3,644,273	3,644,273	순증
시간제보육 지원 (1633-336)	(25,005)	(28,018)	(28,018)	35,004	35,004	35,004	순증
1635 어린이집 관리	(26,574)	(28,919)	(28,919)	28,457	28,457	28,457	순증
보육사업관리 (1635-350)	(3,211)	(5,514)	(5,514)	4,763	4,763	4,763	순증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1635-354)	(1,634)	(1,308)	(1,308)	1,308	1,308	1,308	순증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1635-372)	(21,729)	(22,097)	(22,097)	22,386	22,386	22,386	순증
1640 어린이집 지원	(1940854)	(1,961,911)	(1,961,911)	2,138,316	2,138,316	2,138,316	순증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1940854)	(1,961,911)	(1,961,911)	2,138,316	2,138,316	2,138,316	순증
16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6,460)	(77,292)	(77,292)	68,330	68,330	68,330	순증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641-300)	(86,460)	(77,292)	(77,292)	68,330	68,330	68,330	순증

주: ( ) 회계이동 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기준임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영유아특별회계의 설치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은 2026년도 교육세 세제 개편안[143]과 연계하여 국세 교육세를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정부의 특별회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현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교육세 세입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우선 예산 편성 후 나머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교부금에 각각 50% 편성하는 구조이나,

<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관련 현행 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43)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표준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하여 국정과제 소요에 활용함

향후 특별회계 개편[144] 이후에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45]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의 60%는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교부금의 재원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영유아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사업 구성안 >

(단위: 억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현행	① 누리과정 지원(교육세+국고)		31,020	28,386	31,519	31,682	32,103
		유치원분(교육세)	17,052	15,809	16,452	16,349	16,570
		어린이집분(국고)	13,968	12,577	15,067	15,333	15,533
	② 보육사업(국고)**		53,361	59,144	67,425	70,878	75,474
신규, 국정 과제	③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교육세)		-	4,703	6,961	6,961	6,961
	④ 교사대아동비율개선(교육세)		-	3,262	3,334	3,434	3,537
	⑤ 그밖의연장형교사지원(교육세)		-	365	365	365	365
	소 계		-	8,331	10,659	10,759	10,862
합계	교육세		17,052	26,380	27,111	27,108	27,432
	국 고		67,329	65,853	84,207	87,996	92,866
	총 계		84,381	92,233	111,318	115,104	120,298

* '26년 정부안(국회 제출), '27년 이후는 중기계획 요구값, ④·⑤는 ②와 중복 포함

** 일반회계(국고)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사업(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관리,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자료: 교육부

---

144)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036호)**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14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294호)에 따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 의무자(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영유아특별회계는 현행 규정에 따라 ①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유치원(교육세)·어린이집(국고)의 누리과정 지원과 ②일반회계로 추진하는 보육사업(국고)으로 이원화된 예산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③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④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⑤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로 아침돌봄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정과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세[146]로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계함으로써 특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나, 재정의 칸막이 현상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심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 전출·전입의 내부거래에 따른 재정활동의 투명성 저하 및 한시적 시한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재정체계를 왜곡시키는 단점이 있음.

146) 단,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므로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가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147]은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유아특별회계는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과 함께 일반회계로 운영하던 영유아 대상 보육사업(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2024.6.27.) 받은 사업)을 포괄하는 체제로 확장함으로써 유보통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특별회계 신설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

다만,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은 「영유아특별회계법안」(2025.9.16. 발의, 제2213036호)의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함께 관련 법률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8]의 연내 개정도 필요함.

147)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4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9.3. 정부 제출, 제2212660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9.25.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제221329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10.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제2213502호)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진행 중

(2)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 필요

❑ 영유아특별회계는 누리과정과 함께 일반회계로 운영하던 보육사업까지 포괄함으로써 이원화된 예산구조를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임.

< 영유아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구성안 >

(단위: 억원)

구 분	세입	'25년 예산	'26년(정부안)	비고
어린이집 지원분	(국고, 교육세)	67,329	73,194	
①-1 누리과정	국고	13,968	12,577	①-1,③ 시도교육청 →지자체 →어린이집
②-1 보육사업	국고	53,361	55,517	
③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교육세	-	1,473	②-1,④,⑤ 지자체 →어린이집
④ 교사대아동비율개선	교육세	-	3,262	
⑤ 그밖의연장형교사지원	교육세	-	365	
유치원 지원분(교육세)	(교육세)	17,052	19,039	
① 누리과정	교육세	17,052	15,809	시도교육청 →유치원
③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교육세	-	3,230	

주: 보육사업(국고)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사업, ②-1은 ④·⑤와 중복 제외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재구성

❑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과 교육세로 편성하고,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그 밖의 연장형 교

사지원(아침돌봄 수당) 사업의 신규 추진에 필요한 재원 8,331억원('26년도 예산안 기준)을 교육세로 추가 확보하였음.

다만,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6년도 예산안 기준 교육세가 2조 6,380억원(28.6%), 국고 지원분이 6조 5,853억원(71.4%)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연계하고 목적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함에 있음에도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49]의 비중이 과다한 경우 재정구조 상 일반회계와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자체세원 부족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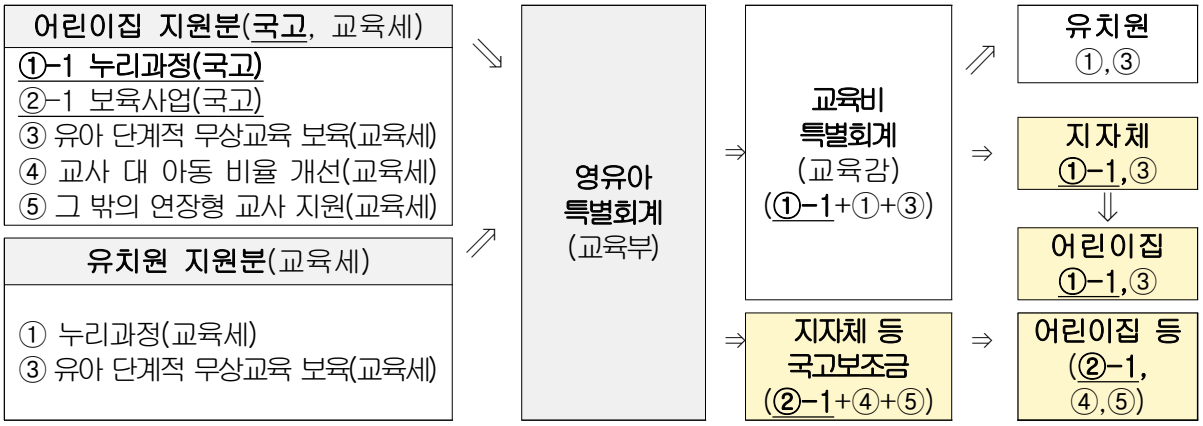
❑ 또한,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그 집행에 있어 유치원 지원의 경우 시도교육청(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에 직접 집행(①, ③)하나, 어린이집 지원은 누리과정과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의 경우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①-1, ③)하고, 그 외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149)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1. ~ 10.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와 함께 어린이집에 집행(②-1, ④, ⑤)하는 구조로 영유아특별회계의 설치 전과 실질적인 집행 방식의 차이는 없다는 특성이 있음.

이는 각 개별법에 따라 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150]에 관한 사무는 시도교육청(교육감)이 관장하나,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감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으로 보임.[151]

< 영유아특별회계 예산지원 구조(2026년 예산안) >



자료: 교육부

1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7. (생 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1) 다만,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4.6.2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업무·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의 추진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 및 재정 지원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관련 논란을 종식하기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의결(’16.12.3.)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지원의 적절성 논란을 해소한 바 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한시 회계로 설치되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몰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152]를 반복해 왔고,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한계도 있었음.[153]

이에 교육부는 ’26년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교육세로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재원을 국고로 마련할 것인지 교육세로 마련할 것인지 등 재원확보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15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 당시에는 부칙에서 이 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및 2022년에 유효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또한, 2025년 일부개정(2025.8.14. 시행)을 통해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음

15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596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현황과 과제”, 2019.7.9.자 참고

❑ 따라서, 교육부는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54)]

○ 교육부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단가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은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3조 1,020억 1,300만원(회계이동 전) 대비 2,633억 9,300만원(8.5%)이 감액된 2조 8,38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동 사업의 예산 감액은 취원대상 유아 수의 감소에 따른 것임.

---

154) 문의: 02-6788-5192

< 2026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	추경(A)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3,102,013)	2,838,620	2,838,620 (△263,393)	순증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210,631)	(3,102,013)	(3,102,013)	2,838,620	2,838,620 (△263,393)	순증

주: ( ) 회계이동 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기준임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155] 등에 따라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26년도 취원대상 유아 수를 기준으로 지원단가 및 예상 취원율(’25.4월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지원단가는 동일하나, 취원대상 유아 수 및 예상 취원율 감소에 따라 2,633억 9,300만원(8.5%)이 감액된 2조 8,386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155)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자치단체교부금(330-02) : 2,838,620백만원

가. 유치원 (1,580,913백만원)

- 유치원 유아학비(1,237,747백만원)
  - 공립 137,590명 × 100천원 × 12개월 = 165,108,000천원
  - 사립 319,238명 × 280천원 × 12개월 = 1,072,639,680천원

※ '26년도 취원대상 인원('25.3 생년월일 기준 '26년 취학대상(2020.1.1.~2022.12.31.) 유아 수) × '26년도 예상 취원율(공립 16.8%, 사립 39.3%, '25.4.기준 취원율 반영)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343,166백만원)
  - 공립 133,898명 × 50천원 × 12개월 = 80,338,800천원
  - 사립 312,889명 × 70천원 × 12개월 = 262,826,760천원

나. 어린이집 (1,257,707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1,212,665백만원)
  - 288,730명 × 350천원 × 12개월 = 1,212,665,000천원

※ '26년도 취원대상 인원('25.3 생년월일 기준 '26년 취학대상(2020.1.1.~2022.12.31.) 유아 수) × '26년도 예상 취원율(36.0%, '25.4. 기준 취원율 반영)

-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등(45,042백만원)
  - 288,730명 × 13천원 × 12개월 = 45,041,880천원

<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월) >

구 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만원	28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누리운영비)	5만원	7만원	7만원
계	15만원	35만원	35만원

자료: 교육부

❑ 한편, 동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출생률 감소로 취원대상 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단가는 2022년도 이후 동결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유치원 · 어린이집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 현황 >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취원대상 유아(명)		997,479 -	907,151 △9.06%	823,435 △9.23%	809,378 △1.71%	745,558 △7.89%
예상취원율(%)	공립유치원	15.5	15.6	15.1	15.8	16.8
	사립유치원	33.8	36.0	38.0	40.4	39.3
	어린이집	43.8	42.0	38.2	36.8	36.0
	합계	93.1	93.6	91.3	93.0	92.1
사업비(백만원)	유치원 (유아학비 + 방과후과정비)	1,759,266	1,692,005	1,679,676	1,705,209	1,580,913
	어린이집 (보육료 + 처우개선비 등)	2,069,780	1,778,032	1,530,955	1,396,804	1,257,707
	합계	3,829,046 -	3,470,037 △9.38%	3,210,631 △7.48%	3,102,013 △3.38%	2,838,620 △8.49%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유아학비·보육료의 지원단가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156]에 따르면, 재원

156) **「2025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시행 2025. 3. 1.]** [교육부고시 제2025-5호, 2025. 2. 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5세	2019.1.1. ~ 2019.12.31.	100,000원	280,000원	280,000원
	4세	2020.1.1. ~ 2020.12.31.			
	3세	2021.1.1. ~ 2022. 2.28.			

유아 1인당 매월 공립유치원은 10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8만원을 누리과정(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로 책정하고 있고, 2026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우선, 지원단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있어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정책연구 및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 간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시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은 ① 정책연구를 통한 표준유아교육비용 산출,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157], ③ 표준유아교육비 안내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최근에 산출된 2024년도 표준유아교육비는 2020년도에 실시한 정책연구 보고서인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158]'를 바탕으로 제8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2024.9.4.)를 거쳐 산출한 바 있음.

157) < 최근 5년간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이력 >
- 제7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2021.6.18.): 사립유치원 55.7만원
- 제8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2024.9.4.): 사립유치원 60만원

158)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 연구」(교육부, 2020년), 연구기간: 2020.05.25.~2020.11.24.,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또한, 「유아교육법」 제25조[159]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의 기준이 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60]의 경우 202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률'이 증가하였으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단가 산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 누리과정(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 단가(월)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2만원	22만원	24만원	26만원	28만원	28만원	28만원	28만원

자료: 교육부

<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율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3%	1.4%	1.3%	0.8%	1.0%	2.7%	3.8%	3.8%

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원비 인상 상한율)은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함
자료: 연도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159)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60) 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4 - 22호)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3.8%
○ **(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5년 원비 인상 상한율(3.8%)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참고로,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월)에서 유치원 규모별 산출 등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여 실제 유치원의 운영 현실에 기반한 비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수준 표준유아교육비에 따른 시·도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검토하며, 비계측연도에도 교육비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도 있음.[161]

❑ 따라서, 교육부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단가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1)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월) p.32 참고

4.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고도화**

○ **유치원 규모**별 산출 등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여 실제 유치원의 운영 현실에 기반한 비용 지원 체계 마련('23)

- 국가수준 표준유아교육비에 따른 **시·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검토, 비계측연도에도 교육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비계측연도에 물가상승률 반영 등

기존		개편('23~)
• 국가수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 ▶ ▶	• 국가수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 규모별 산출(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등) • 시·도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검토 • 비계측년도 보정 방안 마련

3)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162)]

○ 교육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1631-301)'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3~5세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려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4,703억 3,500만원으로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162) 문의: 02-6788-5192

< 2026년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	추경(A)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	-	470,335	470,335	순증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	-	470,335	470,335	순증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

❑ 동 사업은 초·중·고 무상교육 및 영아(0~2세) 무상보육은 이미 실현되었으나, 유아교육(3~5세) 단계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5년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도에는 3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음.

-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학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음.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개요 >

□ **추진경과**
- ㅇ '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 추진 발표(유보통합 실행계획, '24.6.27.)
- ㅇ 대통령 공약으로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과제 포함('25.5월)
- ㅇ 제33회 국무회의, 5세 무상교육·보육 목적예비비 배정 심의·의결('25.7.29.)
- ㅇ 제37회 국무회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예산('26년~'3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심의·의결('25.8.18)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국가정책사업)

□ **지원대상 및 내용**
- ㅇ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ㅇ (지원내용)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3~5세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 총 50만 3,441명을 대상으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①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2만원을, ②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11만원을, ③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7만원을 각각 지원하려는 것으로 총 4,703억 3,500만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산출하였음.

- 교육부는 기관유형별로 ①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원)으로 확대하고, ②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원)의 차액인 11만원을, ③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원)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163]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임.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2026 예산안) 470,335백만원, 신규**
- (지원대상)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 총 503,441명
- (지원단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 (산출)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101,902명 × **2만원** × 12개월 = 24,456백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226,221명 × **11만원** × 12개월 = 298,612백만원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175,318명 × **7만원** × 12개월 = 147,267백만원

자료: 교육부

163)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또한, 동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5년도 예산안 예산총칙[164]을 통해 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배정('25.7.29.)하고,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한 바 있음.[165]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6년도 4~5세 유아 50만 3,441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도 이후에는 매년 3~5세 유아 74만 2,000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유아교육 단계에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동 사업의 시행에 앞서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통교부금 등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 온 바가 있음.

---

164) 정부는 '27년도까지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5세 무상교육을 위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이 아닌 예산총칙에 목적예비비로 2,6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예비비 배정 심의·의결('25.7.29.)을 통해 '25년도 하반기부터 집행하였음

2025년도 예산총칙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268,090,000,000 원),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165)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5.7.29.자 참고

< 3~5세 유아대상 지원 사업 현황 >

구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631-301)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 (보통교부금 사업)	유아교육비 보육료 추가지원금 (시도교육청 자체사업)
대상	유치원	공립: 방과후과정비 2만원 사립: 유아학비 11만원	유아 1인당 5만원	유아 1인당 3만원~18만원 (시도교육청별 지원액 차이)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연령	(26년도 예산안 기준) 4, 5세	(26년도 예산안 기준) 3, 4, 5세	3, 4, 5세
재원부담		교육세,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재정
회계		영유아특별회계(26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33회 국무회의 심의 ('25.7.29.) 제37회 국무회의 심의 ('25.8.18.)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3.3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도교육청별 자체 조례 등
비고		공립유치원: 교육감이 원비 결정(교육청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사립유치원: 원장이 원비 결정, 학부모 부담(원비-정부 지원금)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가 원비 상한(수납한도액)을 설정하고, 차액보육료(수납한도액-정부지원액) 전액 지원		

자료: 교육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사업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를 통해 2024년도에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세 유아 1인당 월 5만원[166], 총 1,735억 3,9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4세 유아에게도 추가지원금(월 5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총 3,271억 6,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26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을 3~5세 유아 전체로 확대할 계획임.[167]

166) 추가지원 계획 수립 당시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유치원 교재교구비 일부 및 어린이집 급식여건 개선 등을 위해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

167)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금은 유보통합추진방안('23.1.30.)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또한,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별로 고시하는 원비 상한률 한도에서 원비를 정하고 있어 원비 중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지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3~5세 유아대상 지원 사업들은 지원 목적과 시도별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도별 사립유치원 평균 원비 및 교육비 지원 현황 >

(단위: 원, 천원)

시도	2025년도 (9월 기준)		
	평균원비 (원)	학부모부담금 (원)	지원대상 및 단가 (천원)
서울	692,532	309,712	-
부산	581,010	127,386	-
대구	583,058	159,528	(4~5세) 30
인천	636,733	140,706	(5세) 112
광주	529,720	98,501	(3세, 5세) 50
대전	683,130	103,012	(3~5세) 130
울산	**무상교육**	12,925	(3~4세) 215, (5세) 105
경기	656,466	254,907	(3~5세) 31
강원	607,725	126,997	(3~4세) 180, (5세) 120
충북	487,530	62,237	(3~4세) 27, (5세) 65
충남	무상교육	14,332	(3~4세) 213, (5세) 173
전북	**무상교육**	4,356	(3~5세) 165
전남	507,776	39,106	(3~5세) 80
경북	470,900	56,550	(3~5세) 30
경남	무상교육	14,286	(3세) 199, (4세) 149, (5세) 39
제주	442,530	61,347	(3~5세) 40

자료: 교육부(단, 세종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없어 제외함)

위한 것으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3.3월)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23.11.16. 공포·시행),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지원하였다는 설명임

❑ 한편,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나, 국가정책적 추진[168]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

다만, 2026년도 예산안이 심의 중이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6년도 사업 예산의 철저한 집행 관리와 함께 향후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도 있겠음.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개요 >

□ 개요

○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규모 정부 사업**에 대해 **적정한 규모**로 **사업**이 **계획**되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 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 주요 검토내용

○ (**사업추진 계획**) 사업의 입지, 규모, 용도, 기간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 검토

○ (**재원조달 방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 조달 계획의 적정성 검토

168) 제37회 국무회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예산('26년~'3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심의·의결('25.8.18.)

○ (**중장기 재정소요**) 사업에 필요한 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 예측

○ (**수요 추정**) 사업의 수요와 공급 추정이 합리적인지, 편익 분석이 정확한지 확인

○ (**비용 추정**) 사업 소요 총 비용이 적정하게 추정되었는지 검증

□ 검토 절차

○ (**검토요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사업계획서 제출

○ (**기초자료 분석**) 사업 목적, 추진경과,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업계획 분석

○ (**환경분석**)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외부 환경 요인 분석

○ (**적정성 분석**) 사업 설계, 비용 추정, 수요 예측 등 계획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분석

○ (**결과 반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최종 판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영유아보육료 지원[169)]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 과제의 하나인 0세반 아동 비율 개선(1:3에서 1:2) 이후 0세반 공급 부족이나 0세반 입소 대기 및 영유아 1명당 시설면적의 감소로 보육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에 규정된 표준보육비용 조사가 주기에 따라 적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 구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등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관련 조사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3조 6,442억 7,3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조 2,400억 3,900만원 대비 4,042억 3,400만원, 제2차 추경예산 3조 3,531억 2,400만원 대비 2,911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169) 문의: 02-6788-5192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육료 국고보조율(70.2% → 70.1%)과 지원대상(51만 2,000명 → 50만 8,000명)은 감소하였으나, 보육료 지원단가는 3% 인상되었음.

< 202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	추경(A)			
□ 영유아보육료 지원	(2,850,100)	(3,240,039)	(3,353,124)	3,644,273	3,644,273 (291,149)	순증
- 0~2세 보육료	-	(2,892,683)	**(2,987,079)**	3,096,652	3,096,652 (109,573)	순증
- 장애아보육료	-	(73,447)	**(75,266)**	79,748	79,748 (4,482)	순증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28,637)	(28,637)	27,059	27,059 (△1,578)	순증
- 연장보육료	-	(80,567)	**(83,110)**	84,407	84,407 (1,297)	순증
- 미지급금 지원	-	(85,011)	(85,011)	34,761	34,761 (△50,250)	순증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	(79,612)	**(93,939)**	70,389	70,389 (△23,550)	순증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	**-**	**251,175**	**251,175 (251,175)**	**순증**
- 보육료 사업운영 관리	(50)	(82)	(82)	82	82 (-)	순증

주: ( ) 회계이동 전 일반회계 기준임
자료: 교육부

❑ 참고로, 2025년도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연장보육료 및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으로 1,130억 8,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음.

나) 검토의견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보다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2026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임.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7조[17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어린이집에 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두고,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의 연령 등에 따라 배치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세 미만의 경우 영유아 3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하였음.

---

170)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30.>**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생 략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신규) 개요 >

□ 주요 내용

○ (추진방향) 보다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위해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개선*** 추진

* **(0세반) 1:3→1:2,** (1세반) 1:5→1:4, (2세반) 1:7→1:6, (3~5세반) 중장기 검토

○ (지원대상)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 (지원내용)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1:3→1:2)을 위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0세 아동 보육료 추가 지원**

○ ('26년 지원인원) 62,994명 ('26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0세 아동 수(추계))

○ ('26년 지원단가) **아동당 월 474천원**

○ ('26년 소요예산) 2,512억원

자료: 교육부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2025 본예산) 0→(2026 요구) 251,175백만원 (순증, 신규)

- (요구) 교사 대 0세반 아동 비율을 1:3 → 1:2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미지원 기관에 재원하는 0세반 아동에 보육료(월 474천원) 추가 지원
- (산출) 63천명 × 474천원 × 12개월 × 70.1%
  ※ (물량) (25) 0 → (26) **62,994명('26년 인건비 미지원시설 0세아 수)**
  ※ (단가) (25) 0 → (26) 474천원(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1:3→1:2)에 따른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추가 부담분)
- (국고보조율) ('25) 70.2% → ('26) 70.1%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에 따라 '교사 대 0세반 아동 비율'을 기존의 1:3에서 1:2로 개선하려면, 0세반 신규 개설을 위한 교사의 채용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①**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171]의 경우는 0세반 재원 아동에 대

17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해서 보육료를 월 47만 4,000원 추가로 지원하고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예산으로 2,512억원을 편성하고, ②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의 인건비를 편성[172]함.

다만, 동 사업의 시행으로 2026년도부터는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173]의 지원대상에서 0세반을 제외하고, 1~2세반에 대해서만 지원함에 따라 동 내내역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5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횟수는 교사가 한 명의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교육·돌봄의 질 제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인지, 사회성, 정서발달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임.[174]

지원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있고,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있음**(교육부 지침,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p. 366)

172) 세부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참고

173)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사업은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영아반 개설(유지)을 위해 인건비 미지원 기관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24년도부터 시행하였음

174) 육아정책 Brief 제95호, 「보육서비스 질제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부터」, 육아정책연구소, 2023.7.31. 참고

-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175]’에 따르면,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어려움의 1, 2순위를 합산한 결과, 각각 0~2세 표준보육과정은 55.6%, 3~5세 누리과정은 37.6% 수준으로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어려움으로 응답하였음.

아울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유보통합의 5대 상향평준화 과제[176] 중 하나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신설과 관련하여, ‘교사 대 0세반 아동 비율’을 기존의 1:3에서 1:2로 개선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반 구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우선, ① 0세반을 추가로 구성하지 않고 반 개수를 유지한다면 0세반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인프라 편차로 0세반 공급 부족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② 0세반을 추가로 구성하는 경우라면 반 추가 개설로 영유아 1명당 시설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환경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75)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2024년 12월,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pp. 443-451 참고

176)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교육부, 2024.6.27. 참고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①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②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③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④통합연수체계 마련, ⑤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감소 추세[177]와 시설인가 정원 내에서 0세반 추가 편성도 가능함[178]을 고려할 때 0세반 입소 대기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어린이집 0세반 입소 대기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과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와 교사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한 시설기준 등의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교사 대 0세반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지원단가(월 47만 4,000원)는 향후 1세반, 2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기준이 되고, 보육료 단가 인상에 연동되어 추가 지원단가도 인상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원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할 필요도 있겠음.

< 0~2세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제외) >

(단위: 천원)

구분	'25년 본예산		'25년 추경		'26년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0세반	540	1,169	567	1,227	584	1,264
1세반	475	817	500	859	515	885
2세반	394	626	414	658	426	677

자료: 교육부

177) 0세반 정원충족률: ('22.12.) 93.3% → ('23.12.) 91.9% → ('24.12.) 89.7% → ('25.8.) 86.1%

178)「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시설면적은 '반 수'가 아닌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도 가능함

- 교육부에 따르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보육료 수입만으로 교사 인건비·운영비 등의 지출을 충당하고 있는 재정구조임을 감안하여 아동 1인당 적정 지원단가를 산정하였다는 설명임.

- 참고로, 추가 지원단가는 0세반 아동 1인당 월 47만 4,000원으로 2026년도 기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0세반 보육료 단가 126만 4,000원의 37.5% 수준이고, 0세반 정원이 2명이므로 반별 보육료 수입은 정원 3명 대비 91.7% 수준인 347만 6,000원[179] 수준임.

❑ 따라서, 교육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 과제의 하나인 0세반 아동 비율 개선(1:3에서 1:2) 이후 0세반 공급 부족이나 0세반 입소 대기 및 영유아 1명당 시설면적의 감소로 보육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9) < 0세반 보육료 지원 금액 >
①교사 대 아동 비율 1:3 → 1,264천원(보육료) × 3명 = **3,792천원**
②교사 대 아동 비율 1:2 → [1,264천원(보육료) + **474천원(추가 지원)**] × 2명 = **3,476천원**

(2) 표준보육비용 조사의 적기 실시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현행법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유아교육에 필요한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각 개별법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유아교육법」 제24조[180]에 근거하여 ①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2세의 영유아보육료와 ②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 필요한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등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취지임.

---

180)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한편, 무상교육·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의 산정을 위한 근거로 현행법은 각각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적정 수준의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제공을 위한 예산 지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임.

'표준보육비용'[181]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되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표준유아교육비'[182]는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

18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18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의 비교 >

구분	표준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
목적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산정	무상교육(누리과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산정
주체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산정 절차	**3년마다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
산출 기준 (시행규칙)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조사 방법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 완료,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	-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재구성

❑ 다만, 각 개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0~2세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단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에 대한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첫째,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법률에 3년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2년도 이후 조사[183]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5.11월 기준).

183)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예산: 2억원)**: 800개 어린이집과 126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비용실태조사, 40개 어린이집 총계정원장 수집·분석, 300개 어린이집 심층조사 실시

-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13년 1월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에는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고, 2023년 6월에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조사의 중요성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 왔음.

<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 >

구성 항목	내 용
인건비	기본급, 수당,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급·간식비	급간식 재료비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 교재비, 소모품)
시설비	시설유지비, 실외 교재교구비 등
관리운영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등

자료: 교육부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적정 수준의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제공을 위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므로,

교육부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실시하여 적시에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외에도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둘째, 표준유아교육비는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시 주기,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한편,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184] 적용에 있어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할 필요도 있겠음.

- 2012년 이후 진행된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은 초중등교육의 표준교육비 산정 방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과 다르게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고 초중등학교와 달리 공·사립유치원 간 재정지원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표준교육비와는 산정 방식을 구별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임.[185]

---

184)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85) 「2023년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23년 11월) 참고

< 표준유아교육비의 구성 항목 >

구성 항목	내 용
표준인건비	교원과 직원의 기본급, 제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법정부담금
표준교육활동비	누리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과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재료
표준공통운영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등

자료: 교육부

셋째, 유보통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 차이로 인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 구조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표준유아교육비를 함께 조사할 필요도 있겠음.

❑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표준보육비용 조사가 주기에 따라 적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 구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등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관련 조사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186]

○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은 예산안 대비 보수교육 신청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립유치원 교원 대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1635-354)'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13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186) 문의: 02-6788-5192

< 2026년도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	추경(A)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634)	(1,308)	(1,308)	1,308	1,308	순증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628)	(1,308)	(1,308)	1,308	1,308	순증
- 기본경비	(6)	-	-	-	-	-

주: ( ) 회계이동 전 일반회계 기준임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보육교직원의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187]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188]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요 >

□ 개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실시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자부담)
  ※ 1인당 지원 단가: ([**직무**] **8만원**(40시간 기준), [**승급**] **14만원**(80시간 기준)
- 지자체별로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지정된 교육과정으로 직무·승급 등 집합교육 시행
- 직무교육의 경우, 3년마다 40시간씩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특별직무교육(영아·장애아·방과후)에 한해 온라인 이수를 인정
  ※ 단, 전차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 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금차 교육은 집합교육 이수 필요

187)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1.>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1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이며, 평균보조율은 48.0%임.

□ 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및 내용

분야별 대상자			교육 내용	시간
직무	일반직무교육	3년마다	인성·소양(8시간), 건강·안전(8시간) 전문지식·기술(24시간)	40시간
	특별직무교육	업무 시작 전 (영아·장애아·방과후)		
승급	승급교육 (2급, 1급)	(2급 교육) 3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1급 교육) 2급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인성·소양(12시간), 건강·안전(10시간), 전문지식·기술(56시간)	80시간
	원장 사전 직무교육	원장 자격 취득 희망자	인성·소양(12시간), 건강·안전(18시간), 전문지식·기술(48시간)	

□ 교육기관 및 예산현황

◦ **(교육기관)** 집합보수교육기관 78개소,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5개소

- **(집합)** 시도에서 매년 공모 및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온라인)** 교육부에서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제도 활용, 특별직무교육 실시 기관 선정(2년 주기)

◦ **(예산현황) '25년 1,308백만원('23~'24년 동일)**

- **(집합교육 지원단가)** 일반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 (온라인교육) 고용부 환급과정으로 최대 11만원 적용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지원 대상(24,773명) 및 1인당 지원 단가(11만원)가 동결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1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보수교육 지원 : (2025 본예산) 1,308백만원 → (2026 요구) 1,308백만원(전년 동)**

- (요구 및 산출) 1,308백만원 = 24,773명 × 110천원 × 국비 보조율 48%
  ※ 1인당 지원 단가 : ('25년) 11만원 → ('26년 요구) 11만원(전년 동)

자료: 교육부

❑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역량 유지·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정기적(3년마다 40시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3회 연속 미이수하는 경우 자격정지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특별직무교육 이수자는 감소(78,286명→47,038명, △39.9%)하였으나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무교육(원장·교사·장기 미종사자) 이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17,886명→46,141명, 158.0%)하였고, 특히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수요는 급증(3,973명→20,887명, 425.7%)하였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이수 현황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122,059명	117,736명	111,601명	114,800명	110,258명
집합	승급교육 (원장 사전+1급+2급)	25,720명	24,819명	18,356명	14,607명	16,266명
	원장 사전직무(자부담)	8,711명	8,522명	6,266명	4,284명	5,436명
	1급	15,323명	15,166명	11,445명	9,785명	10,341명
	2급	1,686명	1,131명	645명	538명	489명
	일반직무교육 (원장+교사+장기 미종사자)	17,886명	32,539명	34,017명	37,769명	46,141명

		원장	3,458명	4,779명	3,691명	3,260명	4,640명
		교사	3,973명	7,471명	7,496명	8,582명	20,887명
		장기 미종사자(**자부담**)	10,455명	20,295명	22,830명	25,927명	20,614명
	특별직무교육		**167명**	**998명**	**391명**	**330명**	**813명**
		영아	167명	369명	296명	330명	741명
		장애아	-	629명	95명	-	72명
		방과후	-	-	-	-	-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78,286명**	**59,380명**	**58,837명**	**62,094명**	**47,038명**
		영아	68,179명	51,838명	51,170명	54,785명	40,290명
		장애아	6,872명	5,302명	5,577명	5,510명	4,985명
		방과후	3,235명	2,240명	2,090명	1,799명	1,763명

자료: 교육부

또한, 최근의 집행 경과를 보면 동 사업은 교육참여 인원의 증가로 2024년도 이후 계획 대비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2024년도에는 조건부 온라인교육 이수 허용 규정을 강화[189]하는 등 보수교육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집합교육에 대한 추가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3억 2,100만원을 전용(증)한 바 있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계획 대비 교육실적 현황 >

(단위: 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말 기준)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9,148	23,668 (81.2%)	24,773	21,403 (86.4%)	24,773	32,666 (132%)	24,773	30,055 (121%)

자료: 교육부

189) **('24년도 온라인교육 규정 강화)** 연속 온라인 이수가 허용되는 조건 적용 예외 사유를 기존 "시도 집합교육 미개설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시도 집합교육 미개설'로 제한

또한, '26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준 0세반 교사 약 5,033명에 대한 추가 채용을 예상하고 예산안[190]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보육교사의 증원이 예상되므로 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6년도 기준 보통교부금의 '공립유치원 교원 1인당 직무연수 단위비용[191]'은 4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보수교육 지원단가는 11만원으로 2020년도 이후 지원단가가 동결됨.

< 보육교직원 연수와 유치원 교원 연수 비교 >

구분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원
연수	기관	지자체별 지정·운영(접근성 낮음)	교육청/학교별 운영(접근성 높음)
	내용	지침(「보육사업 안내」 등)에 규정	교원 자율 선택
	방식	집합교육 원칙, 온라인 일부 허용	별도 제한 규정 없음
	시간	직무교육 3년마다 40시간 의무	교원 자율 선택
	지원 단가	[직무교육] 8만원, [승급교육] 14만원 예산 범위 내 지원 ※ 원장 사전직무교육 : 자부담	[직무/자격연수] 전액 지원

자료: 교육부

아울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연수 등 교육 내용을 개선할 필요도 있겠음.

---

190) (세부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신규) 75,012백만원 순증(0세반 정원 축소(1:3→1:2)에 따른 추가 배치 교사 인원 5,033명) 참고

191) 2026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유·초·중등 교원 1인당 연수 지원 단위비용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 10. 교원 연수 운영·지원
(25.10.22. 시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통지)
· **직무연수: 400천원**, 자격연수: 2,000천원, 특별연수: 58,285천원
· 자율연수·학습공동체: 300천원,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기관 연계 역량 개발(학교당): 2,668천원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준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수교육 내용의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연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시간 운영의 유연화를 통해 자율적인 연수 문화를 조성하는 등 「보수교육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임.

< 「보수교육 체계 개편」 주요 내용(안) >

□ **추진 배경**

◦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수준 높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 교원의 자발적 역량 개발 지원 필요

◦ **(현장 요구)** 규정된 내용, 시간, 기관에서의 교육 이수 실적만 반영하는 현 체제를 개편하고, 접근성·효율성이 높은 교육 체계 요구

□ **추진 내용(안)**

◦ **(교육 내용)**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연수 운영의 자율성 확대

- 법정 의무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원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과목 설계
-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연수 운영을 위해 교육 방식의 유연화 추진

◦ **(교육 시간)** 시간 운영의 유연화를 통한 자율적인 연수 문화 조성

- '가칭보수교육 이수 저축제'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능동적 역량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교육 시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 **(교육 대상)** 교육 신청 현황 전반이 파악되도록 '수강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수과정의 적기 추가 개설 등을 통해 교육 미이수 우려 해소

◦ **특별직무교육 개편(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영역에 한정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특별직무교육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개편하여 현업 적용도 강화

□ **향후 계획(안)**

◦ 교육과정 개편과 전산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교육 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사업 안내」 지침 등 규정 개정을 거쳐 단계적 추진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은 예산안 대비 보수교육 신청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립유치원 교원 대비 지원금액에 차이가 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92]

○ 교육부는 '26년 신규로 추진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아침돌봄 수당'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과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에 있어 장애영유아가 소외됨 없이 개별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과정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 교육·보육 여건 편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의 운영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1조 9,619억 1,100만원 대비 1,764억 500만원(9.0%)이 증액된 2조 1,383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92) 문의: 02-6788-5192

동 사업의 예산 증액은 인건비 지원단가를 3.5% 인상하고, 아침돌봄 수당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신설에 따른 것임.

<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2026 예산안(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	추경(A)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940,854)	(1,961,911)	(1,961,911)	2,138,316	2,138,316 (176,405)	순증
- 보육교직원 인건비	**(1,157,898)**	**(1,169,743)**	**(1,169,743)**	**1,329,289**	**1,329,289 (159,546)**	**순증**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69,378)	(250,923)	(250,923)	250,923	250,923 (-)	순증
- 보조, 대체교사 지원	(485,355)	(510,615)	(510,615)	528,486	528,486 (17,871)	순증
- 어린이집 운영지원	(28,223)	(30,629)	(30,629)	29,618	29,618 (△1,011)	순증

주: ( ) 회계이동 전 일반회계 기준임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1) 아침돌봄 수당 지원 등 신규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노력 필요

❑ 동 사업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193]에 근거하여 국공립·법인어린이집과 취약보육(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 후, 그 밖의 연장형)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임.[194]

❑ 동 사업의 '26년도 예산은 인건비 지원단가를 평균호봉 대비 3.5% 인상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지원으로 '아침돌봄 수당'을 신설함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1,764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193)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 7.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차등보조율 ± 10%)이며, 2026년도 예산안 기준 평균보조율은 52.8%임

❑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보면, ①‘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0세반 아동 비율’을 기존의 1:3에서 1:2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195]하려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0세반 정원 축소에 따른 추가 배치 교사(5,033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75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요구) 75,012백만원(순증)**
(요구 및 산출) 5,033명 × 35,284천원 × 0.8(지원비율) × 52.8%(국고보조율) = 75,012백만원
- 물량(지원인원) 5,033명*
* [30,200명('26년 예상 재원 0세아 수) ÷ 2] - [30,200명 ÷ 3]
- 지원단가 : 35,284천원

자료: 교육부

②그 밖의 연장형 교사지원의 ‘아침돌봄 수당’은 2024년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약 84%가 8시 이전에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동안 아침돌봄 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80%(20,579개소)를 대상으로 아침 1시간 돌봄수당 지원을 위해 365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195) 세부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참고

< 그 밖의 연장형 교사지원(아침돌봄 수당) 개요 >

□ 국고 지원 필요성

◦ 어린이집은 일 12시간(07:30~19:30) 운영하며,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대별로 인건비 지원 중

◦ 저녁돌봄은 '연장보육', '야간연장' 운영을 통해 국고 지원 중이나, 아침돌봄은 9시 이전이 등원시간으로 분류되어 예산 지원 전무

◦ 어린이집의 약 84%가 8시 이전에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침돌봄(등원) 시간(7시30분~9시)에 대해 인건비 지원 필요

* (어린이집 문 여는 시간 : 평균 7시 34분) (2024 전국보육실태조사, 교육부)

< 시간대별 보육서비스 제공 체계 >

구분(시간)	05:30~07:30	07:30~09:00	09:00~16:00	16:00~19:30	19:30~익일 07:30
보육 서비스	야간연장	**등원**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연장 (19:30 ~ 24:00) 12시간 (19:30 ~ 익일07:30) 24시간 (7:30 ~ 익일07:30)
예산 지원	인건비, 보육료	지원없음	인건비, 보육료	인건비, 보육료	인건비, 보육료

□ 소요 예산 : ('26년 20,579개소 지원, 36,530백만원)

◦ (물량) 실제 어린이집 문 여는 시간 및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80%(20,579개소) 지원

◦ (지원단가) 유치원 아침돌봄 수당 금액과 동일하게 편성('25년 14,008원)

◦ (지원시간) 아침돌봄 운영율을 고려하여서 1시간 돌봄수당 지원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0세반 담임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지원 항목으로 '아침돌봄 수당'을 신설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0세반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와 아동 간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신규 채용 교사의 원활한 인력 확보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196]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2023년 한 해 동안 그만 둔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74.8%로 2018년 67.3%, 2021년 72.6% 대비 증가하였고,

보육교사의 이직 및 사직 이유 중 재원 아동 수 감소로 담당반 폐반 비율이 26.2%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조사되어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보육교사 근무만족도 개요 >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편	매우 만족	평균(4점 만점)		
					2024년	2021년	2018년
근무 환경(전반)	2.1	17.5	58.6	21.8	3.0	3.1	3.2
물리적 환경(공간)	3.3	21.8	54.3	20.6	2.9	3.0	3.1
인적 환경 (동료, 원장, 학부모 관계)	1.1	11.5	60.7	26.7	3.1	3.1	3.2
급여 수준	**16.1**	**38.7**	**35.4**	**9.8**	**2.4**	**2.6**	**2.9**
근로 및 휴게시간	13.6	34.9	38.8	12.7	2.5	2.7	3.1
휴일 및 연차	8.3	24.1	44.3	23.3	2.8		
일에 대한 보람	1.8	10.9	61.3	26.0	3.1	3.1	3.2

주: 2021년 조사에서는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를 한 문항으로 조사함
자료:「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p. 345 참고 재구성

196)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2024년 12월,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pp. 246-247, 344-346 참고
※ 조사 모집단은 2024년 4월 30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 27,741개소 중 협동어린이집, 현원 0명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27,106개소임

또한, 보육교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근무 환경 등 7개 조사항목 중 급여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45.2%로 가장 낮아 4점 만점 기준 2.4점으로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수가 25만명 이상이고, 연간 약 2만명이 보육교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고 있어 보육교사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197]이나,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 및 사직 비율과 근무 환경 등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신규채용 교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부족으로 2022년도에 179억원을 전용하였고, 2023년도와 2024년도에도 전용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해 각각 604억 2,200만원과 545억 4,8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음.

특히, 2024년도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인원을 실제 지급인원 대비 약 1만명 부족하게 산정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바 있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으로 0세반 담임교사의 증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담

197) 원장 27,244명 +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 224,937명 = 252,181명 (2024 보육통계)
신규 자격발급 현황: ('22) 24,933명, ('23) 22,791명, ('24) 19,562명

임교사 등 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인원에 증원되는 0세반 담임교사가 반영되지 않아 예산 부족이 우려됨.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025 본예산) 220,909백만원 → (2026 요구) 220,909백만원(전년동)
   1) 담임교사 등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 물량(지원인원) : **120,424명(전년동)** - 지원단가 : 260천원(전년동)
   2) 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 물량(지원인원) : 27,350명(전년동) - 지원단가 : 130천원(전년동)

▸ 산출내역 : 220,909백만원(전년동)
· 담임교사 **120,424명** × 260천원 × 12개월 × 52.8% = 198,382백만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27,350명 × 130천원 × 12개월 × 52.8% = 22,528백만원

자료: 교육부

❑ 따라서, 교육부는 '26년 신규로 추진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아침돌봄 수당'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과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영유아에 대한 시도별 교육·보육여건 편차 개선 필요

❑ 동 사업에 따른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지원인원은 동일하나 인건비 지원 단가를 3.5% 인상함에 따라, ①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는 전년도 547억 400만원에서 19억 1,500만원이 증액된 56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②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인건비는 전년도 371억 9,800만원에서 13억 200만원이 증액된 385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2025 본예산) 54,704백만원 → (2026 요구) 56,619백만원(+1,915백만원)

- 물량(지원인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80개소 3,052명(전년동)
- 지원단가 : 평균호봉 대비 3.5% 인상

·(원 장)	180명 × 53,211천원× 0.8(지원비율) × 52.8% = 4,046백만원,	+137백만원
·(보 육 교 사)	2,120명 × 35,284천원 × 0.8(지원비율) × 52.8% = 31,597백만원,	+1,068백만원
·(치 료 사)	572명 × 35,284천원 × 1(지원비율) × 52.8% = 10,656백만원,	+360백만원
·(조 리 원)	180명 × 30,702천원 × 1(지원비율) × 52.8% = 2,918백만원,	+99백만원
·(특수교사수당)	2,250명 × 414천원 × 12월 × 52.8% = 5,902백만원,	+200백만원
·(치 료 사수당)	572명 × 414천원 × 12월 × 52.8% = 1,500백만원,	+50백만원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2025 본예산) 37,198백만원 → (2026 요구) 38,500백만원(+1,302백만원)

- 물량(지원인원) : 인건비 2,357명(전년동), 특수교사수당 지원 1,875명(전년동)
- 지원단가 : 평균호봉 대비 3.5% 인상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973명 × 35,284천원 × 0.8(지원비율) × 52.8% = 29,406백만원,	+994백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미지원)	384명 × 20,594천원 × 1(지원비율) × 52.8% = 4,176백만원,	+141백만원
·(특 수 교 사 수 당)	1,875명 × 414천원 × 12개월 × 52.8% = 4,918백만원,	+166백만원

자료: 교육부

❑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 ①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198]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고, ②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임.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3명당 1명의 보육교사를 두고, 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며, 미취학 3세 이상 장애아반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최근 10년간 연도별 장애아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개소수는 2015년도 175개소에서 2024년도 178개소로 큰 변화가 없으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도 899개소에서 2024년도 1,718개소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24년

1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을 것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도에는 전년도 대비 254개소(17.3%)가 확충되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

(단위: 개소, 명, %)

구분	어린이집 개소수	보육아동					
		정원	현원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2015년	175	8,441	6,845	(81.1%)	5,895	(69.8%)	950
2016년	177	8,504	7,121	(83.7%)	6,158	(72.4%)	963
2017년	178	8,568	7,098	(82.8%)	6,161	(71.9%)	937
2018년	177	8,433	7,093	(84.1%)	6,239	(74.0%)	854
2019년	176	8,444	7,095	(84.0%)	6,301	(74.6%)	794
2020년	177	8,477	6,924	(81.7%)	6,206	(73.2%)	718
2021년	178	8,457	6,917	(81.8%)	6,264	(74.1%)	653
2022년	177	8,395	6,699	(79.8%)	6,170	(73.5%)	529
2023년	173	8,219	6,461	(78.6%)	5,997	(73.0%)	464
2024년	178	8,332	6,321	(75.9%)	5,895	(70.8%)	426

주: 장애아동은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0-12세)
자료: 교육부(각 해당연도 보육통계, 각 연도 12월말 기준)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현황 >

(단위: 개소, 명, %)

구분	어린이집 개소수	보육아동					
		정원	현원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2015년	899	82,991	73,212	(88.2%)	3,929	(4.7%)	69,283
2016년	911	84,019	75,122	(89.4%)	4,079	(4.9%)	71,043
2017년	946	86,673	77,339	(89.2%)	4,066	(4.7%)	73,273
2018년	1,000	90,431	79,250	(87.6%)	4,189	(4.6%)	75,061
2019년	1,100	97,770	85,163	(87.1%)	4,568	(4.7%)	80,595
2020년	1,211	105,805	89,691	(84.8%)	1,959	(1.9%)	84,732
2021년	1,317	113,084	93,828	(83.0%)	5,578	(4.9%)	88,250
2022년	1,393	118,083	94,796	(80.3%)	6,143	(5.2%)	88,653
2023년	1,464	122,252	95,273	(77.9%)	6,678	(5.5%)	88,595
2024년	1,718	139,362	106,314	(76.3%)	6,857	(4.9%)	99,457

주: 장애아동은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0-12세)
자료: 교육부(각 해당연도 보육통계, 각 연도 12월말 기준)

구체적으로 2024년도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총 178개로 정원

(8,332명) 대비 현원 비율은 75.9%(6,321명) 수준이고, 정원 대비 장애아동 비율은 70.8%(5,895명) 수준으로,

2024년도 기준 전체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이 70.2% 수준임을 고려하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이용률은 전체 어린이집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임.

< 2024년도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개소수	27,387	6,521	1,171	507	8,181	9,586	116	1,305
정원	1,340,087	374,641	99,948	35,456	547,612	180,680	3,865	97,885
현원	941,303	293,049	50,377	20,778	373,524	139,172	2,662	61,741
이용률	**70.2**	**78.2**	**50.4**	**58.6**	**68.2**	**77.0**	**68.9**	**63.1**

자료: 교육부(2024년도 보육통계, 2024년 12월말 기준)

❑ 다만,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 현황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시도별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종류별 이용률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어린이집 재원 장애아동 수가 가장 많은 경기(3,497명)의 경우 기관 종류별 이용률이 각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75.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9.3%, 일반어린이집 5.7% 순이고, 이어서 서울(2,133명)의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87.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7.7%, 일반어린이집 5.3% 순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구(949명)·광주(518명)·전북(343명)·전남(639명)의 경우 장애아동의 80% 이상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 2024년도 시도별 장애아동 이용 어린이집 현황 >

(단위: 개소, 명, %)

구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계
	개소수	장애아동(현원)	비중	개소수	장애아동(현원)	비중	개소수	장애아동(현원)	비중	장애아동(현원)
서울	8	164	7.7%	434	1,856	87.0%	70	113	5.3%	2,133
부산	15	444	57.1%	79	281	36.1%	42	53	6.8%	778
대구	17	763	80.4%	11	106	11.2%	50	80	8.4%	949
인천	7	137	16.0%	129	645	75.4%	50	73	8.5%	855
광주	11	477	92.1%	12	25	4.8%	16	16	3.1%	518
대전	5	90	39.3%	56	110	48.0%	25	29	12.7%	229
울산	10	355	79.4%	19	86	19.2%	6	6	1.3%	447
세종	1	14	20.9%	8	42	62.7%	6	11	16.4%	67
경기	22	674	19.3%	664	2,623	75.0%	176	200	5.7%	3,497
강원	4	117	45.0%	25	124	47.7%	18	19	7.3%	260
충북	7	182	72.8%	11	49	19.6%	17	19	7.6%	250
충남	11	308	58.6%	51	145	27.6%	63	73	13.9%	526
전북	10	277	80.8%	13	42	12.2%	18	24	7.0%	343
전남	13	522	81.7%	26	92	14.4%	18	25	3.9%	639
경북	14	695	77.1%	21	130	14.4%	36	76	8.4%	901
경남	19	544	63.2%	51	248	28.8%	47	69	8.0%	861
제주	4	132	32.7%	108	253	62.6%	19	19	4.7%	404
합계	178	5,895	43.2%	1,718	6,857	50.2%	677	905	6.6%	13,657

주: 장애아전문이나 장애아통합이 아닌 일반어린이집에서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 보육을 이용한 어린이집 수 및 이용한 아동 수

자료: 교육부(2024년도 보육통계, 2024년 12월말 기준)

다만, 2024년도 기준 일반어린이집 677개소에서도 905명의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시도별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이용률에도 편차가 있으므로 장애아동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별 실태분석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지침[199]을 통해 일반어린이집이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200]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

---

199)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 336 참고

2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장애아동 기관 현황 >

(단위: 개소수)

특수교육통계(25.4.1.기준)				보육통계(24.12.31. 기준)				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소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126	1,275	1,330	2,731	178	1,718	677	2,573	5,304

자료: 교육부(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5년 8월)

❑ 따라서,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에 있어 장애영유아가 소외됨 없이 개별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과정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시도별 교육·보육여건 편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 학생건강정책국

<일반회계>

1) 교육급여(1131-300)[201]

○ 일부 시·도교육청의 자체 교육비 지원사업이 교육급여와 목적·대상·사용처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시·도교육청의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역간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정보공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급여(1131-300)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12조[202]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바우처로 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

201) 문의: 02-6788-5184

2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교육급여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203]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었음.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8억 8,700원(3.6%)이 증액된 1,71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교육급여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급여	160,399	165,171	171,058	5,887	3.6

자료 : 교육부

203) 「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교육급여의 비용은 국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안 기준 국가 보조율의 평균은 83.38%임.

나) 검토의견: 지역간 격차 완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동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재원의 일정 비율[204]을 지자체에 보조 형식으로 교부하는 사업임.

급여 항목은 ① 교육활동지원비, ② 교과서비, ③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분되며, 이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급여임. 2023년부터는 기존 현금 지급 방식에서 바우처 형태로 전환되어,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책정된 상태임.

< 교육급여 사업 개요 >

(단위: 원)

구분		'24년	'25년		'26년(안)	
			지원금액	전년대비	지원금액	전년대비
교육 활동 지원비	초	461,000	487,000	+26,000 (+5.6%)	**502,000**	**+15,000 (+3.0%)**
	중	654,000	679,000	+25,000 (+3.8%)	**699,000**	**+20,000 (+3.0%)**
	고	727,000	768,000	+41,000 (+5.6%)	**860,000**	**+92,000 (+12.0%)**
교과서비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자료: 교육부

204) 서울 60%, 그 외 지역 80~90% 등 지역마다 보조율이 상이하며 전체 평균 보조율은 2026년 예산안 기준 83.38%임.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누리집[205]을 통해 신청 후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바우처 시스템 신청을 거쳐 최종 바우처를 지급하는 구조임. 바우처는 일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서점·문구점·학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교육급여 신청 절차 >

① 교육급여 신청 접수	② 소득·재산 조사	③ 급여 보장 결정·통지	④ 급여 정보 전송	⑤ 바우처 신청 접수	⑥ 바우처 배정 및 지원
온라인(복지로) 및 주민센터	시·군·구 (행복e음)	학교 (NEIS)	교육청 → 장학재단	온라인(장학재단 자체 시스템)	장학재단 및 카드사

자료: 교육부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제한 업종 >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자료: 교육부,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 한편,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교육급여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비 지원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205)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통합신청 누리집

교육청의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은 다문화·탈북가정, 저소득 가정[206], 다자녀 가정 등에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임.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온라인 강의·지역서점 등 교육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도록 정하였음.

< 시·도별 바우처 방식의 교육비 지원사업 예시 >

구분	교육급여	광주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전북 에듀페이	전남 학생교육수당	경남 교육지원 카드	대구 교육지원 사업
지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전 학생	초등학교 전 학생	중위소득 70% 이하	중위소득 80% 이하
지급 학년	전학년	중2·3,고2·3	전 학년	초등 전 학년	전 학년	중·고 전학년
연간 지급 금액	(초)502천원 (중)699천원 (고)860천원	100만원	10~30만원 (학년별로 상이)	120만원	10만원	20만원
사용처	사용 제한업종 제외 전 업종	직접교육경비 (학교납입): 수련활동비, 문화체험활동비 등 간접교육경비: 교재·도서구입비, 학용품비, 학습준비물비, 독서실비, 안경 구입비 등	서점, 문구점, 화방/악기, 컴퓨터(주변기기포함), 교육기자재, 독서실/스터디카페, 문화체험(영화관, 공연장 등), 스포츠(스포츠 활동 및 용품), 학원 등	교육활동 지원 (문방구, 서점, 화랑 등) 진로교육 지원 (악기 판매점, 스포츠용품점 등) 문화체험 지원 (영화관, 공연장 등)	인터넷강의, 외국어학습, 온라인서점, 지역서점	인터넷강의, 외국어학습, 온라인서점, 지역서점, 자격증/검정고시, 기술기능

206) 중위소득 120% 이내

❑ 이들 시・도교육청 사업의 사용처는 대부분 교육급여 바우처와 유사하며, 지원대상 또한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저소득층 교육비 경감이라는 목적이 중첩되는 측면이 존재함. 실제로 소득구간, 지원 항목의 구성 면에서 중앙정부의 교육급여와 기능적 유사성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 효과분석과 예산 효율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 또한 전북에듀페이는 초・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30만원을 지급하고,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초등학교에만 한정하여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에 지역별 편차가 있어 지역 간 지원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교육급여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통합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은 각 교육청의 개별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으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 접근 과정이 복잡하고, 시·도별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존재함.

❑ 복지정책의 결정은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원리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율성이 인정되는 영역임.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체계

의 형평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경우, 동일한 저소득층 학생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불균형은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복지정책의 통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역간 과도한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정보공유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는 지역 간 형평을 보장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임.

2) 학생건강지원강화(1235-300)[207]

○ 연구용역 중심으로 개편된 2026년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별도 센터 설립·지정보다 교육부 직접 수행이 바람직하며, 향후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학생건강지원강화(1235-300) 사업은 학생의 불안·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교직원의 학생건강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내 심리적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교직원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인건비, 운영비, 직접사업를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1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뇌연구원 학생정신보건센터가 교육부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1단계(2014~2016년) 및 2단계(2017~2019년) 사업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추진하였고, 3단계(2020~2022년) 및 4단계(2023~2025년) 사업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추진하였음.

207) 문의: 02-6788-5184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과 동일한 1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학생건강지원강화	1,054	1,054	1,054	-	-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연구용역 중심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부 직접 수행 필요

❑ 동 사업은 2014년 한국뇌연구원 산하 학생정신보건센터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교육부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호원 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이를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센터는 ①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연수, ② 학생 정신건강 관련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③ 학생 정신건강 관련 위기개입 및 심리치유 지원 등 세 가지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음.

< 제4단계(2023~2025년)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 운영체계 >



<운영체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조직>

자료: 교육부

< 제4단계(2023~2025년) 학생건강지원강화 사업 개요 >

추진 목표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추진 전략	**주요 추진 과제**
1.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연수	1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교사 생명지킴이 교육 강사 양성 2 초·중등 교원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연수 3 학생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
2. 학생 정신건강 관련 자료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행 및 도구 개선 지원 5 학생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 6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7 교사용 학생 생명지킴이 교육 관련 지원 8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 누리집 지속 운영 및 정보제공
3. 학생 정신건강 관련 위기개입 및 심리치유 지원	9 학생정신건강사업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및 교류 강화 10 학교·교육청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현장 지원·컨설팅

자료: 교육부

❑ 이러한 운영체계는 사업 도입 이후 약 10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중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반영하여 사업 구조가 전면 개편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 운영에서 정책 연구 중심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개선, 관심군 학생 연계 강화, 심리부검 기반 마련 등 6개 내역사업이 새로 편성됨.

< 학생 마음건강 관련 현 정부 국정과제 >

ㅇ **(마음건강 지원)**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선별검사* 내실화, 전문기관** 연계 확대 등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 (정기) 정서·행동특성검사, (수시) 마음EASY검사
**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지원기관, 병·의원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2026년 동 사업 예산안 세부내용 >

□ 2026년 예산안 1,054백만원

○ **국정과제 정책수립 및 시행지원 750백만원**

①정신건강 상태검사기반 전환(학교→의료기관) 150백만원

②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개선 150백만원

③관심군 학생 연계 강화 100백만원

④학교응급심리지원 150백만원

⑤학생에 대한 심리부검 기반 마련 및 시행 200백만원

○ **자료 수집 및 학생 검사관리 304백만원**

⑥자료 수집분석 정보시스템 운영(200백만원) 및 전국단위 학생 검사관리(104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정신건강상태검사의 기반을 학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①), 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②), 관심군 학생 미연계 사유별 해결방안 모색 연구(③), 학생 심리부검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등을 탐색 및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예산·도구 연구(⑤) 등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임. 이들 내역사업은 향후 학생건강 지원 체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의 성격을 가짐.

❑ 그러나, 이처럼 다수의 내역사업이 연구용역 위주로 재편된다면, 이는 교육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등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지정할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예산 기준, 센터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4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2%에 해당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중 1억원 가량이 간접비[208] 형태로 사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센터 필수운영경비는 5억 3,00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 가량(50.3%)에 해당함.

< 2025년 동 사업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비율	주요내용
Ⅰ. 인건비 및 운영비	인건비	360	34.2	센터 상근인력 인건비
	운영비	74	7.0	사무·운영비
소계		434	41.2	
Ⅱ. 사업비		620	58.8	학생 정신건강 관련 세부사업 추진
ㄴ 간접비		96	9.1	사무실 관리비·임차료·수도요금 등
총계		1,054	1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8) 사무실 관리비, 수도요금, 임차료 등 명목으로 사용

< 회계연도별 학생정신건강센터 간접비 집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간접비 집행액	105	113	10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6년에도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경우, 인건비·운영비·간접비와 같은 필수운영경비가 20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209]. 이에 따라 사업예산의 상당 부분이 센터 운영비로 고정되어, 연구 중심 사업으로 전환된 2026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현재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인력은 10명 내외로[210] 연구사업을 자체 수행하기에는 규모와 전문역량이 제한적이고, 학생정신건강센터 설립 또는 지정의 법적 근거 또한 재량규정임[211]. 따라서 2026년도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

209)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항목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부는 국정과제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재편함에 따라 내역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 내역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될 예정임을 밝힘.

210) 2025년 정원 기준 센터장 1인, 부센터장 등 직원 9인

211)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이 예산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생 자살 등 정신건강 위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중앙 차원의 정책 설계·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지방의 마음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적 분업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2026년을 학생정신건강정책 전환기의 준비 단계로 인식하고, 연구용역 중심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중앙-지방 기능 분담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근거와 연구기반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책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이 정책 기획 초반부터 필요하며, 향후 센터 역할 확대 등 개편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국정과제 등 정책수립 지원 강화로 기능이 변경된 '26년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4705-301)[212)]

○ 법적 근거 부재 및 연례적 이월과 같은 감액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교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실질적 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4705-301)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등에 근거하여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및 DB 구축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OECD·UNESCO 교육지표 사업 참여를 통한 국가 간 교육환경 비교 및 국제적 위상 제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현황 및 실태 파악,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교육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과학적 교육정책 수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임.

212) 문의: 02-6788-5184

(2) 2026년도 예산안 현황

❑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0억원(△18.9%)이 감액된 42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사업 중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는 3억 4,800만원(△37.4%)이 감액된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결산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 감	
				(B-A)	%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5,718	5,278	4,278	△1,000	△18.9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4,042	3,616	3,045	△571	△15.8
○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632	632	611	△21	△3.3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946	930	582	△348	△37.4
○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결과분석	98	100	40	△60	△60.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증액 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임. 이는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적 근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2025년 1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3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요내용 >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추진체계 구축	-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에 모든 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참여
학생 맞춤형 협력적 지원	- 교육감·교육장이 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 학내 위원회 통합 등 기존의 분절된 학생 지원 체계를 통합
지역 연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정보 연계	- 학생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 진학·전학 등 학적 변동에도 정보 단절 방지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실태조사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213]에 근거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의

21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2025년에는 학생지원 현황 및 학생과 보호자 대상 지원이 필요한 영역 등을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됨.

<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조사 주요내용 >

구분	조사 종류	조사 내용
학교 행정조사	학생지원사업 현황	- 행정조사를 통한 학생지원 현황 파악 (14개* 연계 사업 예산, 지원 현황, 대상 여부 등)
개인 설문조사	교육지원사업 요구	- 학생 대상 지원이 필요한 영역 파악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지원, 학업 및 진로 지원, 안전 지원, 건강 지원 등) - 보호자 대상 지원이 필요한 영역 파악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 지원, 학업 및 진로 지원, 안전 지원, 건강 지원 등)
	학생의 정의적 영역별 역량 및 특성	- 학생의 정의적 영역별 역량 및 특성 (과제수행, 정서조절, 협력, 개방성, 타인과의 관계, 자기 이해, 학교적응)

※ 개인설문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학부모 대리조사로 실시

* ① 교육복지우선지원 ② 교육복지안전망 ③ 교육비 ④ 교육급여 ⑤ 아동학대 ⑥ 장기미인정결석 ⑦위(Wee) 프로젝트 ⑧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⑨ 기초학력 ⑩ 학업중단 숙려제 ⑪ 학교 내 대안교실 ⑫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 ⑬ 다문화교육지원 ⑭ 특수교육

자료: 교육부

❑ 동 내역사업은 2023년 처음 도입되었는바, 당시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이전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대비하여

파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약·위기학생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조사의 형태로 도입되었음. 예산의 규모는 매년 10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왔는데, 2026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삭감이 이루어져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 연도별 예산액 추이 >

(단위: 백만원)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예산액	1,000	930	930	582

자료: 교육부

❑ 이처럼 예산이 감액된 것은 2024년 교육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동 내역사업이 속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은 것에 기인하는데, 주요 미흡 사유로는 학생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부처명	교육부	평가 사업명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평가결과	미흡
주요 미흡 사유	○ **(집행의 효율성)** 사업비 대비 적은 금액이긴 하나,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대부분이 세부사업별 사업인건비 항목인 바 예산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편성 및 관리가 필요함 ○ **(제도개선)** 자체평가서에서 과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본조사를 위해서 학생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25.1.21.공포)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개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해당 지적사항 여부와 관련 개선노력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음				

자료: 교육부

❑ 그러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9조가 학생맞춤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로 규정되었고, 교육부장관이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나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214]의 내용이 제정법률에 명시되었음.

❑ 또한, 동 내역사업은 2023년에 3억 2백만원, 2024년에 2억 8,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 이월액이 발생하였던 바, 이는 2023년 사업이 차년도 6월까지로 연장되고 2024년 사업은 전년도 사업 종료 이후에야 착수되는 등 용역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 전반이 늦어진 결과임.

---

21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견,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생 략)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보유·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연계·가공한 정보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동 내역사업 연도별 집행 추이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1,000	1,000	685	302	14
2024년	930	1,232	946	286	-
2025년	930	1,216	916*		

* 2025.7월말 기준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동 내역사업 연도별 사업기간 >

연도	당초기간	변경기간	변경사유
2023년	'23.9.13.~'24.4.10.	'23.9.13.~'24.6.30.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연장
2024년	'24.7.1.~'25.3.28.	-	
2025년	'25.3.28.~'25.12.31.	-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25년에는 2024년 실태조사 완료('25.4.1. 대금 지급) 직후인 2025년 3월 28일 계약이 체결되어 270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된다면 2026년 실태조사는 조속히 집행되어 연례적 이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액의 사유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

❑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시범조사가 이루어지다가 2026년 최초로 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므로[215] 조사 범위를 기존의 선

도학교 및 희망학교(330개교)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12,000개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2026년 추진방향 >

구 분		2025년(시범조사)		2026년(본조사)
조사 대상	기관조사	선도학교 및 희망학교 330개교		전국 초·중·고 12,000개교(예정)
	개인조사	선도학교,표본학교	➡	표본(학교, 학생, 학부모 등)
조사 성격		시범조사 (정책 모델 개발 목적)		전국단위 조사 (법적 의무 이행 점검 및 정책 개선사항 발굴 목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인식조사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표본규모 등 검토 예정

자료: 교육부

또한, 전년 대비 예산 감액 시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 분야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초기 법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확보를 통해 지원의 운영성과 및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사항 발굴이 필수적임.

❑ 따라서, 법적 근거 부재 및 연례적 이월과 같은 감액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교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실질적 만족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내역사업의 예산안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

215)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